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20호

2021.9.23.(목)



서울특별시



[]

제2021-2464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4
제2021-2465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9
제2021-516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12
제2021-5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연세대학교)	21
제2021-523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
제2021-524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8
제2021-526호	봉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E -	42
제2021-527호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49
제2021-529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62
제2021-53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65
제2021-532호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0
제2021-533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102
제2021-24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104
제2021-2426호	의료혜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106
제2021-243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10

제2021-24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12
제2021-243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113
제2021-2441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14
제2021-2457호	2021년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16
제2021-2458호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21
제2021-203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54
제2021-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은평구)	155
제2021-160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160
제2021-221호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62
제2021-2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164
제2021-2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166
제2021-163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68
제2021-1305호	도시계획시설(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성동구)	171
제2021-1232호	도시계획시설 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노원구)	201
제2021-1608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동작구)	219
제2021-1619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동작구)	227
제2021-193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228
제2021-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2
제2021-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2
제2021-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3
제2021-31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영등포소방서)	234
제2021-22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35

제2021-22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41
제2021-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46
제2021-404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8
제2021-405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9
제2021-406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0
제2021-2444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정정공고)	251
제2021-2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동작구)	317
제2021-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관악구)	319
제2021-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관악구)	324
제2021-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관악구)	328
제2021-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관악구)	332

[]

2021 - 2464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정책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건축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공공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 외부에 국한된 공개공지 유형 등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해결하고, 건축물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으로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내 보행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 공공성·개방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신설

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별표 6).

-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준 추가

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함(안 제24조 및 제26조).

- 신재생에너지 중 효율이 높은 태양광설비의 우선적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기준 마련
-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 비율을 외벽 전체 면적의 35% 이하로 계획 유도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로 124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팩스: 02-768-8926, 이메일: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 구 분							
		신 설	○	강 화		내 용 심 사		존 속 기 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정책실장 : 김성보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 건축정책팀장 : 유옥현,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내지 제4조의 3					관 련 규제수	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을 하는 건축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해당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내 아래 내용 신설 1. 신설되는 실내형 공개공지의 조성 요건 2. 개방형 발코니에 삭제비율 완하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3. 돌출개방형의 설치기준 및 삭제비율 완화 규정 신설 4. 공동주택 외장은 태양광반사로 인한 눈부심 발생 하지 않도록 계획 신설 5.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및 외부창호 설치 기준 변경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건축물의 건축계획시 사회적변화에 따른 실내형 공개공간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마련함.
-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을 위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료 및 창호설치 기준을 마련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외부공간에 국한된 공개공지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실내형 공개공간 활용 방식 도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시간 증가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여 실내 외부 공간 확보 필요
-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와 제로에너지건축(ZEB) 조기 도입 달성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축물의 내부에 실내형 공개공간 설치를 유도하여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계획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일부 의무사항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 마련은 필요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내형 공개공지와 개방형 발코니의 수요가 있으며, 건축디자인 계획 통해 실현가능성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2021 - 246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정책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건축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공공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출서류에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 제출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팩스: 02-768-8926, 이메일: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정책실장 : 김성보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 건축정책팀장 : 유옥현,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내지 제4조의 3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을 하는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6. 규제 존속기한	해당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중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내 아래 내용 신설 1. 건축위원회에 심의요청 시 제출하여야 구조/설비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의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 추가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을 위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유도를 위하여 신설 기준 마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 고시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ZEB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설치 유도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 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2021 - 51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9호(2019.8.1.)로 고시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일대	약 232,000㎡	-

다.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산업·우시장·문화 지역자산 기반의 신경제 · 문화중심지 조성

2) 목표 및 전략

목 표	활성화 전략
독창적인 지역산업재생으로 일을 즐기는 樂	• 도심제조업 등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을 통한 지역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산해진미 우시장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樂	• 우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클린인프라 조성 • 우시장 상권보호 및 우시장 식문화 특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동네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樂	•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제고 • 문화가로 조성 및 지역의 안전확보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도시재생사업 및 파급효과

○ 마중물사업: 3개 부문, 6개 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비고
산업 재생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 공동판매장 • 근로자 근로환경개선 • 스튜디오 독산	• 지역산업지원 시설 확충으로 산업지역 활력증진 • 근로복지 시설 확충으로 근로환경 개선	기정
		•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 공동판매장 • 마을카페&활래방, 휴게실 • 청년임대주택	• 지역산업지원 시설 확충으로 산업지역 활력증진 • 근로복지 시설 확충으로 근로환경 개선 •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독산동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화/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변경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인큐베이팅프로그램 운영 • 독산산업문화 창업포럼	• 예비창업인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우시장 상권 재생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사업	• 우시장 악취개선 사업	• 우시장 일대 악취 및 위생환경 개선 통해 상인 및 주민불편 해소	
		• 우시장 경관개선 사업	• 낙후된 시장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독산동 우시장 지역정체성 강화 및 방문객 증대에 기대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 청년지원주택 조성	• 동지내몰림 방지 및 상인들의 장기간 안정인 영업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기대 • 우시장 육성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네트워크 갖춘 민간조직 활용하여 전문적·효율적 지원 • 청년지원주택을 통해 독산동 청년·청년근로자 주거안정화/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기정
		•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 동지내몰림 방지 및 상인들의 장기간 안정인 영업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기대 • 우시장 육성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네트워크 갖춘 민간조직 활용하여 전문적·효율적 지원	변경
문화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카페 '독산사랑방' 운영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공감대 확장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지역 복합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 생활안전조성사업 • 스트리트 뮤지엄 및 마을 탐방로 조성 • 독산3색 어울림 페스티벌	• 생활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증대 및 예술가 일자리 창출 • 지역의 숨은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동네 장소성과 지역이미지 • 주민참여형 축제 개최/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협력사업: 2개 부문, 8개 사업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부처 협업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 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장주변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금천 뮤지컬스쿨 조성사업	• 학교 유휴공간(4개 교실 등)을 활용하여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및 운영
지자체 사업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주거, 산업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수립
	사물인터넷(IoT) 도시조성 실증지역 조성사업	• 우시장 악취 저감을 위한 IoT시스템 구축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사업	• 우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사랑이, 행복이), 우시장 공동주차장 바닥 개선, 우시장축재행사 개최 등
	「(가칭)금천아트선복지센터」 건립	•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공공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도시경관개선사업	• 소공장 밀집지역의 야간안전 확보 및 공공공간 개선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 유휴공간(폐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계획

사 업 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공기업	
합계		697.08	225.9	260.4	191.6	19.18	
마중물 사업 합계		375	150	225	-	-	
마 중 물 사 업	1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56	70	86	-	-	기정 변경
	2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15	86	129	-	-	
	3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4	-	4	-	-	
	4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67	31	36	-	-	
	5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00	35	65	-	-	기정 변경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41	19	22	-	-	
합 력 사 업	7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4	10	24	-	-	
	8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14	4	10	-	-	
	협력사업 합계	322.08	75.9	35.4	191.6	19.18	
공 기 업	1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9.18	-	-	-	19.18	기정 변경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재 원 조 달 사 업	2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180.4	50.9	20.4	109.1	-	
	3 금천 뮤지컬스쿨 조성사업	50.0	25	15	10	-	
	4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4.4	-	-	4.4	-	
	5 사물인터넷(IoT) 도시조성 실증지역 조성사업	2.5	-	-	2.5	-	
	6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사업	2.2	-	-	2.2	-	
	7 「(가칭)금천아트선복지센터」 건립	55.4	-	-	55.4	-	
	8 도시경관개선사업	7.0	-	-	7.0	-	
	9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1.0	-	-	1.0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산 집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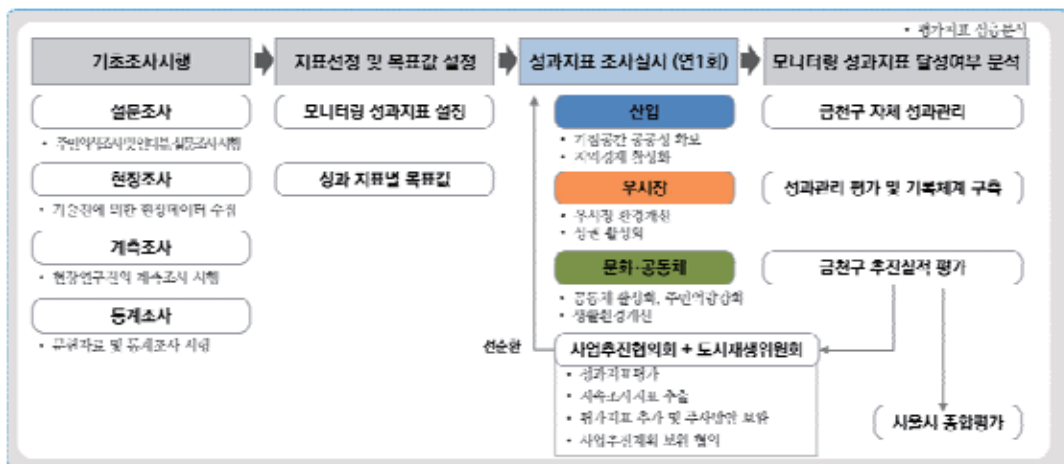
사 업 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마중물 사업 합계		375	96.9	197.1	37.1	35	8.9	기정
		375	34.9	233.1	82.1	16	8.9	변경
1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56	86	60	10	-	-	기정
		215	24	166	20	5	-	변경
2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	-	1	1	1	1	
3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67	1.8	51.2	14	-	-	
4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00	-	70	4	26	-	기정
		41	-	-	39	2	-	변경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4	6.8	6.8	6.8	6.8	6.8	
6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14	2.3	8.1	1.3	1.2	1.1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1) 평가 및 점검계획

- 모니터링 추진 프로세스 구축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1회)
-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보완 피드백 체계 마련



〈모니터링 평가 추진절차〉

2) 모니터링 계획

○ 추진과정 모니터링

구 분		항 목	목 표 지 표	
			현재	목표(2023)
주 민 의 권 수 렴	참여정도	도시재생대학 운영횟수	3회(3회)	9회(12기)
		도시재생대학 참여 평균누적 인원	900명	3,000명 이상
	변화 체감정도	도시재생 만족도	-	만족
		도시재생 기대도	중	강
	자력재생 기대정도	도시재생 사업 인식여부	약	강
		도시재생 사업 만족도	-	만족
활 성 화 계 획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우시장 위생환경 만족도	56% 매우좋음3% · 좋음15% · 보통38% (1차 설문조사 결과)	80% 서울시 환경체감도 평균수준(2018)
		앵커시설 설치	0개소	2개소 설치 산업문화/상권활성화 어울림 센터
		보행환경 만족도	19% 매우안전2% · 안전17% (1차 설문조사 결과)	60% 서울시 보행환경 평균만족도(2017)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0명	372명 (건설·토목·운영단계)
		도시활력시설 조성	0개소	4개소 설치 독산사랑방, 스튜디오독산, 근로자편의시설, 우시장점터조성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주민공동이용시설 월 방문이용객수	300명 □	750명
		지역축제 참여 인원수	200명	1,000명 이상

○ 성과 모니터링

[공통항목에 대한 사업성과]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항목	중심시가지형	유동인구 변화	산업 · 주민활동 복합거점 이용객수
		상가 업체수 변화	상가 점포별 현황
		(산업별) 사업체수 변화	업종별 분포 현황
		(연령별) 종사자수 변화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특화항목에 대한 사업성과]

구 분		항 목	내 용	비고
산업 재생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앵커시설 이용객수	산업·주민활동 복합거점 이용객수	기정
		앵커시설 인지도	산업집적단지로서 인지도	
		앵커시설 이용객수	산업·주민활동 복합거점 이용객수	변경
		앵커시설 인지도	산업집적단지로서 인지도	
		청년지원주택 입주	청년지원주택 입주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업프로그램 참여자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자수	
		신규창업 건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성과	
우시장 상권 재생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사업	우시장 위생환경 만족도	우시장 위생환경 만족도 지속 모니터링	
		우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우시장 거리 환경 등 만족도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이용 점포수	동지내몰림 방지대책에 대한 상생협력상가 입주점포수	기정
		청년지원주택 입주	청년지원주택 입주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이용 점포수	동지내몰림 방지대책에 대한 상생협력상가 입주점포수	변경
문화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및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수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수 모니터링	
		지역이미지	지역주민, 방문객, 상인 등 지역인식변화 평가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안전 등 보행환경 만족도	
		지역축제 만족도	우시장 축제, 3색축제 만족도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비고
도시재생 전담조직 (행정)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 실행의 행정적 지원조직	• 서울시 재생정책과 • 금천구 도시재생과	기정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 실행의 행정적 지원조직	•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 금천구 도시재생과	변경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추진 총괄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추진	• 센터장 • 사무국장 • 분야별코디네이터	

추진주체	역할	운영	비고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독산동 우시장 일대 주민주조직을 사업목표별로 조직화 체계화 하여 산업, 상인, 문화공동체분과 등으로 구성 운영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 조직으로 소통의 창구 • 주민 공동체 활동 실행 및 참여	• 통합주민협의체 - 산업분과 - 상인분과 - 문화공동체 분과	
사업추진협의회	• 사업추진 단계의 의사결정기구 • 활성화 사업 실행계획 협의 결정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전담 조직, 주민협의체 분과별 대표	

2)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주민협력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거버넌스활동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정기/상시 소통
- 사업발굴 : 주민, 행정, 전문가, 사회단체, 분야별 전문코디네이터 등이 사업 및 콘텐츠 발굴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 지속성 확보, 대안 제시
- 사업실행 :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행정,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축
- 운영관리 : 공기업(SH)의 CRCs 육성 및 지원체계 통한 기존 관련 공동체를 포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CRCs로 육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3. 관련 도면 : 붙임참조

- 1) 위치도 1부.
-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1부.

4.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02-2133-1563) / 금천구 도시재생과(☎02-2627-1867,1868)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02-809-9242)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2



2021 - 517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7호(2018.04.19)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변경)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세대학교 내 건축물 대장과 맞게 건축물 조서를 변경하고 연세과학원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항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대 학 (연세대학교)	전체 (A+B)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859,425.8	-	859,425.8	서고시 제61호 (1974.12.21)
			A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752,720.8	-	752,720.8	
			B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일대	106,705.0	-	106,70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변경없음]

구역	구 분	면적(㎡)	구역	구 분	면적(㎡)
상징경관구역	①	80,338.8	일반관리구역	⑦	102,177
소계		80,338.8		⑧	54,383
외부활동구역	②	3,516		⑨	42,000
	③	34,151		⑩	19,150
	④	11,078		⑪	109,320
	⑤	6,250		⑫	89,264
소계		54,995		⑬	52,448
녹지보존구역	⑥	40,667		⑭	89,609
	⑦	112,653		소 계	
	⑧	8,658		558,351	
	⑨	1,575		859,425.8	
	⑩	2,188			
소계		165,741	소 계		558,351
합 계					859,425.8

(2) 밀도계획

①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 레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 고
				기정	변경		
A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89.6	60.00	27.9	28.0	35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99,7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859,425.8 -99,777=759,64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87,668.2	3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786.0	60.00				
	소계	652,943.8	46.78				
B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6,705.0	30.00	15.2	15.2	26	
	소계	106,705.0	30.00				
합 계		759,648.8	44.43	26.1	26.2	34	

※ 학교용지 면적(859,425.8㎡) 대비 법정건폐율 39.3%, 사용건폐율(변경) 23.12%

※ 기정 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9호(2020.2.20.)의 결정(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② 용적률 및 높이계획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증감				
상징경관구역	①	197.96	50.80	50.80	-	-142.96	55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백양로(폭원 21m) 건축행위 불가	
외부활동구역	②	200.00	6.64	6.64	-	-155.00	45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③	150.00	0.00	0.00	-	-80.00	7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④	153.31	15.96	15.96	-	-93.31	60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녹지보존구역	⑤	174.40	0.00	0.00	-	-174.4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추가 건축시 별도 심의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비오톱1등급지 28,779.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비오톱1등급지 69,422.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⑥	150.00	0.00	0.00	-	-150.00	-		
일반관리구역	⑦	172.07	134.33	140.56	증)6.23%	-	160	●지표로부터 최대 28~55m 이하	
	⑧	184.48	160.68	160.68	-	-	18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6~55m 이하	
	⑨	178.66	113.88	113.88	-	-	12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검토구역 해당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20~32m 이하	
	⑩	200.00	47.54	48.34	증)0.80%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⑪	183.84	304.16	302.56	감)1.60%	+126.16	310	●지표로부터 최대 16~70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 (137,917㎡)
	⑫	166.02	98.34	97.72	감)0.62%	+33.98	20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2~55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 (30,330㎡)
	⑬	150.00	122.41	124.86	증)2.45%	-	130	●지표로부터 최대 20~40m 이하	
녹지보존구역	⑭	150.00	0.00	0.00	-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일반관리구역	⑮	150.00	71.29	71.29	-	-	90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⑯	150.00	0.00	0.00	-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녹지보존구역	⑰	200.00	0.00	0.00	-	-20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비오톱1등급지 1,57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⑱	150.00	0.00	0.00	-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3)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차상면적(㎡)						높이제한		비고		
	기성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4종일반 주거지역	기성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4종일반 주거지역	기성	변경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4종일반 주거지역	기성	변경	기성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	-	-	-	300.33	300.83	-	-	-	-	-	-	-	-	740.50	740.50	-	-	740.50	740.50	3	3	건물영양 변경	
	우대리동	우대리동	4,433.68	4,433.68	-	2,019.74	2,291.48	47,791.88	47,791.88	-	-	-	-	-	-	15,037.92	15,349.30	4,337.04	4,337.04	6,332.26	6,683.64	451	451	KCO PRD와 연면적증대	
㉡구역	POCC BRIDGE	-	-	-	-	271.74	-	-	-	-	-	-	-	-	-	311.38	-	-	-	311.38	-	2	-	연면적증대 및 연면적증대	
	우대리동	우대리동	3,093.71	4,388.37	-	-	-	32,363.35	37,010.01	-	-	-	-	-	-	16,107.32	22,488.82	-	-	-	-	631	631	중속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705.35	1,705.35	-	-	-	5,925.18	6,577.85	-	-	-	-	-	-	-	-	8,653.24	8,653.24	-	-	631	63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1,446.20	1,446.20	-	-	-	-	-	-	-	-	9,921.32	9,921.32	-	-	3,952.91	3,952.91	441	441	건물영양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6,264.20	6,264.20	-	-	-	-	-	-	-	-	86,700.00	86,700.00	-	-	21,800.00	21,800.00	741	741	건물영양 변경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1,402.35	1,402.35	-	-	-	-	-	-	-	-	7,121.39	7,121.39	-	-	6,394.26	6,394.26	611	611	건물영양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2,244.47	1,288.97	515.97	-	-	5,438.57	4,215.72	3,246.45	3,246.45	-	-	-	-	-	-	4,921.71	3,172.29	2,069.60	2,069.60	-	511	51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106.02	106.02	-	-	-	-	-	-	-	-	358.42	358.42	-	-	343.02	343.02	311	311	건물영양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643.65	1,643.65	-	-	-	5,071.13	5,045.30	-	-	-	-	-	-	3,759.39	3,759.39	-	-	3,556.55	3,556.55	411	41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112.74	472.29	-	-	-	2,052.86	1,403.70	-	-	-	-	-	-	-	-	-	1,184.65	673.50	-	-	311	21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755.18	967.56	-	-	-	1,635.67	1,635.67	-	-	-	-	-	-	-	-	-	1,388.79	1,611.17	-	-	311	31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8.79	-	-	-	-	18.79	-	-	-	-	-	-	-	-	-	-	18.79	-	-	1	-	불거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472.92	472.92	-	-	-	638.08	638.08	-	-	-	-	-	-	-	-	-	472.92	472.92	-	-	111	111	건물영양 변경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103.61	1,663.69	-	-	-	1,851.32	1,852.52	-	-	-	-	-	-	-	-	-	1,851.32	1,628.10	-	2	2	건축물영양 및 연면적증대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294.00	294.00	-	-	-	415.00	415.00	-	-	-	-	-	-	-	-	-	415.00	415.00	-	2	2	건축물영양 변경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686.63	586.63	-	-	-	3,436.54	3,436.54	-	-	-	-	-	-	-	-	-	3,221.73	3,221.73	-	511	511	건물영양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667.33	1,667.33	-	-	-	2,973.22	1,701.34	-	-	-	-	-	-	-	-	-	7,079.15	7,466.54	-	-	731	731	건축물영양으로 연면적증대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	-	-	-	-	-	-	-	-	-	-	-	-	-	-	-	103	103	건축물영양 및 연면적증대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220.92	1,220.92	-	-	-	30,471.92	30,471.92	2,628.63	2,628.63	-	-	-	-	-	-	-	1,371.87	1,371.87	-	-	741	741	건축물영양 변경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1,038.75	1,038.75	-	-	-	2,537.99	2,537.99	-	-	-	-	-	-	-	-	-	2,070.44	2,070.44	-	-	311	311	건물영양 변경
㉫구역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2,703,162,151.06	1,661.97	2,013.95	13,985.06	14,071.25	40,776.18	46,985.52	0.45	152,237.81	48,592.18	46,985.52	11,399.02	12,876.04	556.39	4,719.00	-	-	-	-	-	-	-	
	신수동민원	신수동민원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315.59						1,271.45						5,68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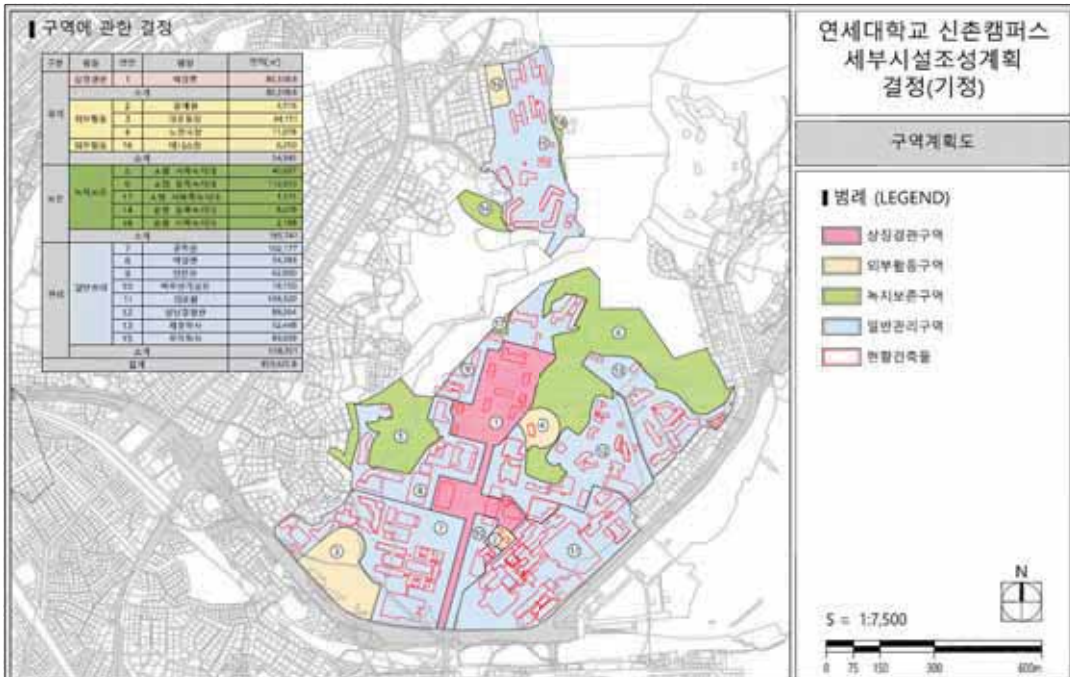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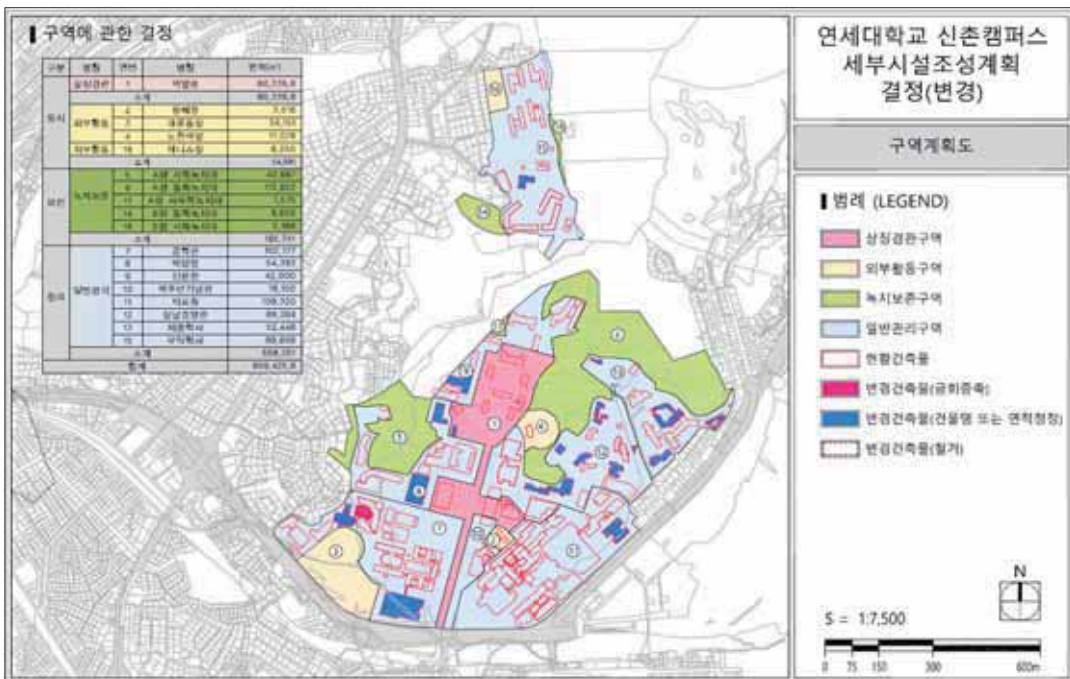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3)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02-330-1386)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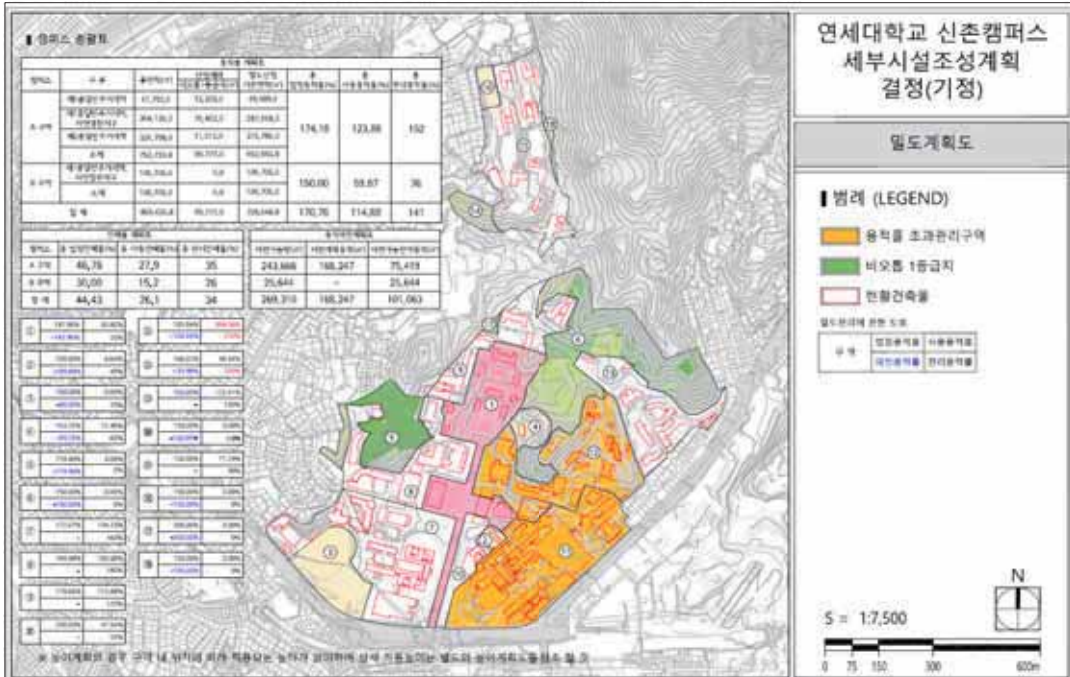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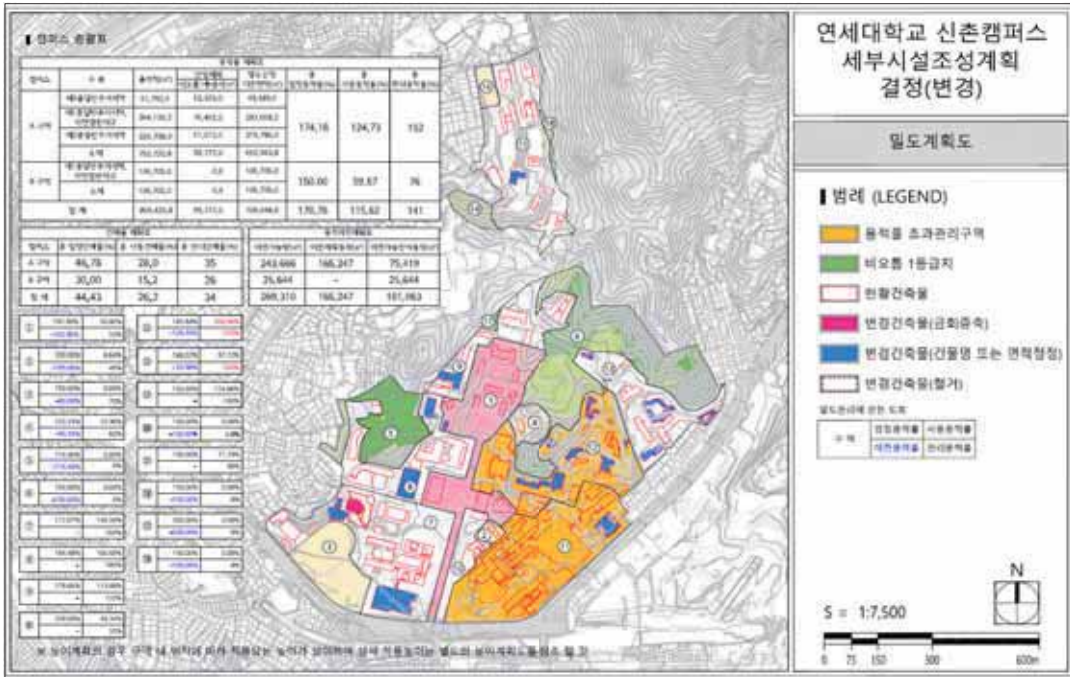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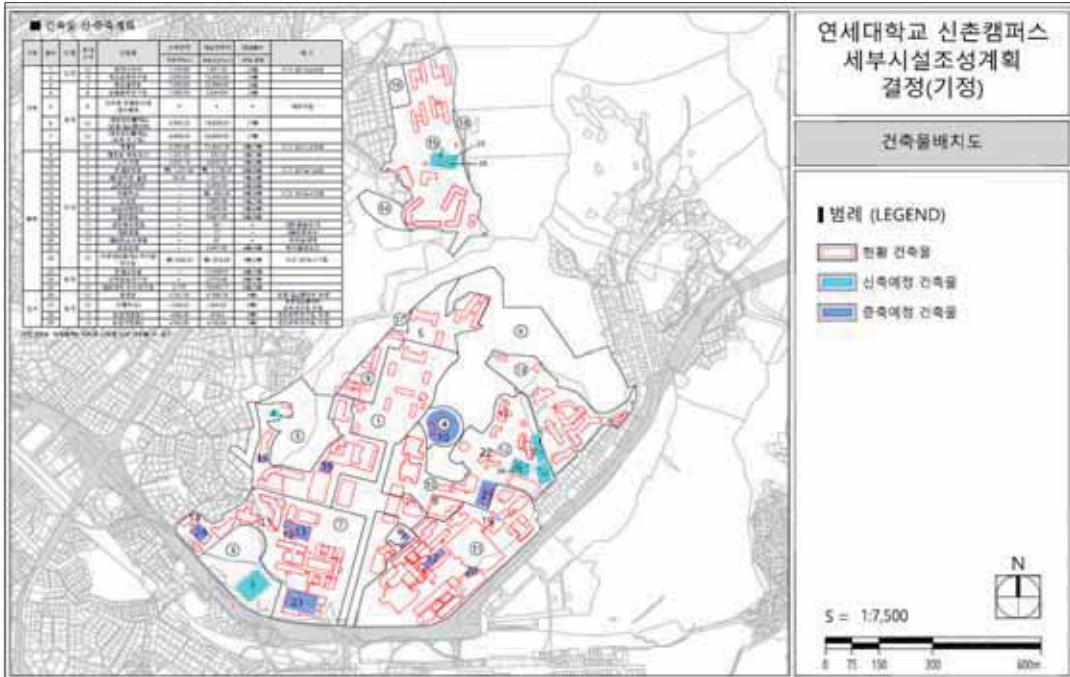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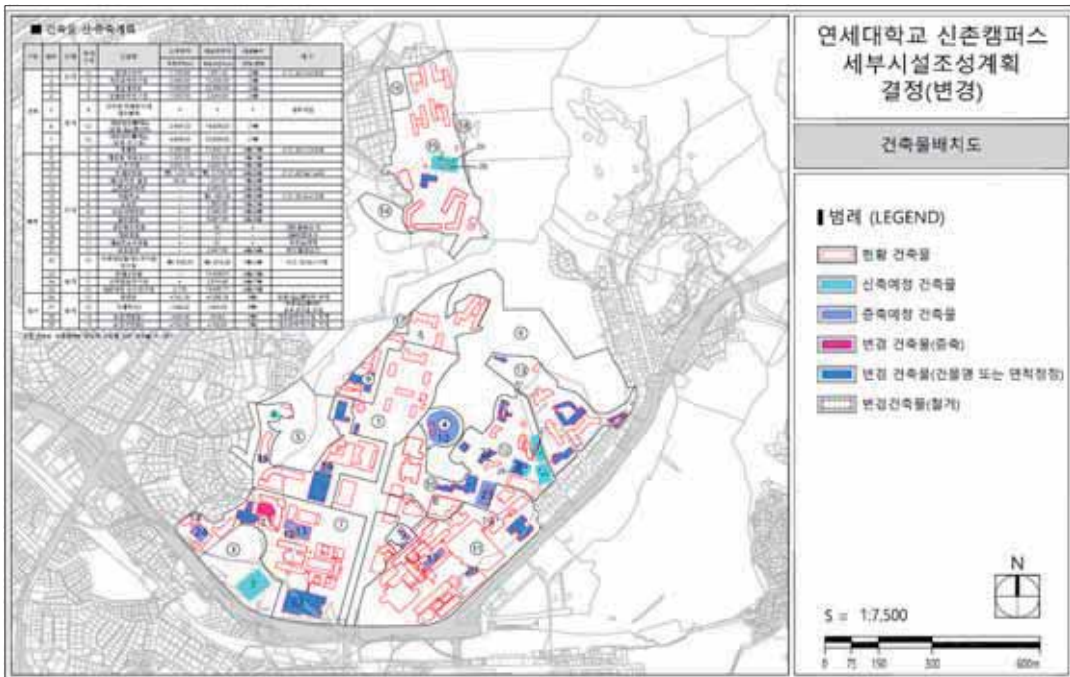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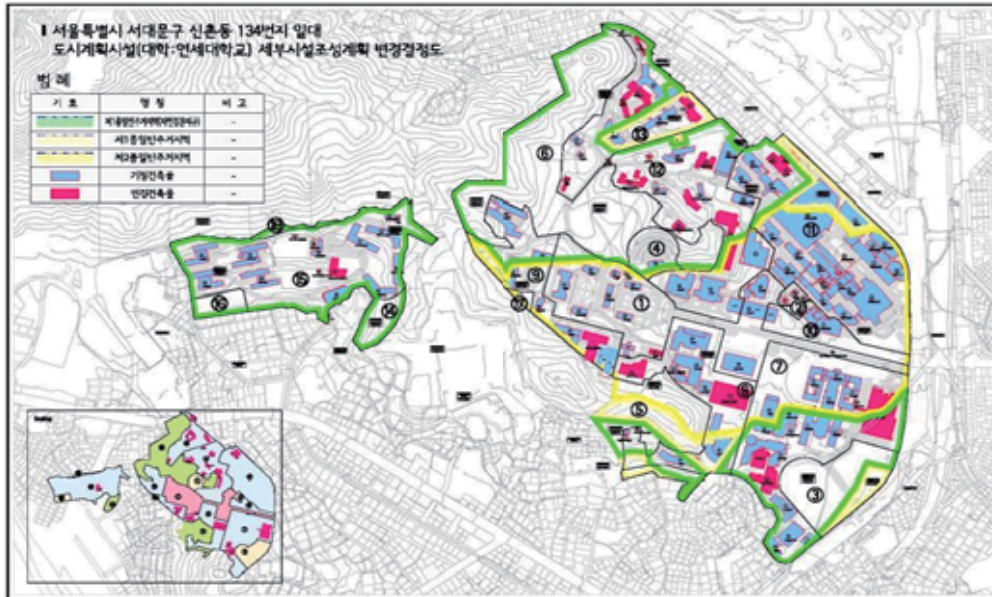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용적률) (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 (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도 (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 세 대 학 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밀도에 관한 결정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밀도계획(건폐율) 조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구역결정 조서 및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및 높이) 조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변경건축물조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건축물 조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2021 - 523

()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1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6호(2003.10.6.)로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7호(2003.12. 26)로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22호(2010.1.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발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계획(서울 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공공시설용지(서울시 내발산동 755-1번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추가)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서울 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600,321.7 (812.5)	-	600,321.7 (812.5)	서고 제2003-417호 (2003.12.26.)

※면적 항목중()는 계획대상지(내발산동 755-1번지) 면적임

※택지개발사업 원료 : 서고 제2009-222호(2010. 1. 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상업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학교용지 (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472.5	-	1,472.5	
2	내발산동 737-193일원	내발산동 755-1번지	812.5	-	812.5	
3	내발산동 산62-16일원	-	660.0	-	660.0	구립어린이집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획지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 기정 → 위치 : 내발산동 737-193일원 • 변경 → 위치 : 내발산동 755-1번지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변경

-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변경없음)
- 하수도시설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상업용지 (변경없음)
- 학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제1호	공공2, 공공3	용 도	· 권장용도(공공2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제외),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 지정용도(공공3에 한함) ·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 노유자 시설 중 가목에 해당) · 불허용도 : 권장용도 및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공공2 : 200% 이하, 공공3 : 150% 이하
		높 이	공공2 : 5층 이하, 공공3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	공공2	용 도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사무소에 한함) ※ 단,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50% 미만으로 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변 : 2m
	공공3	용 도	· 지정용도 :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 노유자 시설 중 가목에 해당)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공공3'은 조서 별도작성 외 계획내용 변경사항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변경없음)
- 하수도시시설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 계획	● 차량동선계획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 및 차량 출입불허구간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 주차에 관한 계획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7%인 4,06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서울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 보행동선계획 · 공동주택지구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 지구내를 관통하는 대로2-1호선과 보행자전용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over-bridge설치 · 공동5, 6BL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며 중로2-2호선에는 휴일 및 행사시 보차혼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를 설치할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 제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협프설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학교시설중 공원·녹지등과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내부조경(2m)을 계획 · 내부조경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 ·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 광장시설에 대한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사용 · 공공조경의 경우 쌈지공원형태로 조성하고 가로조명과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서울시건축조례 제21조의 식재 등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 계획	● 차량동선계획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 및 차량 출입불허구간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변경 없음
	● 주차에 관한 계획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7%인 4,067㎡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서울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보행동선계획 · 공동주택지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 지구내를 관통하는 대로2-1호선과 보행자전용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over-bridge설치 · 공동5, 6BL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며 중로2-2호선 에는 휴일 및 행사시 보차혼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독 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 제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횡포설치	변경 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학교시설중 공원·녹지등과 인접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내부조경(2m)을 계획 · 내부조경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 광장시설에 대한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사용 · 공공조경의 경우 씬지공원형태로 조성하고 가로조명과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서울시건축조례 제21조의 식재 등 조정 기준에 맞게 설치	변경 없음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근린생활시설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계획 -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4% 이상 - 조성방식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당해 용도는 향후 운영기간이 종료될 경우, 운영 행정기관이 타 공공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설위치 (규모) : 지상3층 (대지면적 66㎡이상, 연면적 132㎡이상)	내발산동 755-1번지 (신설)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채납행정청 지정 사항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함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대지면적(㎡)	위치	규모(연면적 등)(㎡)	채납행정청(관리청)
1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대지면적 66.2㎡	강서구 내발산동 755-1번지	연면적 132.4㎡	강 서 구

주) 기부채납시설의 대지면적 및 연면적은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공기여기준(14%이상)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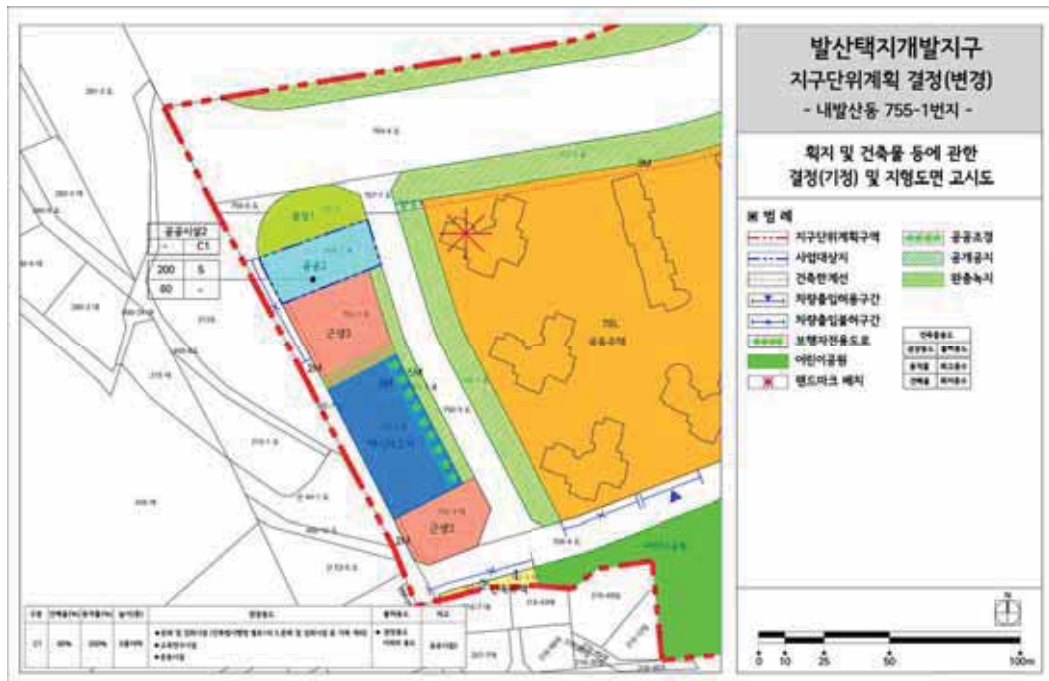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97)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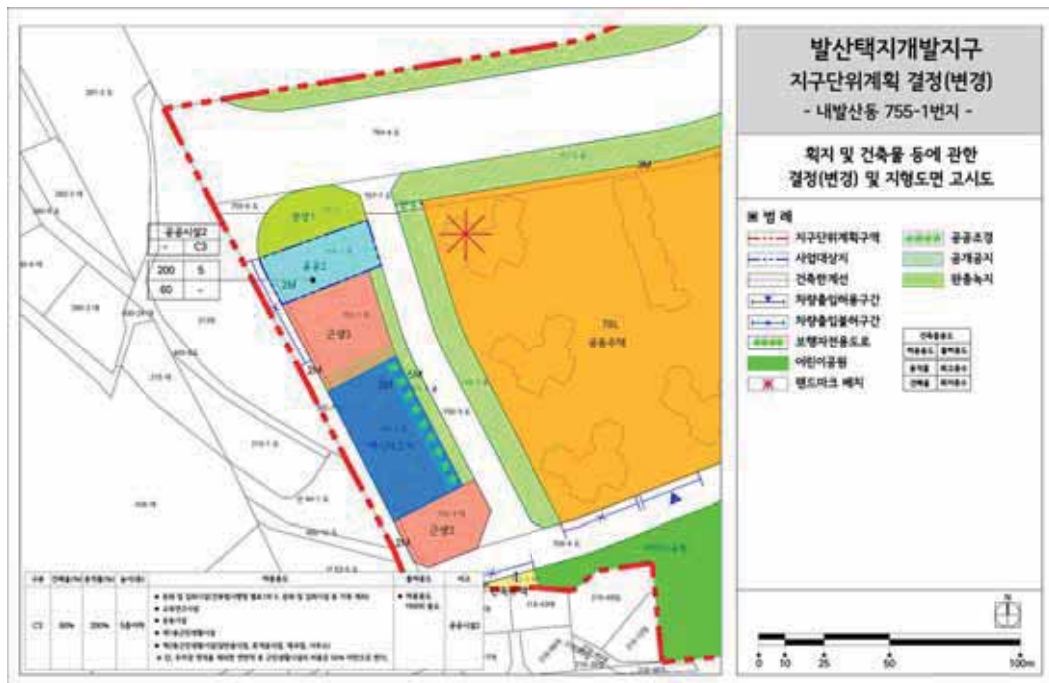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 () 】



2021 - 524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환경 조사결과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비오톱1등급 토지 중 경계가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도면번호	지 번		지목	비고
1	2021-2-01	강동구	상일동 산56-2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일부 감소로 경계 변경
2	2021-2-02	강북구	우이동 산8-3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전체 제외
			우이동 산8-4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전체 제외
3		강북구	우이동 234-8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전체 제외
4	2021-2-03	구로구	향동 산81-1	공원	필지 내 비오톱1등급 전체 제외
	향동 산23-6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전체 제외	
	향동 50-2		공원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일부 감소로 경계 변경	
5	2021-2-05	은평구	갈현동 산53-4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일부 감소로 경계 변경
6	2021-2-06	은평구	진관동 산35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일부 감소로 경계 변경

3. 관계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0)

첨부 #1

1

도면 2021-2-01. 강동구 상일동 산56-2



도면 2021-2-02. 강북구 우이동 산8-3, 산8-4, 2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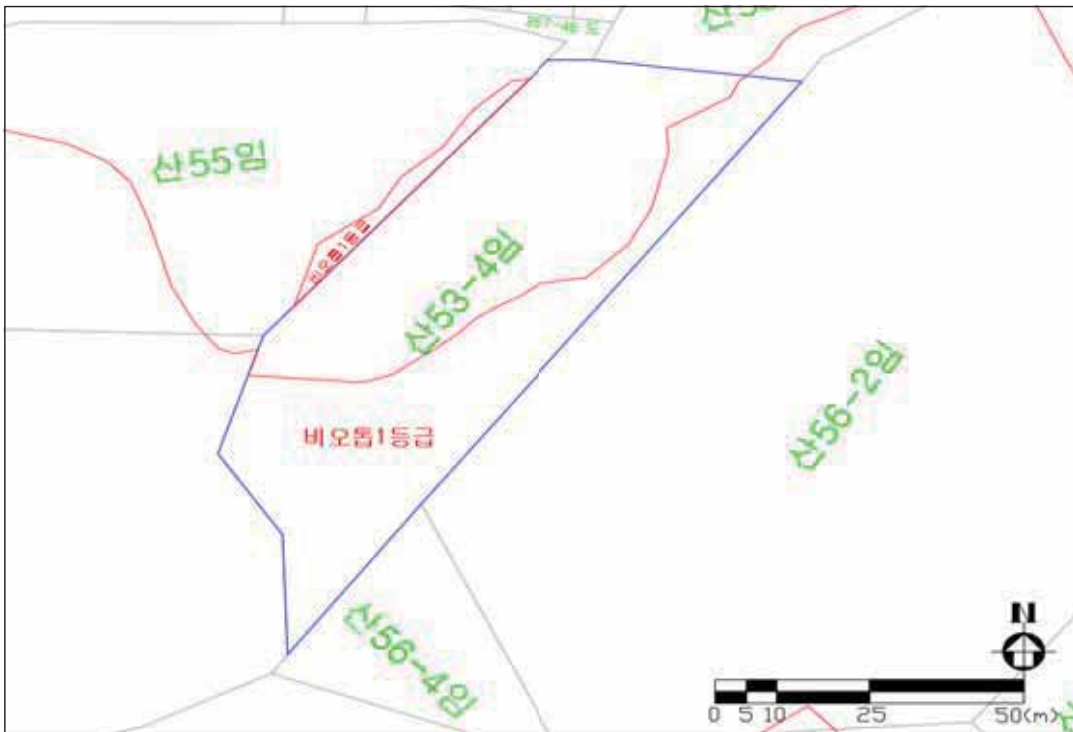
도면 2021-2-03. 구로구 향동 산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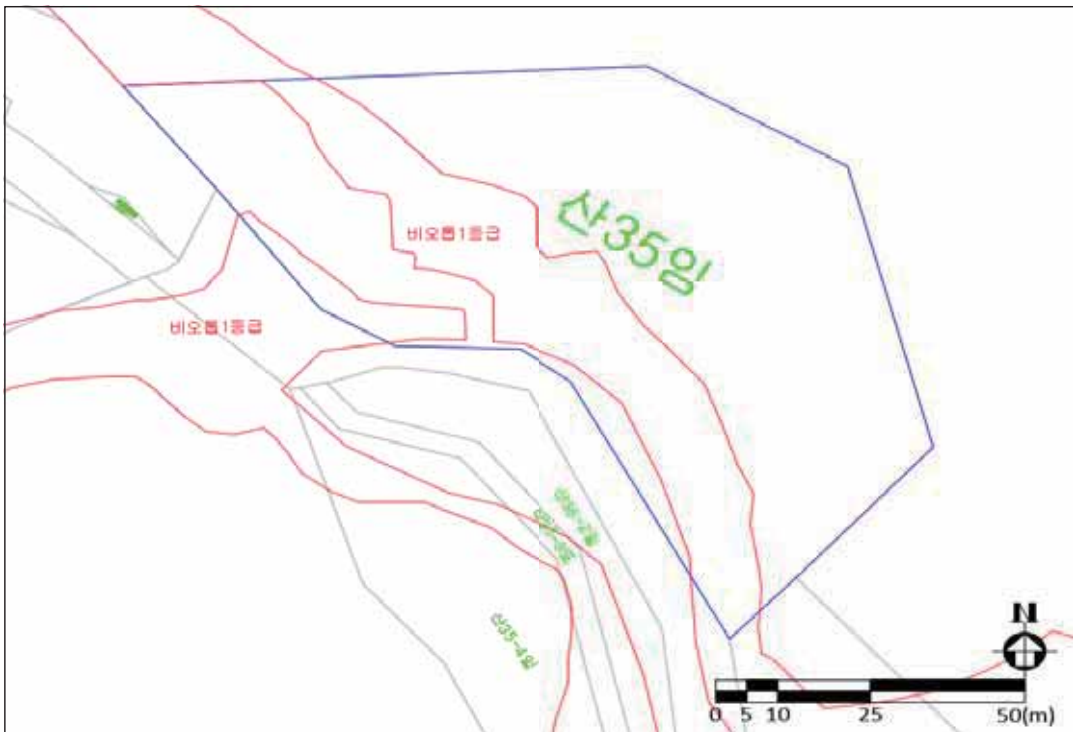
도면 2021-2-04. 구로구 향동 산23-6, 50-2



도면 2021-2-05. 은평구 갈현동 산53-4



도면 2021-2-06. 은평구 진관동 산35



2021 - 526

2

()

E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95호(2013.6.20.)로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4(2018. 8. 23.)호로 일몰기한 연장 고시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의 환원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의 해제

가. 정비사업의 명칭: 봉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해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봉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6,759.2	2013.6.20. (서고시 제2013-195호)
변경	해 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 정비계획 폐지

1) 토지이용계획(변경) :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59.2	-	6,759.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487.9	감) 450.5	1,037.4	15.3	-
	도로	546.0	증) 491.4	1,037.4	15.3	-
	광장	941.9	감) 941.9	-	-	-
획지	소계	5,271.3	증) 450.5	5,721.8	84.7	-
	획지1	5,271.3	증) 450.5	5,721.8	84.7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6,759.2	-	6,759.2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759.2	6,759.2	100.0	-
준주거지역	6,759.2	감) 6,759.2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759.2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56	봉천동 923-2	봉천동 912-1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8	6	국지 도로	56	봉천동 923-2	봉천동 912-12	일반 도로	-	-	환원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56	봉천동 926-29	봉천동 923-1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56	봉천동 926-29	봉천동 923-17	일반 도로	-	-	환원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소로3-8	• 도로폭 축소 - 기정: 12m → 변경: 6m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소로2-2	소로3-7	• 도로폭 축소 - 기정: 9m → 변경: 6m	

나)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①	광장	일반광장	봉천동 923-14번지 일대	941.9	감) 941.9	-	서고 제2013-195호 ('13.6.20.)	-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일반 광장	●일반광장 폐지(941.9㎡)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 9) 임대(장기전세)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2.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E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봉천동 특별계획구역 E	봉천동 923-1번지 일대	6,759.2	감) 1.2	6,758.0	재정비 결정고시(서고 제2008-52호: '08.2.28)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주요 결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이하 ●허용용적률 : 450% 이하 ●상한용적률 : 500% 이하	●기준용적률 : 250% 이하 ●허용용적률 : 350% 이하 ●상한용적률 : 4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70m 이하	-
허용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도서관), 문화 및 접회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 소, 고시원 제외), 주거복합시설(단,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은 90% 미만) ※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지상1~3층 주거용도 불허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 판매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용도	-
권장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주거복합시설(단,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은 90% 미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 판매시설	-
건축선	●남부순환도로변: 건축한계선 5m ●봉천북개도로변: 건축한계선 5m ●그 외 대지경계: 건축한계선 1m	●남부순환도로변: 건축한계선 5m ●봉천북개도로변: 건축한계선 3m ●그 외 대지경계: 건축한계선 1m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해제사유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13.06.20.)부터 5년이 되는 날('18.06.19.)까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연장하였으나, 연장만료일('20.06.19.)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

4.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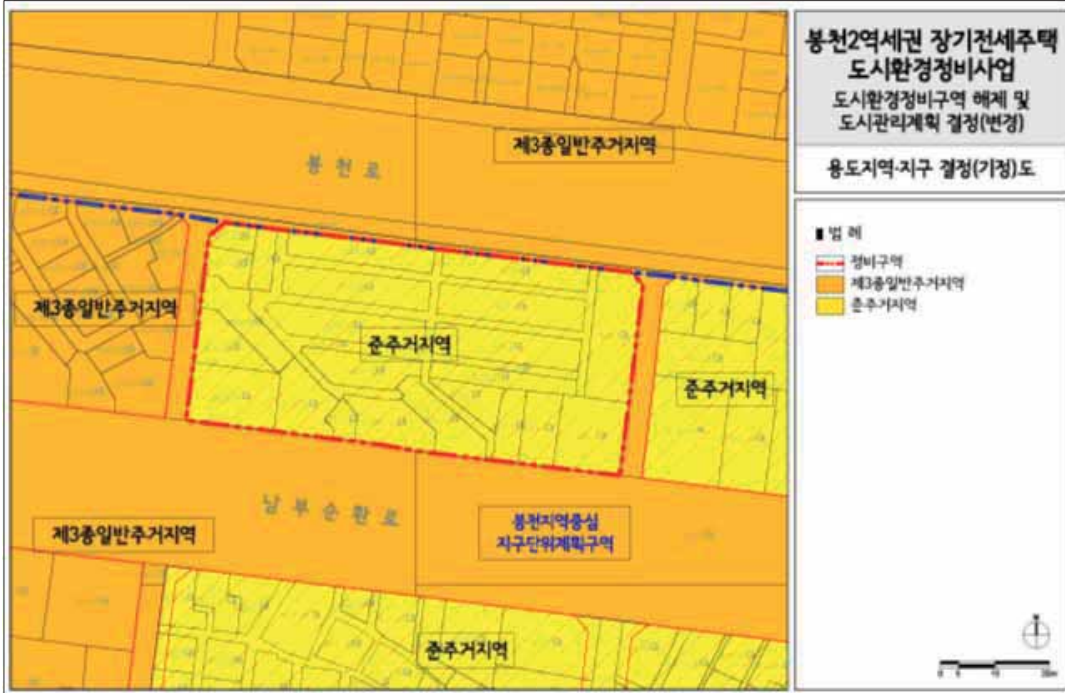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02-2133-8239)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0-636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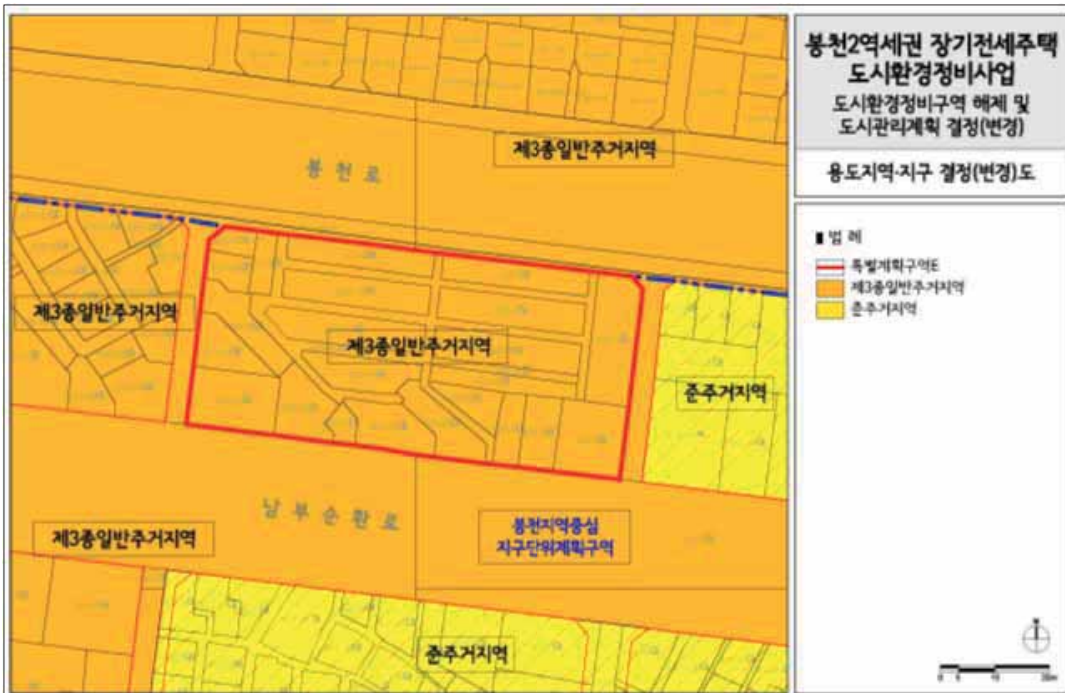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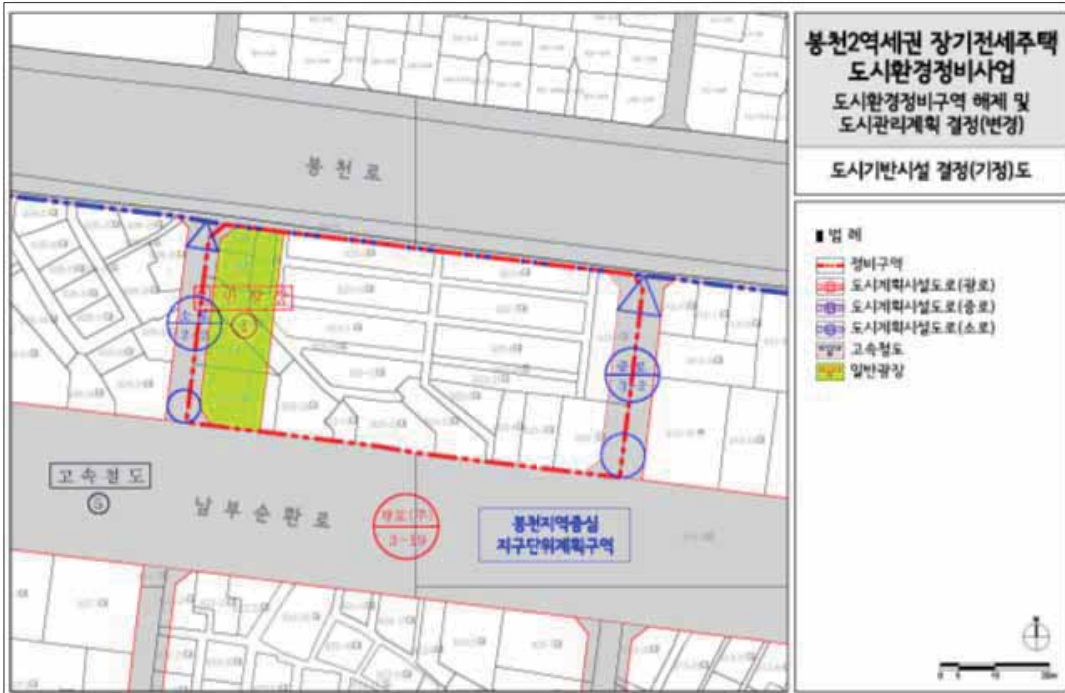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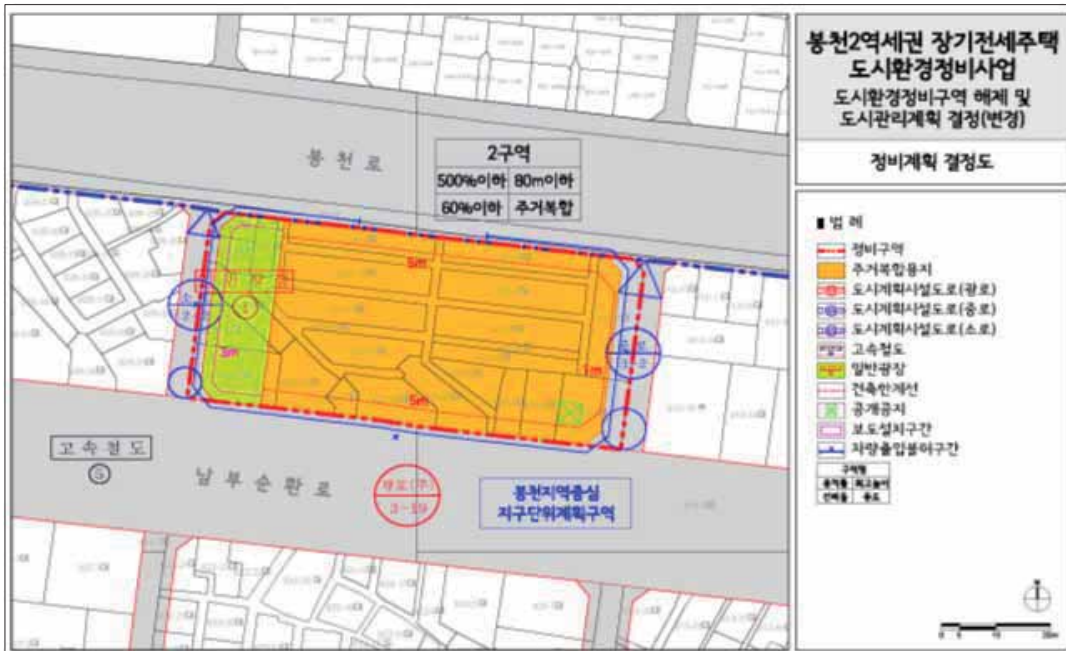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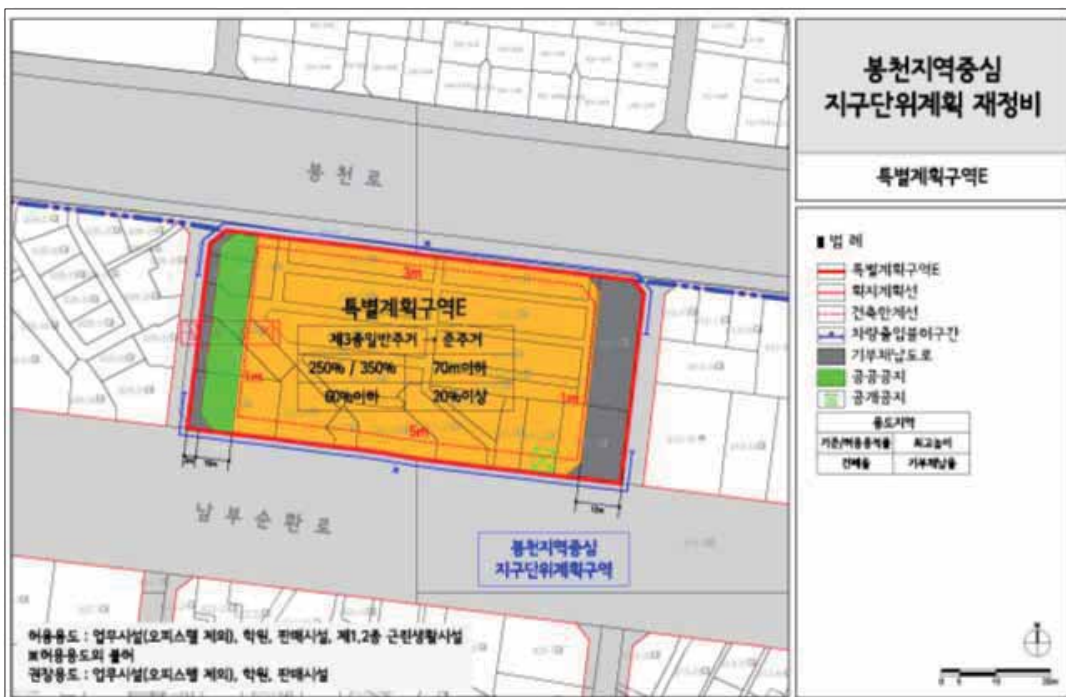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 결정도(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Bongcheon Area Center Sub-area Urban Planning Decision (Special Planning Area E)



2021 - 527

173 - 1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4호로 결정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176-81번지
- 면 적 : 1,539.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9월 2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이치컴퍼니
- 대표자 성명 : 장 은 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796966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1,526.0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100%	-	-	-
		176-81		13.0						
합계				1,53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건물 (근생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88. 06.30.	3,917.71	1	5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	-	-
합계				1,539.0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39.0	감) 1,523.0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23.0	1,523.0	98.9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 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132,352.0 (1,539.0)	-	132,352.0 (1,53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 ('96.10.1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촉진지구(사업대상지) 면적임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성북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241-26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석관동 173-1번지, 176-81번지
- 면 적 : 1,539.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돌곶이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이치컴퍼니
- 대표자 성명 : 장 은 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7969665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523.0	98.9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16.0	1.1	-
합 계	1,539.0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352인

2) 주택건설계획 : 242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 TYPE	48	19.8	48	13.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48 TYPE	14	5.8	38	10.8	
	소계	62	25.6	86	24.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 TYPE	128	52.9	128	36.4	
	48 TYPE	52	21.5	138	39.2	
	소계	180	74.4	266	75.6	
합 계		242	100.0	352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대상지 내 일반건축물은 1개동이며, 5층 건축물이 위치해있음
- 지상 외부공간 대부분이 포장면으로 대상지 내에 공원 및 녹지 부재
- 대상지 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 할 계획임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계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39.0	감) 1,523.0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23.0	1,523.0	98.9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132,352.0 (1,539.0)	-	132,352.0 (1,539.0)	서울특별시도시 제1996-275호 ('96.10.1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축진지구(사업대상지) 면적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0	-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	1,523.0	98.9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화랑로, 돌곶이길, 한천로, 이문로)	3,000	- 적용예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2,000	

(2) 공동개발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획지계획	• 단위필지 또는 공동개발 필지	
공동개발(지정)	• 대지분할 최소규모(근린상업지역 : 150㎡, 준주거지역 : 90㎡) 미달 필지 •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미접도 필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 이면도로 확폭 구간변 필지 - 공공시설 확보 후 잔여필지 면적이 대지분할 최소규모미만 필지 • 공공공지 확보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별도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	

(3)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대지면적			비고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B2	1,503	석관동 173-1	1,526.0	1,490.0	• 공동개발(지정)
			석관동 176-81	13.0	13.0	
변 경	B2	1,523	석관동 173-1	1,526.0	1,510.0	• 공동개발(지정)
			석관동 176-81	13.0	13.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가구면적 변경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기 정	불허 용도	준주거 지역 (B)	전층	•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미관지구 적용대지에 한함)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과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욕외철담 골프연습장	
	권장 용도	간선변 (A)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1층제외), 사무소, 공연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교육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절대정화구역 제외)	
			특정층	• 화랑로변 건축물은 전면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	
변경	지정 용도	(가)	• 공동주택(주거복합)^{주)} ※단, 지하1,2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석관동 173-1번지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불허 용도	일반 상업 지역 (C)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허용도 변경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① 건폐율 (변경없음)

② 용적률 (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36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변 경	일반상업지역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주)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 높이 (변경)

구 분		건축물 높이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 간선변 : 획지구도에 따른 높이적용 (70m ~ 50m 이하)	-
변경	일반상업지역	• 80m 이하 ^{주)}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서고지 제2019-2호)」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높이 기준을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용역을 및 건축물 높이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밀도계획 변경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3m	• 간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3m • 이면부 : 차도형 전면공지 1~3m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 간선변 필지에 조성위치 지정 • 공개공지 미설치대상 건물은 대지내조경을 쌈지형태로 설치 권장 - 조성면적 기준:25㎡, 폭원4m이상 - 28개소	• 간선변 필지에 조성위치 지정 • 공개공지 미설치대상 건물은 대지내조경을 쌈지형태로 설치 권장 - 조성면적 기준:25㎡, 폭원4m이상 - 28개소	결정도 참조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특별계획구역2구역 내 1개소(폭 6m)	• 좌동	변경없음
	보차혼용 통로	• 이면부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 1개소(폭 6m, 건축한계선)	• 좌동	변경없음
	보행자 우선도로	• 간선변으로의 차량진출입을 제어하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 6개소 (폭 1.5~4m)	• 좌동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전면공지 - 이면부 : 차도형 1~3m(신설)	• 원활한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이면도로 일부구간에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 조성형태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공개공지 미설치 건물에 해당되어 공개공지를 쌈지형공지로 조성형태를 변경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마) 인센티브 항목 (변경)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2)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 이상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비주 비율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세어형 포함)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건축물형태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커뮤니티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 시설 별도 설치 - 100호~300호 미만 : 150㎡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허가 시 변동될 수 있음

바) 공공기여 계획 (신설)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이하	• 부지면적의 20%이상 - 304.6㎡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08.52㎡ (20.26%)	
도시기반시설(도로)	-	-	• 도로 설치 및 제공 - 4㎡ (0.25%)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1,526.0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100%	-	-	-
		176-81		13.0						
합계				1,53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관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건물 (근생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88. 06.30.	3,917.71	1	5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	-	-
합계				1,539.0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 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도로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4㎡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2) 계획기준 및 근거

- 도시계획도로 대로3-40에 포함된 토지를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30	주간선 도로	11,530 (205)	군자동 (석관동 179-4)	수유동 (장위동 44-6)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성북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1,539.0	100.0	-	-	-
주택건설용지	1,523.0	98.9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반시설용지	16.0	1.1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부채납 : 4㎡ - 건축선 후퇴 : 12㎡

2021 - 5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일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 나. 생활가로변 공동주택 단지와의 경계 없는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로 형성
- 다.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정비모델을 계획함으로써 주변으로의 확산,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85,325.0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획 지	위 치	면 적(㎡)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2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19 일대	52,377.2
	2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9 일대	29,870.5
	2 -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0-11 일대	3,077.3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 122,776.10㎡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획 지	용 도	면 적(㎡)	최고 층수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2 -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2,247.7	29층 (106.05m 이하)
	2 - 2			
	2 - 4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3,077.3	-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	획 지	특례 적용내용	특례 적용취지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2 - 1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적용 배제	•구릉지 지형에 순응하는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되는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 계획
	2 - 2		
	2 - 4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07.22)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2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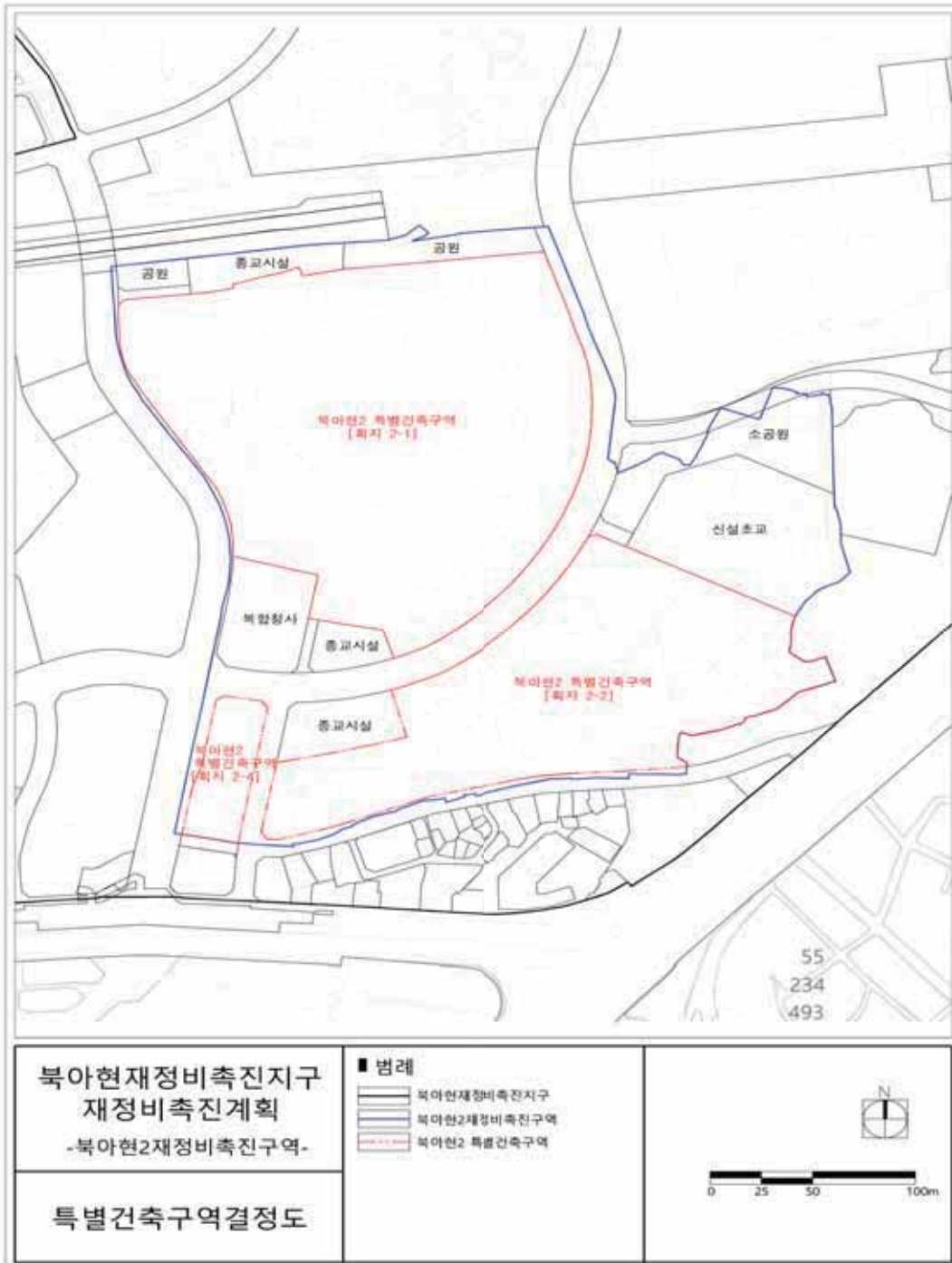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30-19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2021 - 530

20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사유

-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본보고서’와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구 분	변경(신설)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본보고서 145쪽 1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와 구역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보고서’ 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의 관련된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된 내용에 따른 관련 내용의 변경 사항이 관계 법령·조례 등과 상충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 변경 고시된 내용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운용한다.
- 본보고서 -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 및 -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	- 다 음 - •(주거정비지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거정비지수 및 대상지 선정기준 중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기준은 폐지하되, 주거정비지수는 필요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 세부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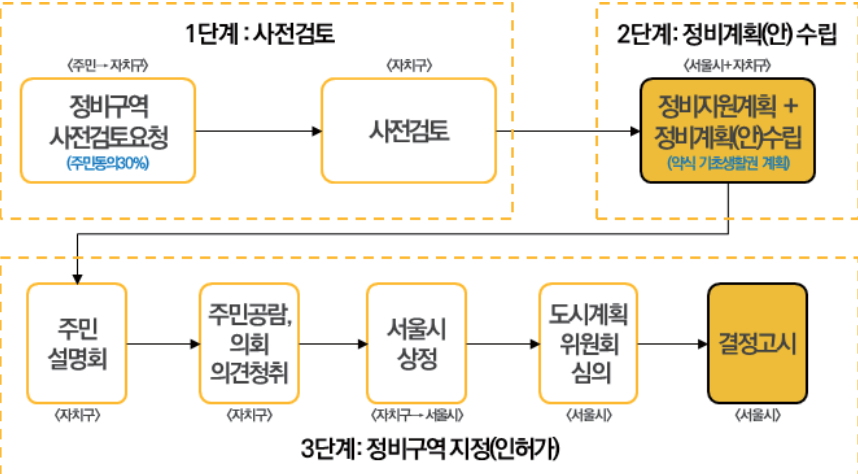
변경(신설)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자료	세입자 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활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변경]

표 5-15. 대상지 선정기준 등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 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 구역 우선 순위 평가 지표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4/5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토지면적의 1/2~4/5	
	노후도		동수 2/3~4/5	
			연면적 2/3~4/5	
	도로연장률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참고 자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세대밀도	세대밀도 150~250	(필요시)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거주자 분포	거주 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거주형태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주민 생활수준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 주민의견,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 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 이상 권장	
	지역 특성	장소적 특성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주변입지 특성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일반특성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신축건물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자가평가자료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구 분	변경(신설)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103쪽) [기정]  [변경]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은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방침으로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4. 경과조치

- 금회 변경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및 주민동의율 등 변경내용에 대한 적용은, 이미 종전 절차상 사전타당성 검토(1단계) 이상 착수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2단계) 이전인 사전타당성검토 단계(1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운영한다. 다만, 사전타당성검토 단계(1단계)에 있는 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주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 조율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종전 절차상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은 주민의견조사 (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 확인 절차 생략 등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금번 변경된 사전검토 요청시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한 후 변경된 절차 등에 따라 진행한다.

나. 종전 절차상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종전 동의율 기준을 따른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06) 및 자치구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일 열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 - 532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일대에 대하여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1.7.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남산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도심 주거지로서 기존 특성을 유지하고, 지역 내 도심산업을 관리하는 등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필동 일대	-	증) 366,553.9	366,553.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중구 남학동, 예장동, 필동1가, 필동2가, 필동3가, 목정동, 장충동2가 일대 - 면적 : 366,553.9㎡	- 남산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도심 주거지로서 기존 특성을 유지하고, 지역 내 도심산업을 관리 하는 등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6,553.9	-	366,553.9	100.0	
주거 지역	소 계	362,549.8	-	362,549.8	98.9	
	제1종일반주거지역	174,705.4	-	174,705.4	47.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7,800.3	-	187,800.3	51.2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	-	44.1	0.1	
상업 지역	소 계	4,004.1	-	4,004.1	1.1	
	일반상업지역	4,004.1	-	4,004.1	1.1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1) 경관지구

(1) 경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경관지구 (남산지구)	자연 경관지구	필동, 남산, 이대원, 장충동 일대	969,751 (12,169)	-	-	건고235호 (1977.12.3.)	3층이하, 12m이하
기정	①	경관지구 (남산공원)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회현동 일대	700,000 (88,613)	-	-	건고235호 (1977.12.3.)	4층이하

※ 면적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고도지구

(1) 고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고도제한 내용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남산주변 고도지구	고도지구	필동2·3가, 장충동2가 일대	1,014,112 (139,385)	12m 이하	서고93호 (1995.4.6.)	
기정	②	남산주변 고도지구	고도지구	필동2·3가, 장충동2가 일대	1,434,427 (214,544)	20m 이하	서고93호 (1995.4.6.)	

※ 면적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제한 완화사항은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4-110호(2014.03.))」 및 「북한산·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2014.03.)」에 따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9	15	보조간선 도로	220 (170)	충무로4가 125-11	필동2가 77-3	일반 도로	내고 제449호 (1958.11.3.)	필동로
기정	중로	2	50	15	보조간선 도로	850 (691)	충무로5가 78-1	필동3가 78-9	일반 도로	내고 제449호 (1958.11.3.)	서애로
기정	중로	3	-	12~15	보조간선 도로	170 (-)	목정동 28-5	목정동 27-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54호 (1964.6.4.)	퇴계로 50길
변경	중로	3	1	12~15	보조간선 도로	180 (117)	목정동 25-21	목정동 27-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54호 (1964.6.4.)	
신설	소로	1	목정1	7	국지도로	95	목정동 29-23	목정동 29-32	일반 도로	-	서애로 1길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205 (73)	충무로4가 74-2	필동2가 70-1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432호 (1963.7.1.)	서애로
기정	소로	4	11	4	국지도로	180 (136)	남학동 13-2	남학동 25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432호 (1963.7.1.)	퇴계로 28길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8	필동1가 24-6	필동1가 24-2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13호 (2006.3.16.)	퇴계로 30길
변경	소로	3	필동1	6	국지도로	58	필동1가 24-6	필동1가 24-2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13호 (2006.3.16.)	
신설	소로	3	필동2	5~7	국지도로	112	필동2가 19-11	필동2가 18-15	일반 도로	-	퇴계로 36길
기정	소로	3	-	6	-	70	필동2가 129-1	필동3가 76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29호 (1996.7.22.)	필동로 6길, 8길
변경	소로	3	필동3	6	국지도로	70	필동2가 129-1	필동3가 76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29호 (1996.7.22.)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40	목정동 26-1	목정동 22-8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64호 (2009.12.24.)	퇴계로 50길
변경	소로	3	목정2	4	국지도로	40	목정동 26-1	목정동 22-8	일반 도로	충구고시 제64호 (2009.12.24.)	
기정	-	-	-	-	-	-	-	-	-	-	동호로 27길
변경	소로	3	장충1	6~8	국지도로	138	장충동2가 193-15	목정동 18-9	일반 도로	-	
기정	-	-	-	-	-	-	-	-	-	-	동호로 25길
변경	소로	1	장충2	10	국지도로	420	장충동2가 193-239	목정동 25-2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장충3	4	국지도로	65	장충동2가 193-183	장충동2가 193-38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장충4	4	국지도로	84	장충동2가 193-142	장충동2가 193-25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장충5	4	국지도로	312	장충동2가 193-242	장충동2가 193-3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장충6	4	국지도로	23	장충동2가 193-119	장충동2가 193-117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장충7	4	국지도로	17	장충동2가 193-346	장충동2가 193-407	일반 도로	-	

※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	중로 3-1	• 기점 변경	• 도시계획도로 단절구간의 현행도로(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 1-목정1	• 도로 신설	• 현행도로(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 3-필동2		
소로 3-	소로 3-필동1	• 번호 부여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번호 부여
소로 3-	소로 3-필동3		
소로 3-	소로 3-목정2		
-	소로 3-장충1		
-	소로 1-장충2	• 번호 부여	• 기존에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폭원과 선형을 고려하여 도로 노선을 구분하고 각각의 노선번호 부여
	소로 3-장충3		
	소로 3-장충4		
	소로 3-장충5		
	소로 3-장충6		
	소로 3-장충7		

2) 주차장

(1)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필동2가 83-1 일대	693.1	-	693.1	중구고시 제75호 (2001.10.29.)	남산한옥마을 공영주차장
기정	②	주차장	장충동2가 193-39 일대	1,740.6	-	1,740.6	중구고시 제28호 (2002.5.23.)	장충 공영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필동3가 62-12	576.9	-	576.9	중구고시 제26호 (2004.3.20.)	필동 공영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남학동 25-1	373.8	-	373.8	중구고시 제33호 (2001.5.4.)	
기정	②	공공공지	필동2가 111-2	358.3	-	358.3	중구고시 제51호 (2002.8.16.)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1) 학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초등 학교	장충동2가 173-7 일대	12,089	-	12,089	서울시고시 제557호 (1978.10.30.)	충무초등학교

■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①	35 이하	120 이하	5 이하	

2)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문화 시설	필동2가 84-1 일대	61,170	1,988.7	63,158.7	서울시고시 제83호 (2006.3.16.)	남산한옥마을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 면적 변경 - 61,170㎡ → 63,158.7㎡	• 현재 한옥마을로 이용되고 있으나 문화시설로 미결정된 필지를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경계 조정

■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①	30 이하	75 이하	3 이하 (12m 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역사·문화자원과 옛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은 없음

나.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완화기준
		기준	완화	
최대 개발 규모	주자1, 주자2, 주자3, 필동3	200㎡ 이하	300㎡ 이하	권장용도 도입 시 최대개발규모 완화면적 적용
	필동1-1, 필동1-2, 필동1-3	300㎡ 이하	-	
	필동2-1, 필동2-2, 필동2-3, 가로, 장충1-1, 장충1-2, 장충2	300㎡ 이하	4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공동개발 계획(공동개발 지정 또는 권장)이 수립된 대지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 건축협정 시 건축협정이 체결된 부지 전체를 최대개발규모 이하로 개발

다. 공동개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맹지	• 29개소	
공동개발 권장	•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중 공동개발 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	• 9개소	

※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는 공동개발 계획(지정 또는 권장) 수립 대상에서 제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대상	계획내용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해당 구역별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연결한 필지 간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불허함 (※ 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인정한 경우 공동개발 가능) 1. 특정대지의 돌출 등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2.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길이)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3. 공동개발로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1)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	공동개발 권장	남학동 22-10	86.4	1,965.4	
		예장동 2-27	576.5		
		예장동 2-19	1,299.6		
		예장동 2-169	2.9		
-	공동개발 권장	필동1가 24-11	381.9	384.7	
		필동1가 24-42	2.8		
-	공동개발 지정	예장동 1-4	569.9	661.5	
		예장동 1-176	11.6		
		예장동 1-208	26.7		
		필동2가 84-2	10.6		
		필동2가 84-94	19.8		
		필동2가 84-95	9.3		
		필동2가 84-96	0.7		
		필동2가 84-114	12.9		
-	공동개발 지정	예장동 1-17	188.4	207.2	
		예장동 1-18	18.8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20-2	228.1	502.1	
		필동2가 20-3	58.3		
		필동2가 20-4	84.0		
		필동2가 20-5	110.4		
		필동2가 72-18	19.5		
		필동2가 29-16	1.8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28-11	0.1	52.6	
		필동2가 29-25	52.5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21-24	8.9	104.8	
		필동3가 21-41	95.9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20-12	421.8	456.9	
		필동3가 20-19	35.1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0-8	11.2	81.6	
		필동3가 41-3	70.4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0-6	6.6	94.6	

가구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필동3가 40-7	1.7		
		필동3가 41-1	86.3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101-1	2,161.0	3,073.6	
		필동2가 101-5	593.7		
		필동2가 101-10	305.7		
		필동2가 101-7	1.6		
		필동2가 101-8	11.6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5-6	165.6	2,535.2	
		필동2가 102	1,326.6		
		필동2가 102-1	33.4		
		필동2가 102-3	448.3		
		필동2가 102-7	545.8		
		필동2가 84-25	15.5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03-1	333.2	340.8	
		필동2가 84-138	7.6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06-2	480.0	491.3	
		필동2가 106-3	6.0		
		필동2가 107-2	3.9		
		필동2가 107-4	1.4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8-1	373.6	593.1	
		필동3가 48-3	200.0		
		필동3가 48-4	17.4		
		필동3가 48-6	2.1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55-1	214.3	222.9	
		필동3가 55-20	8.6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4-6	357.4	637.1	
		필동2가 84-27	173.2		
		필동2가 84-38	38.7		
		필동2가 84-39	29.1		
		필동2가 84-40	19.2		
		필동2가 84-41	19.5		

가구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62-23	22.8	290.9
		필동3가 62-27	13.2	
		필동3가 62-28	23.1	
		필동3가 62-29	24.1	
		필동3가 62-30	55.2	
		필동3가 62-31	48.6	
		필동3가 62-32	94.9	
		필동3가 62-46	9.0	
-	공동개발 권장	필동3가 62-11	492.6	518.8
		필동3가 62-45	26.2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122-3	399.4	433.5
		필동3가 61-22	34.1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43	476.1	481.5
		예정동 1-209	5.4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4-133	7.4	330.4
		예정동 1-77	125.6	
		필동2가 84-55	197.4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128	122.3	325.9
		예정동 1-129	8.6	
		예정동 1-130	195.0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28-5	433.1	607.6
		예정동 1-2	132.2	
		예정동 1-125	32.2	
		예정동 1-192	5.1	
		예정동 1-3	5.0	
-	공동개발 권장	필동3가 71-3	20.2	356.6
		필동3가 72-15	5.6	
		필동3가 72-10	176.6	
		필동3가 72-11	153.1	
		필동3가 72-16	1.1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165	466.1	624.4
		예정동 1-166	27.4	
		필동2가 134-17	10.9	
		예정동 1-167	120.0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34-10	454.9	604.6
		필동2가 134-11	50.6	
		필동2가 134-12	21.5	
		필동2가 134-21	77.6	

가구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79-1	310.7	1,291.0	
		장충동2가 192-11	941.6		
		장충동2가 192-89	38.7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79-4	672.1	679.4	
		필동3가 79-48	7.3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92-134	2,393.0	2,394.6	
		장충동2가 192-13	1.6		
-	공동개발 권장	장충동2가 192-14	370.6	664.5	
		필동3가 79-18	290.9		
		필동3가 79-61	3.0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8-10	308.8	473.5	
		목정동 28-11	19.2		
		목정동 28-12	1.0		
		목정동 28-13	130.6		
		목정동 28-32	13.9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9-41	157.6	158.3	
		목정동 29-43	0.7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3	404.9	723.9	
		목정동 18-42	113.4		
		장충동2가 180-10	199.0		
		장충동2가 186-209	6.6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29	694.9	4,571.2	
		목정동 20	988.1		
		장충동2가 186-54	2,794.7		
		장충동2가 193-15	69.4		
		장충동2가 186-206	17.5		
		장충동2가 186-208	6.6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27	970.3	1,043.4	
		장충동2가 192-40	49.0		
		장충동2가 192-124	24.1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1-13	33.1	726.1	
		장충동2가 193-65	693.0		
-	공동개발 권장	장충동2가 191-76	1.0	404.1	
		장충동2가 191-78	358.2		
		장충동2가 191-75	25.0		
		장충동2가 191-77	19.9		

2)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사유서

가구번호	구분	위치		계획사유
-	공동개발 권장	남학동	22-10	과소필지
-	공동개발 권장	예정동	2-27, 2-19, 2-169	
-	공동개발 권장	필동1가	24-11, 24-42	과소필지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4, 1-176, 1-208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4-2, 84-94, 84-95, 84-96, 84-114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17, 1-18	맹지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20-2, 20-3, 20-4, 20-5, 72-18, 29-16	과소필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28-11, 29-25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21-24, 21-41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20-12, 20-19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0-8, 41-3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0-6, 40-7, 41-1	맹지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101-1, 101-5, 101-10, 101-7, 101-8	과소필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5-6, 102, 102-1, 102-3, 102-7, 84-25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03-1, 84-138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06-2, 106-3, 107-2, 107-4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48-1, 48-3, 48-4, 48-6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55-1, 55-20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4-6, 84-27, 84-38, 84-39, 84-40, 84-41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62-23, 62-27, 62-28, 62-29, 62-30, 62-31, 62-32, 62-46	맹지
-	공동개발 권장	필동3가	62-11, 62-45	과소필지/부정형필지
-	공동개발 권장	필동2가	122-3	부정형필지
-	공동개발 권장	필동3가	61-22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43, 1-209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84-133, 84-55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77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128, 1-129, 1-130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28-5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2, 1-125, 1-192, 1-3	
-	공동개발 권장	필동3가	71-3, 72-15, 72-10, 72-11, 72-16	과소필지/부정형필지
-	공동개발 지정	예정동	1-165, 1-166, 1-167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34-17	
-	공동개발 지정	필동2가	134-10, 134-11, 134-12, 134-21	맹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79-1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92-11, 192-89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79-4, 79-48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92-134, 192-13	맹지
-	공동개발 권장	장충동2가	192-14	과소필지
-	공동개발 지정	필동3가	79-18, 79-61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8-10, 28-11, 28-12, 28-13, 28-32	맹지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9-41, 29-43	맹지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3, 18-42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80-10, 186-209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29, 20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86-54, 193-15, 186-206, 186-208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18-27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92-40, 192-124	
-	공동개발 지정	목정동	21-13	맹지
-	공동개발 지정	장충동2가	193-65	
-	공동개발 권장	장충동2가	191-76, 191-78, 191-75, 191-77	과소필지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각 용도지역·지구별로 도입 가능한 용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 범위 내에서 적용구역 또는 부지 별로 입지 가능한 용도를 별도로 정함.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 불허용도

- 불허용도가 계획된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각 용도지역·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를 불허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도입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도 아래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함.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불허1	주자2 주자3 필동3 필동2-1 필동2-3 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 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불허2	주자1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불허3	필동1-1 필동1-2 필동1-3 필동2-2 장충1-2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불허4	장충1-1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복합유통개입제공업의 시설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차고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불허5	장충2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유흥음식점업 허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등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불허3	필동1-1 필동1-2 필동1-3 필동2-2 장충1-2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교육연구시설	동·식물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불허4	장충1-1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차고	
			수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불허5	장충2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 의사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유흥음식점업 허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등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불허5	장충2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	

2) 권장용도

- 권장용도가 적용된 구역에서 다음의 용도 도입을 권장함.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권장1 (전층)	주자2 주자3 필동3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 한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중 극장, 연예장, 음악당	
			전시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권장2 (전층)	주자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 한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호텔	
권장3 (1층)	필동2-1 필동2-3 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점	
			사진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권장4 (전층)	장충1-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한함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중 극장, 연예장, 음악당	
			전시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가 1층을 포함하여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50% 이상 도입 시 인정

※ 1층 권장용도는 1층 가로변 벽면길이 및 1층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5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3) 용도 완화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부 구역에 한하여 다음 용도를 완화하여 적용함.

구 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완화1	필동2-1 필동2-3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구역 내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

나. 건축물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고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름

2)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150% 이하	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상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함

※ 자연경관지구는 용적률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중점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 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중점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중점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등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 구조 : $\alpha=1.5$ ※ 필로티 또는 침상형 구조 : $\alpha=1.0$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 $\times 0.1$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5등급 제외)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② 중점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지역(역사)자산 보전	흔적 남기기	기준용적률 $\times 0.05$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사업부지 내 전시공간 유치 등 중구 건축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면적}) \times 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3) 상한용적률 완화

구 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	부지 기부채납 시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_{\text{토지}} + 0.7 \times \alpha_{\text{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alpha_{\text{토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지분' 포함 · $\alpha_{\text{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다. 건축물 높이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 최고높이계획기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의 현행 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원형 옛 길변(퇴계로28길)은 「원형 옛 길 변 건축물의 높이기준」 적용
-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계획(서울시고시 제2014-110호(2014.03.))에 따름.
- 고도지구 내 높이계획 완화 시 「북한산·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2014.03.)」 상 규모별 심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동시에 적용

도면표시	적용구역	최고높이	비 고
H-1	필동1-1, 필동2-2, 장충1-2	3층 이하, 12m 이하	자연경관지구 높이기준
H-2	필동1-2	4층 이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높이기준
		12m 이하	고도지구 높이기준
H-3	주자3	12m 이하	원형 옛 길 변 높이기준
H-4	필동1-3	12m 이하	고도지구 높이기준
H-5	주자1, 주자2, 필동2-1, 필동2-3, 필동3, 가로, 장충1-1, 장충2	20m 이하	고도지구 높이기준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건축물의 방향성	구역전체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도로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구역전체	• 기존 골목길이 포함된 공동개발시 골목길의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선 지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건축지정선	퇴계로28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 - 건축물의 외벽면이 대지전면 폭원의 1/2 이상 접해야 함	주요원형옛길 형태보존
건축한계선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확보
	동호로변	• 주요가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3m 후퇴	

2)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침’ 과 각 구역의 특성 반영 및 특색강화를 위해 특화가로구역에 적용되는 ‘구역별 특화지침’ 으로 구분하여 적용
- 특화가로구역은 「24번가구역」, 「한옥마을인접구역」, 「퇴계로36길구역」, 「필동로구역」, 「퇴계로50길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공통지침’ 및 해당되는 ‘구역별 특화지침’을 모두 준수

■ 공통지침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구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기존 건물과 조화(파라펫 높이 일치)	○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 분절을 권장		○
진입구처리	• 건축물 주출입구의 1층 바닥은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옥상부 등의 처리	• 옥탑층 및 옥탑부 설비시설이 가로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벽 등의 차폐요소를 사용 • 옥상부 설비시설은 보행자 시야를 고려하여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로부터 3m 이내의 설치를 금지	○	
기타 설비물 처리	• 외벽에 부착되는 설비시설은 집약화/축약화하여 배치하고 가로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및 식재로 차폐할 것을 권장		○
옹벽 조성방식	• 가로에 면한 옹벽의 높이는 가급적 최소한의 높이로 설치를 권장 •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조성을 권장		○
담장의 높이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최대 1.5m 이하, 상부 투시형으로 설치 시 1.8m까지 조성 • 단, 옹벽 위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를 최대 1.2m 이하, 상부 투시형으로 설치 시 1.5m 이하까지 조성 • 생활터리나 교목의 밀식으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담장 높이 산정에서 제외 (단, 식재를 위한 화단의 높이를 1m 이하로 조성할 경우에 한함)	○	
	• 주거용도 이외의 건축물일 경우 담장은 가급적으로 설치하지 않거나, 생활터리 또는 투시형의 낮은 담장으로 조성 권장		○
지붕의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조성 또는 평지붕 시 옥상에 녹화공간 조성을 권장 • 지붕의 구배는 최소 3/10 이상 최대 10/10 미만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경사지붕 위 설비 노출 최소화, 노출 시 지붕 혹은 외벽과 어울리는 재료로 가림막 설치 권장		○
색채	• 전통적인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 원색, 또는 명도나 채도가 높은 색상의 사용금지 • 강조색의 경우 전체 입면 면적의 10% 이내로 사용	○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범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재료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석재 물갈기 등)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도로 사용 금지	○	
	• 역사문화자원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되는 재질의 사용을 권장 • 목재나 석재, 벽돌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을 권장		○

■ 구역별 특화지침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24번가구역	1층 개구부는 투시율이 낮은 재료의 사용을 금지, 1층 벽면 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에서 셔터 설치 지양. 설치 시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인접 건물과 이격 거리가 3m 미만일 경우 포켓가든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색채의 경우 '서울시 정립 및 체계화'의 역사문화경관 + 시가지경관(상업지)의 권장 색채범위를 사용할 것을 권장		○
한옥마을인접구역	주차장 설치시 보행자 통행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입구 및 진입로 등을 설치	○	
	차고의 셔터를 목재 및 권장색채 색상의 재질을 사용하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
	한옥마을 주변의 자연친화적 경관 조성을 위해, 옥상에 녹화공간 조성을 권장		○
	어닝설치시, 지정된 색채 범위 내에서 어닝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민간지침 참조)		○
퇴계로36길구역	1층 개구부는 투시율이 낮은 재료의 사용을 금지, 1층 벽면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에서 셔터설치지양. 설치시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가로에 면한 담장은 장대석,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자연석, 회벽 등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흑색벽돌, 전벽돌, 석재, 목재 등 전통적 분위기의 소재 및 전통적인 패턴을 사용하도록 권장		○
필동로구역	1층 개구부는 투시율이 낮은 재료의 사용을 금지, 1층 벽면 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에서 셔터 설치 지양. 설치 시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1층부 분할요소는 사인존, 원도우존, 차양존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분절을 통하여 저층부 분리를 권장 - 시각적 분절을 통한 저층부 형성기준은 1층 이하, 또는 5m 이내로 권장		○
	가로에 면한 2층부에 테라스 타입의 입면을 조성할 것을 권장		○
	어닝설치시, 지정된 색채 범위 내에서 어닝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민간지침 참조)		○
퇴계로50길구역	1층 개구부는 투시율이 낮은 재료의 사용을 금지, 1층 벽면 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개구부에서 셔터설치지양. 설치시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1층부 분할요소는 사인존, 원도우존, 차양존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전면공지	동호로변, 필동로변, 서애로변, 퇴계로50길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하는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전면공지 내에는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규제
공개공지	구역전체	-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및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다만, 인접부지에 공원, 광장, 썸지형공지,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규제
대지안의 조경	구역전체	- 대지안의 조경의 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하여 조성 권장 - 건축선 후퇴 부분에 인접하여 풍성한 조경식재와 인접 담장면의 녹화 권장	권장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적용구역	제 어 기 준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호로변 연접 필지	- 간선도로에서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 - 단,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선 도로에서 차량의 출입을 허용	해당부분 도면표기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역사도심기본계획」 상 원형 옛 길 변(퇴계로28길)	원칙적으로 대지와 접한 도로에서 대지안으로 차량 출입이 허용되나, 건축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 지정된 것으로 봄	해당부분 도면표기
	24번가 예술문화골목 일대 (퇴계로30길)		
	한옥마을 인접 필지 (퇴계로32길)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적용구역		적용조건	완화내용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역사도심기본계획」 상 원형 옛 길 변 (퇴계로28길)	• 기존필지 보전시	• 부설주차장 설치 100% 완화	
		24번가 예술문화골목 일대 (퇴계로30길)	• 권장용도 도입 및 건축물 형태 지침 준수 시	• 부설주차장 설치 50% 완화	
		한옥마을 인접 필지 (퇴계로32길)			

※ 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 시, 나머지 50%에 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

■ 건축물 형태 지침 항목

- 원형 옛 길 변 외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에 대하여 권장용도 도입 및 다음 각 목의 지침을 모두 준수 시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적용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통 지침	건축물 외부형태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 분절	
	옹벽 조성방식	• 가로에 면한 옹벽의 높이는 가급적 최소한의 높이로 설치 •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조성	
	담장의 높이	• 주거용도 이외의 건축물일 경우 담장은 가급적으로 설치하지 않거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의 낮은 담장으로 조성	
	지붕의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조성 또는 평지붕 시 옥상에 녹화공간 조성 • 지붕의 구배는 최소 3/10 이상 최대 10/10 미만으로 설치 • 경사지붕 위 설비 노출 최소화, 노출 시 지붕 혹은 외벽과 어울리는 재료로 가림막 설치	

다. 경관에 관한 계획

1) 옥외광고물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옥외광고물	구역전체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서울시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기준을 준수 •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광고물 전체에 대한 바탕조명금지, 조명에 직접적인 색상 사용 불가 (단, 24번가구역은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규제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권장 •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의 설치 권장 •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간판 권장 •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색채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장색채를 사용 • 재료는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사용을 권장 (퇴계로36길구역, 한옥마을인접구역의 경우 간판의 베이스 재료를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 돌, 회반죽 등을 권장)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	권장
	24번가구역, 한옥마을인접구역, 퇴계로36길구역, 필동로구역, 퇴계로50길구역	•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로 설치	규제

2) 야간경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건축물 조명	구역전체	· '서울시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조명기구 노출 금지,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과도한 색상의 변화 및 반복점멸 금지	규제
		· 빛 공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차분하고 은은한 가로 분위기 연출을 권장 ·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권장
건축물 내부조명	24번가구역, 한옥마을인접구역, 퇴계로36길구역, 필동로구역, 퇴계로50길구역	·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을 권장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조명 권장	권장

3)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의 보전활용

6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	구역전체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규제
역사유적터 표시	구역전체	· 대지 내 역사유적터(멸실유적지)가 있는 경우 표식 설치 권장	권장
		· 표식의 설치에 「서울특별시 표식 정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표식분과)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규제
근현대 건축자산 관리	구역전체	·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외형(전면부 형태 등)을 보존할 것을 권장 · 보전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서울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름	권장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기본계획」 상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구 분		명칭	위치
개별 자원	시지정문화재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필동2가 84-1
		관훈동 민씨가옥	필동2가 84-1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필동2가 84-1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재실	필동2가 84-1

구 분		명칭	위치
	근현대 건축자산	한국학성회관	목정동 18-27
	조경요소	필동 「조씨노기」 마애각자	필동2가 134-2
비물리적 잠재요소	열실/매장문화재 표석 등 설치 장소	풀무재	장충동2가 173-7
		읍백당터	예장동 2-1
		남별영터 남소영터	필동2가 84-1
		수도방위사령부터	필동2가 84-1
		노인정터	필동2가 134-2
		남산사터	필동3가 79
	생활유산	엠배서더 호텔	장충동2가 186-54

■ 「서울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상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구 분	종목	명칭	위치
건축물	현대건축	한국의 집	필동2가 80-2
		한국학성회관	목정동 18-27
공간환경	가로/골목길	필동천	필동1가 35-1
		목사동천	필동2가 117

라.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자연지반보존	구역전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을 권장	권장
옥상녹화	구역전체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또는 신축시 건물의 옥상(2층 이상의 옥외부 포함)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조성할 것을 권장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매뉴얼'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
벽면녹화	구역전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구역전체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역전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
녹색주차장	구역전체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권장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제 어 기 준	
생태면적률	구역전체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	규제

4.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결정

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82호에 의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필동2가 51-1 일대(61,994㎡)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의한 적용의 완화

구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비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서애길 류성룡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①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2.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3.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필지에서 대지경계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외벽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신설 제외, 위치 변경에 한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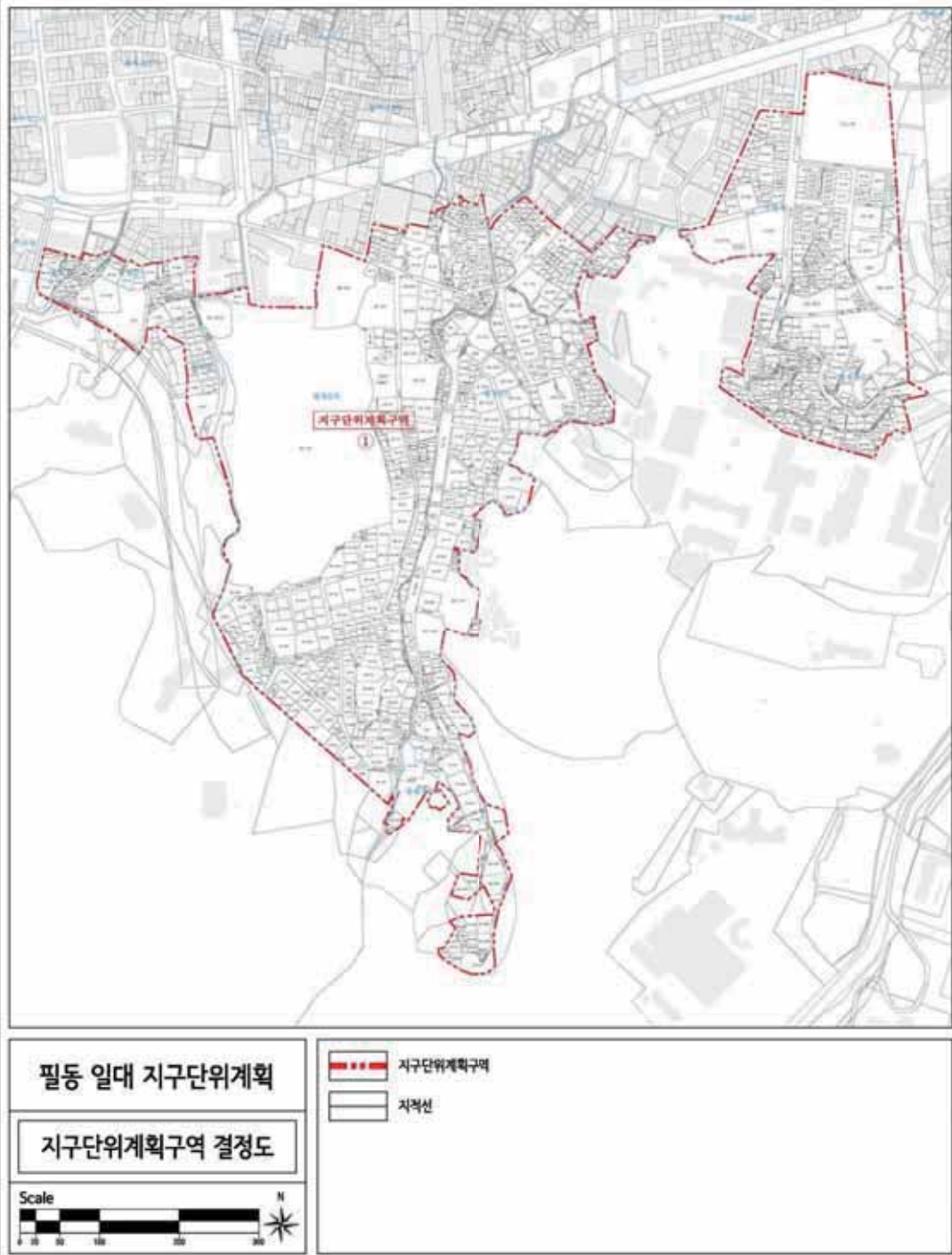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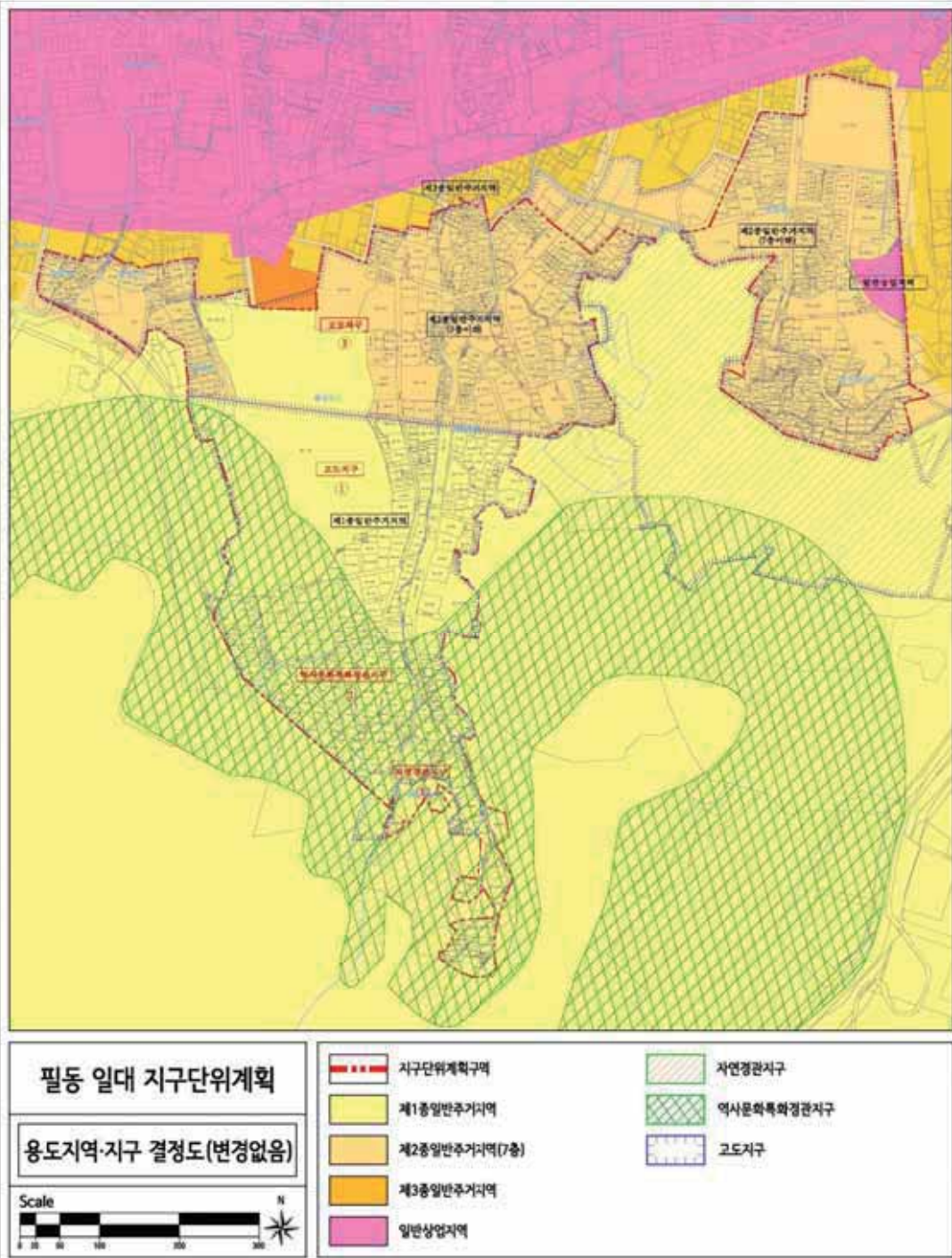
V.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02-2133-8495)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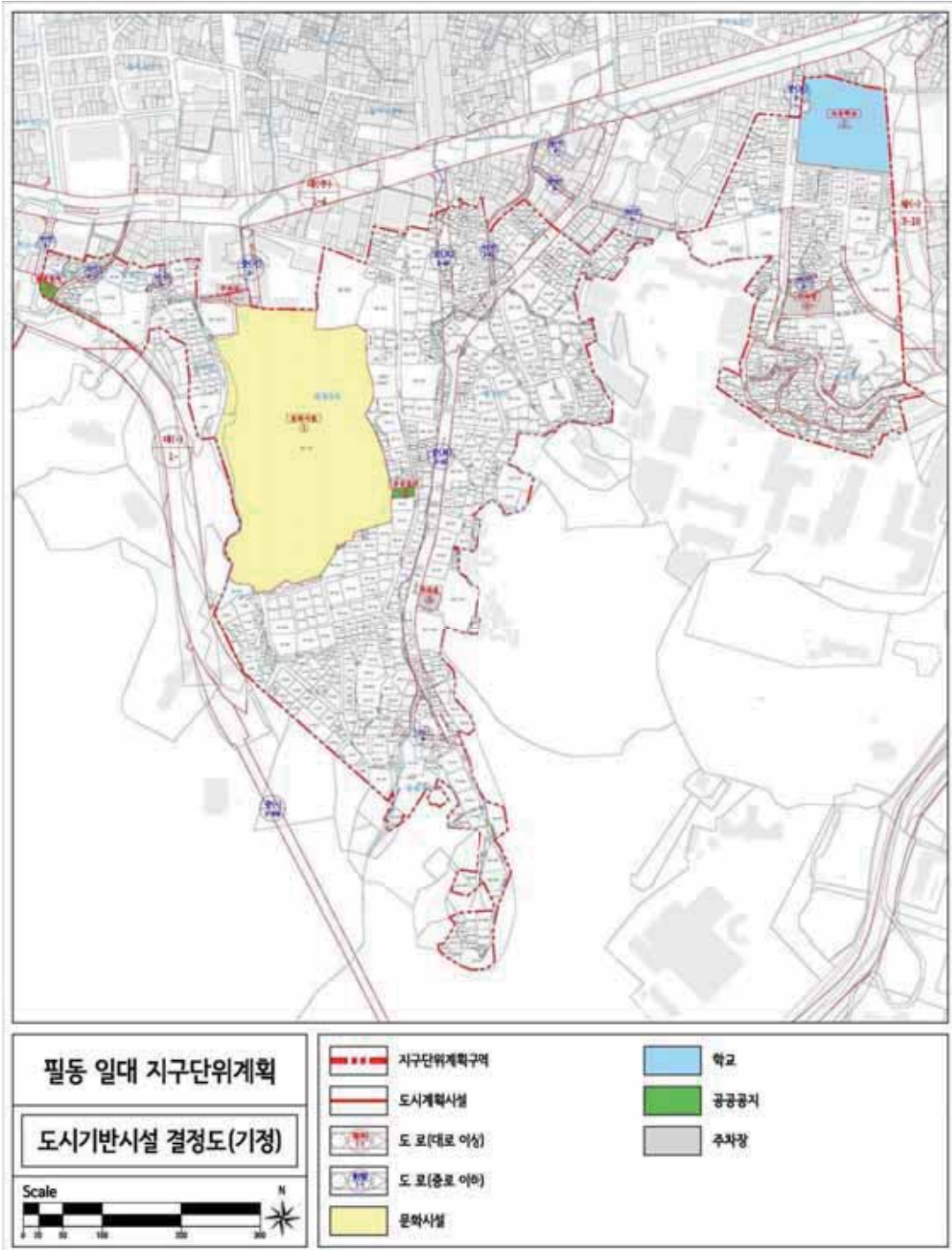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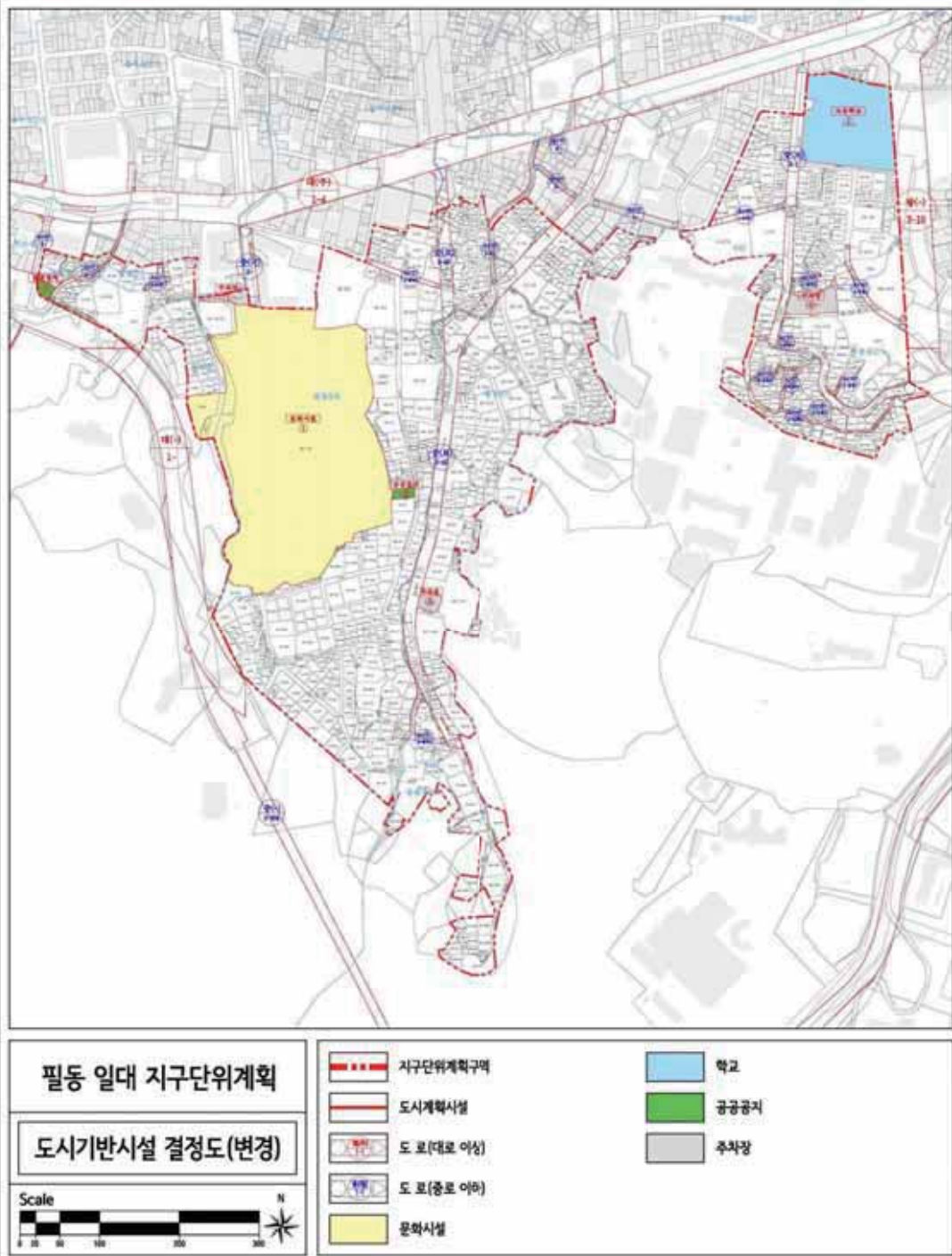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2021 - 533

가

19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적용지역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9. 23.(목) ~ 별도 해제시까지
3. 처분대상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 ※ 유통종사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유통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 검사)을 받을 것
 -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가락시장 출입 및 거래 참여를 제한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5.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 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벌금) 조치될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 - 2411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장 부존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9.24. ~ 2021.10.7. (14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태창피엔지	이*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1206-300호 (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2021.10.7.(목) 10:00 서소문청사 1동 1층 이웃분쟁조정센터	거래상항기록부 보고 미준수	경고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4, FAX 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2426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제22조제2항(시정명령) 위반 기관에 대하여 제24조(등록취소)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1. 9. 23. ~ 2021. 10. 6.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총 35개소(의료기관 1개소, 유치업자 34개소): [붙임] 참조
4. 예정된 행정처분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취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6. 처분근거 :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9호
7.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10.18.
 -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방법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MedicalSeoul@seoul.go.kr 또는 02-768-8834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 라. 공시송달 대상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분 전에 서면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5, 9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등록취소 대상 외국인환자유치기관(35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 의료기관	M-2019-01-08-5615	청담 유마스튜디오(양*재)	강남구 삼성로 772, 7층(청담동, 로데오프라자)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527	㈜ 엠제이메디코리아(박*연)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0, 6층 엘에스 636호(서초동, 우영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20-01-02-3942	스타트레블(김**아나)	중구 마른내로 155 (광희동1가, 광희동금호트윈오피스텔) 902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62	주식회사 제이앤드(갈*진)	강남구 도산대로 157, 8층(신사동, 신웅타워2)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601	아이피에스 코리아(IPS Korea)(김*석)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B1층 109-118호(서초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20-01-01-4014	(주)코레인터내셔널컴패니 (이*승)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문정엑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비동 610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510	(주)심양신세계여행사(QUAN **FU)	구로구 공원로 3, 1104호(구로동, 선경오피스텔)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655	주식회사 만통여행사(LI *E)	영등포구 대림로 182, 2층 201호(대림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55	㈜블랙호스국제여행사(백*용)	용산구 원효로 268, 1동 901호(원효로1가, 디아프센트럴)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716	텐오(이*정)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10층(역삼동, 녹명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810	씨앤티 메디컬투어(C&T Medical Tour)(QUAN **GYUE)	강남구 테헤란로 129, 7층(역삼동, 강남N타워)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610	다나유통(임*환)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055호(서교동, 정원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835	지니지니(유*진)	강서구 양천로67길 54, 201동 1308호(염창동, 염창2차우성아파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860	차밍에이전시코리아(이*섭 외 1명)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28호(논현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823	주식회사 제이알아비트리(강*수)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840	섬바이오텍(양*심)	강남구 논현로 175길 60(신사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6-01-01-2401	(주) 기흥국제여행사(최*남)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고려대연각타워) 1305-1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6-01-01-2707	로아퍼시픽 ㈜(박*경)	송파구 석촌호수로 234, 2층 202호(석촌동, 라플라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412	주식회사 씨아이지뷰티(양*균)	강남구 학동로 315, 3층(논현동, 소망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493	주식회사 에이엠씨마일리지트래블(강*길)	강남구 언주로134길 11-1, 3층 2호(논현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531	주식회사 케이메디투어(조*균)	강남구 선릉로90길 14, 6층(대치동, 프레티늄 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업자	A-2018-01-01-3586	㈜에이비씨솔루션(이*형)	강남구강남대로 636, 6층(신사동, 두원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1-3587	주식회사 루이신(JIN **GYU)	중구 퇴계로 97, 13층 1303호(충무로1가, 고려대연각타워)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2-3559	한중무역(김*건)	금천구 시흥대로 97, 24동 3층 308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8-01-02-3576	가빈(최*희)	강남구 선릉로86길 31, 1523호(대치동, 롯데골드로즈2)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617	라이프케어지씨 주식회사(윤*용)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 26층 12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695	상천국제 주식회사(JIN *LAN)	영등포구 대림로 182, 402호(대림동, 남강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07	㈜세계의료마음그룹(손*식)	영등포구 문래로 164, 비동 2층 이 14호(문래동3가, 영등포 SK 리더스뷰)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36	㈜티앤에스투어(T&S TOUR Co., Ltd.)(인*수)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30, 5층 503호(서교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82	주식회사 팬월드드림(이*재)	서대문구 총정로 53(총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1802호, 1803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92	주식회사 청담여신(HUANG **TING)	송파구 법원로4길 10, 2층 201호(문정동, 힐스테이트예코문정)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819	주식회사 티엔엘에프앤비피아우타이(TNL FNB TEOW THAI) (HAMBANANADA **CHINRATANA)	강남구 가로수길 14-4, 지하1층(신사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845	㈜ 신우피엠씨(신*민)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8층(대치동, H타워)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886	신원국제투어 주식회사(주*환)	서대문구 연희로 263, 2층(홍은동, 봉산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926	주식회사 바로여행사(김*환)	종로구 종로66길 20 (송인동, 계명빌딩) 408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통지, 처분통지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주소(e-mail)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 - 2430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송광용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 **1호(신읍동)	일시 : 2021-07-07 16:05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상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길 *7 **2동 **4호 (방화동, *곡** 2차아파트)	일시 : 2021-07-14 06:48 장소 : 서울시 남부순환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유건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6번길 *5 *0*호 (부평동)	일시 : 2021-07-16 03:49 장소 : 서울시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이은열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9번길 *7 **4호 (관고동, *** 하우스)	일시 : 2021-07-26 10:50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높이 폭 0.1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영일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8 **2호 (천곡동, **성빌딩)	일시 : 2021-07-31 15:32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1.10.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2, 팩스번호: 02-2040-0305

2021 - 2434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원*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64, 106동 1101호 (무실동, 요진보네르카운티)	일시: 2021-04-20 07:15 위반장소: 고려대로(원주~보문동), 고대앞 내용: 강원81바2203 (카고3축, 폭초과 (실측값:2.64m, 초과 값:0.14m), 적재물:토관)	처분일: 2021. 05. 24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1.07.31. 독촉일: 2021. 07. 09.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10. 31.
 -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24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주식회사 디피엠플러스 (2021-1)	윤도선	대표자의 결격사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244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1.7.1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1.7.19.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1.7.19.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여성권익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여성권익담당관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여성권익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1.7.19.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권익보호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권익보호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권익보호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1 - 2457

2021 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21. 9. 15. (수) ~ 9. 16. (목)
-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다. 심의대상 : 일반안전 17건 20작품, 보고안전 1건 1작품
- 라. 심의결과 : 승인 9작품, 조건부승인 3작품, 부결 8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서초구 서초동 1445-1번지 외 1필지	조각	The Small World		○	
2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럭	기타	에테르(Aether)_빛과 시를 담다	○ (조건부)		주거공간임을 고려하여 빛 공해에 대한 대안마련
3	강동구 천호동 437-5번지 일원	조각	내면의 소리		○	
4	서초구 잠원동 52-2외 1필지(52-2,52-3)	조각	novel transition (새로운 변화)	○		
5	강남구 자곡동 653,654번지	조각	Meditation	○		
6	서초구 서초동 1595-1 외 4필지	조각	사계(四季) -선물(膳物)		○	

2021 12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7	동대문구 전농동 620-15일원	조각	여행		○	
8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	조각	인생(Life)	○		
9	은평구 수색동 189외 162필지	조각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예요)		○	
10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조각	생명의 영속	○		
11-1	광진구 화양동 116-1번지 외 15필지	조각	향기로움	○ (조건부)		작품의 높이 등을 고려해 접합부위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11-2		회화	마주보기-합	○		

2021 12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2	강서구 마곡 C2-3BL 업무용지	회화	기억의 잔상-일상의 이야깃거리		○	
13-1	마포구 마포동 309-1 외 5필지	조각	세기의 선물	○ (조건부)		작품의 규모를 고려해 시공시 안전성 확보
13-2		조각	창공해로	○		
14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조각	내면속의 풍경 (도시풍경)		○	
15	강남구 역삼동 635-2,3,4	기타	87마리의 새	○		
16-1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조각	중첩된 리듬		○	

2021 12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6-2		회화	The Silver Wave-blue echo II	○		
17	성북구 보문로 28길 18 (보문동 1가)	조각	수호천사 토마 (toma)	○		

2021 12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이행여부 확인결과	비 고
1	강서구 마곡 C2-3BL 업무용지	조각	문명의 꽃 - Grand Tool (2021년 10차 8-1번 작품)	조건부 최종승인	

2021 - 2458

() ()

1. 건설부 고시 제1986-267호(1986.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77호(2020.7.2.)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 일대

나. 공원면적 : 413,352㎡

다. 조성계획 변경(안)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416.17㎡) 등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바. 열람장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2181-1195)

사.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 일대)

구분	변경				변경				변경				비고 (시설면적 증감)
	변		전		변		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13,352.00	162,252.53	19	14,649.67	29,730.98	87	413,352.00	160,587.36	19	14,661.80	30,705.59	89	합1,665.17㎡
기 반 시 설	소계	57,647.94					57,647.94	57,647.94					
	도로	44,651.44					44,651.44	44,651.44					
	목교												
	광장	12,996.50	12,996.50					12,996.50	12,996.50				
조경시설	45,725.50	45,725.50				15	41,504.50	41,504.50				15	합 4,221.00㎡
휴양시설	2,763.55	2,387.79	2	938.97	3,264.35	14	2,763.55	2,387.79	2	938.97	3,264.35	14	
유희시설	2,402.27	2,402.27				9	2,402.27	2,402.27				9	
운동시설	27,671.83	27,671.83				24	27,671.83	27,671.83				24	
교양시설	18,971.40	17,139.78	7	10,235.75	21,538.60	12	21,527.23	19,695.61	7	10,247.88	22,513.21	15	증 2,555.83㎡
편익시설	5,037.53	5,037.53	5	535.06	535.06	11	5,037.53	5,037.53	5	535.06	535.06	11	
공원관리시설	4,405.58	2,939.89	5	2,939.89	4,392.97	2	4,405.58	2,939.89	5	2,939.89	4,392.97	2	
그밖의 시설	1,300.00	1,300.00					1,300.00	1,300.00					
녹지 및 기타	녹지	246,165.19					247,830.36						증 1,665.17㎡
	반려견놀이터												
	기타	1,261.21					1,261.21						
시설율 (법정 40%)	(162,252.53 / 413,352.00) × 100 = 39.25%						(160,587.36 / 413,352.00) × 100 = 38.85%						감 0.40%
건폐율 (법정 10%)	(14,649.67 / 413,352.00) × 100 = 3.54%						(14,661.80 / 413,352.00) × 100 = 3.55%						증 0.01%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13,352.00	162,252.53			14,649.67	29,730.98	87				413,352.00	162,252.53			14,649.67	29,730.98	87				
	소 계		57,647.94	57,647.94								57,647.94	57,647.94										
	도 로			44,651.44	44,651.44							전지역	44,651.44	44,651.44									
	목 교	파								파													
	보라매광장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428.00	5,428.00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428.00	5,428.00									
기 반 시 설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568.50	7,568.50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568.50	7,568.50										
	나-1	▪	(992)	(992)						나-1	▪	(992)	(992)										
	나-2	▪	(1,653)	(1653)						나-2	▪	(1,653)	(1653)										
	나-3	▪	(677)	(677)						나-3	▪	(677)	(677)										
	나-4	▪	(197)	(197)						나-4	▪	(197)	(197)										
	나-5	▪	(556)	(556)						나-5	▪	(556)	(556)										
광 장	나-6	▪	(418)	(418)						나-6	▪	(418)	(41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7	▪	(392)	(392)						나-7	▪	(392)	(392)								
	나-8	▪	(796)	(796)						나-8	▪	(796)	(796)								
	나-9	▪	(551)	(551)						나-9	▪	(551)	(551)								
	나-1 0	▪	(291)	(291)						나-1 0	▪	(291)	(291)								
	나-1 1	▪	(937)	(937)						나-1 1	▪	(937)	(937)								
	나-1 2		(108.50)	(108.50)						나-1 2		(108.50)	(108.50)								
소 계			45,725.50	45,725.50				15				41,504.50	41,504.50					15			
보림 잔디광장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384.00	23,384.00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384.00	23,384.00								
연못및 음악분수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286.00	11,286.00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286.00	11,286.00								
수경시설	사		2,541.00	2,541.00						사		2,541.00	2,541.00								
(계류· 바닥분수)	사-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38)	(1,538)						사-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38)	(1,538)								

구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연못·계류)	사-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08)						사-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08)	(508)						
	(빗물응용이)	사-3	산 144-8	(495)						사-3	산 144-8	(495)	(495)						
	에어파크	마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221.00						-	-	-	-	-					폐지 (교양시설 전환)
	벽천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19.00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19.00	819.00	819.00					
		바-1		(374)	(374)					바-1		(374)	(374)	(374)					
무궁화원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20.00	1,020.00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20.00	1,020.00						
정미원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00.00	400.00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00.00	400.00	400.00						
그늘시렁	①	전지역	(78.5)	(78.5)					3 ①	전지역	(78.5)	(78.5)	(78.5)					3	
	①-1	■	(37.5)	(37.5)	목재				(1) ①-1	■	(37.5)	(37.5)	(37.5)	목재				(1)	
	①-2	■	(25)	(25)	목재				(1) ①-2	■	(25)	(25)	(25)	목재				(1)	

구 분	경 변						경 변						비 고 (시설편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공작물 (기)
조 경 시 설	①-3	·	(16)	(16)	목재		①-3	·	(16)	(16)	목재		(1)
	②	전지역	(35.5)	(35.5)	목재		②	전지역	(35.5)	(35.5)	목재		2
	②-1	·	(14.8)	(14.8)	목재		②-1	·	(14.8)	(14.8)	목재		(1)
	②-2	·	(20.7)	(20.7)			②-2	·	(20.7)	(20.7)			(1)
	④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054.50	2,054.50			④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054.50	2,054.50			5
데크	④-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9)	(219)			④-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9)	(219)			(1)
	④-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24)	(1,524)			④-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24)	(1,524)			(1)
	④-3	산 143	(85.5)	(85.5)			④-3	산 143	(85.5)	(85.5)			(1)
	④-4	산 143	(126)	(126)			④-4	산 143	(126)	(126)			(1)
	④-5	산 144-8	(100)	(100)			④-5	산 144-8	(100)	(100)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육각정자	㉔	산 143	(15)	(15)					1	㉔	산 143	(15)	(15)					1		
	㉕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	(23)					1	㉕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	(23)					1		
	㉖	전지역	(60.75)	(60.75)					3	㉖	전지역	(60.75)	(60.75)					3		
사각파교라	㉗1	▪	(20.25)	(20.25)					(1)	㉗1	▪	(20.25)	(20.25)					(1)		
	㉗2	▪	(40.5)	(40.5)					(2)	㉗2	▪	(40.5)	(40.5)					(2)		
소 계			2,763.55	2,387.79				938.97	3,264.35	14			2,763.55	2,387.79			938.97	3,264.35	14	
공원휴게소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1.70	115.73	철근 콘크리트	지하1 지상1	115.73	212.16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1.70	115.73	철근 콘크리트	지하1 지상1	115.73	212.16			
휴 게 소	카		1,294.00	1,294.00						카		1,294.00	1,294.00							
	카-1	▪	(133)	(133)						카-1	▪	(133)	(133)							
	카-2	▪	(285)	(285)						카-2	▪	(285)	(285)							
	카-4	▪	(232)	(232)						카-4	▪	(232)	(23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카-5	"	(126)	(126)						카-5	"	(126)	(126)						
	카-6	산 143	(400)	(400)						카-6	산 143	(400)	(400)						
	카-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3)	(83)						카-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3)	(83)						
	카-8	"	(35)	(35)						카-8	"	(35)	(35)						
임간휴게소	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6.00	56.00						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6.00	56.00						
	타'-2	"	(56)	(56)						타'-2	"	(56)	(56)						
장 의 자	③	전지역							1	③	전지역								1
로포명석	⑥	시설부지내							1	⑥	시설부지내								1
평상	⑩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	(9)					1	⑩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	(9)						1
평의자	⑪	전지역							11	⑪	전지역								11
남부노인 복지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61.85	922.0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61.85	922.0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823.24	3,052.19		

구 분	전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시설편적 증감)	
소 계			2,402.27	2,402.27						9		
	유아 놀이공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02.27	2,402.27						9		
소 계			27,671.83	27,671.83						24		
테니스장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11.50	3,811.50						7		
X-Game World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0.00	880.00						1		
체력단련장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227.23	2,227.23								
	라'-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27.23)	(727.23)								
	라'-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630)	(630)								
	라'-3	산 143	(89)	(89)								
	라'-4	산 143	(151)	(15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설	라'-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4)	(344)					라'-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4)					
	라'-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5)	(88.5)					라'-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5)					
	라'-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3)	(173)					라'-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3)					
	라'-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5)	(24.5)					라'-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5)					
	게이트볼장	마'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90.00	1,190.00				마'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90.00	1,190.00				
축구장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350.00	7,350.00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350.00	7,350.00					
다목적운동장	사'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513.50	5,513.50				사'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513.50	5,513.50					
길거리농구장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28.00	928.00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28.00	928.00					
다이너스팩	자'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00.00	800.00				자'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00.00	800.00					

구분	변			경			전			변			경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맨발공원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22.00	1,322.00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22.00	1,322.00						
	임벽등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60.00	360.00						카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60.00	360.00						
	인라인 스케이트장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516.60	2,516.60					1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516.60	2,516.60					1	
	배드민턴장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73.00	773.00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73.00	773.00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15	㉔	전지역								15
교양시설	소계		18,971.40	17,139.78			10,235.75	21,538.60	12			21,527.23	19,695.61			10,247.88	22,513.21	15	
	강당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979.68	657.85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657.85	657.85		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979.68	657.85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657.85	657.85		
	청소보서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89.00	3,889.00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090.00	5,260.00		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89.00	3,889.00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090.00	5,260.00		
	전자도서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44.00	1,744.00	라멘 조슬라브	지상 2층	819.42	2,011.02		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44.00	1,744.00	라멘 조슬라브	지상 2층	819.42	2,011.0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전시용비행기	①	8개소	(1,553)	(1,553)					8	①	9개소	1,830	1,830						9	기존시설 현황변영
	①-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73)	(573)					(1)	①-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73)	(573)						(1)	
	①-2	■	(106)	(106)					(1)	①-2	■	(106)	(106)						(1)	
	①-3	■	(79)	(79)					(1)	①-3	■	(79)	(79)						(1)	
	①-4	■	(95)	(95)					(1)	①-4	■	(95)	(95)						(1)	
	①-5	■	(272)	(272)					(1)	①-5	■	(272)	(272)						(1)	
	①-6	■	(106)	(106)					(1)	①-6	■	(106)	(106)						(1)	
	①-7	■	(145)	(145)					(1)	①-7	■	(145)	(145)						(1)	
	①-8	■	(177)	(177)					(1)	①-8	■	(177)	(177)						(1)	
	①-9									①-9	■	(277)	(277)						(1)	기존시설 현황변영

구분	변경			경전			변경			정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시민안전 체험관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86.00	4,586.00		지하 1층, 지상 3층	2,171.00	8,020.77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86.00	4,586.00		지하 1층, 지상 3층	2,171.00	8,020.77		
	9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3.60	13.00			1	9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3.60	13.00					1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3.00	22.00			1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3.00	22.00					1		
	예술조형물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48.86	36.19			1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48.86	36.19					1	
산재화생자 조형물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12.00	36.48		화강석·브론즈 스테인레스 스틸		1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12.00	36.48		화강석·브론즈 스테인레스 스틸			1	
	1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2.96	392.96		지상 2층	392.96	413.71	1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2.96	392.96		지상 2층	392.96	413.71		
지적장애인 복지관	3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82.56	782.56		지하 1층, 지상 2층	773.76	1,441.56										명칭변경 부지면적 증 725.83㎡ 시설면적 증 725.83㎡ 바닥면적 증12.13㎡ 연면적 증974.61㎡
바람장애인 복지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785.89	2,416.17	2	

구 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남부장애인 복지관	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4.74	2,344.74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2,330.76	3,733.69		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4.74	2,344.74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2,330.76	3,733.69		
	아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635.00	2,635.00						아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635.00	2,635.00						
	소 계		5,037.53	5,037.53			535.06	535.06	11			5,037.53	5,037.53			535.06	535.06	11	
	9	전지역	863.93	863.93			429.06	429.06		9	전지역	863.93	863.93			429.06	429.06		
화정실	9-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1.53)	(131.53)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91.96)	(91.96)		9-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1.53)	(131.53)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91.96)	(91.96)		
	9-2	"	(91.96)	(91.96)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131.53)	(131.53)		9-2	"	(91.96)	(91.96)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131.53)	(131.53)		
	9-3	"	(84.91)	(84.91)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84.91)	(84.91)		9-3	"	(84.91)	(84.91)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84.91)	(84.91)		
	9-4	"	(28.98)	(28.98)	연와 조	지상 1층	(28.98)	(28.98)		9-4	"	(28.98)	(28.98)	연와 조	지상 1층	(28.98)	(28.98)		
	9-5	"	(420.55)	(420.55)	철근 콘크리트 리프트 조	지상 1층	(91.68)	(91.68)		9-5	"	(420.55)	(420.55)	철근 콘크리트 리프트 조	지상 1층	(91.68)	(91.68)		
	9-6	"	(106)	(106)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106)	(106)		9-6	"	(106)	(106)	시멘트 트럭 물조	지상 1층	(106)	(106)		
읍수장	가*	"	397.00	397.00					1	가*	"	397.00	397.00					1	
읍수대	@	여의대방로	(36)	(36)					9	@	여의대방로	(36)	(36)					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정원		20길 33일대								20길 33일대								
	㉔-1	■	(4)	(4)				(1)	㉔-1	■	(4)	(4)						(1)
	㉔-2	■	(4)	(4)				(1)	㉔-2	■	(4)	(4)						(1)
	㉔-3	■	(4)	(4)				(1)	㉔-3	■	(4)	(4)						(1)
	㉔-4	■	(4)	(4)				(1)	㉔-4	■	(4)	(4)						(1)
	㉔-5	■	(4)	(4)				(1)	㉔-5	■	(4)	(4)						(1)
	㉔-6	■	(4)	(4)				(1)	㉔-6	■	(4)	(4)						(1)
	㉔-7	■	(4)	(4)				(1)	㉔-7	■	(4)	(4)						(1)
	㉔-8	■	(4)	(4)				(1)	㉔-8	■	(4)	(4)						(1)
	㉔-9	■	(4)	(4)				(1)	㉔-9	■	(4)	(4)						(1)
약수터	타	산 143	187.00	187.00					타	산 143	187.00	187.00						
	나 ^ㅁ	전지역	3,589.60	3,589.60					나 ^ㅁ	전지역	3,589.60	3,589.60						
주차장	나 ^ㅁ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9.5)	(2349.5)					나 ^ㅁ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9.5)	(2349.5)						
	나 ^ㅁ -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69.04)	(769.04)					나 ^ㅁ -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69.04)	(769.04)						
	나 ^ㅁ -3	■	(115.64)	(115.64)					나 ^ㅁ -3	■	(115.64)	(115.64)						
	나 ^ㅁ -4	■	(193.1)	(193.1)					나 ^ㅁ -4	■	(193.1)	(193.1)						
	나 ^ㅁ -5	■	(162.32)	(162.32)					나 ^ㅁ -5	■	(162.32)	(162.32)						
시계탑	㉔		(1.44)	(1.44)				1	㉔	(1.44)	(1.4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공공기관	소계		4,405.58	2,939.89			2,939.89	4,392.97	2		4,405.58	2,939.89			2,939.89	4,392.97	2	
	변전실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3.3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3.3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관리사무소	1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07.00	927.81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927.81	2,270.37	1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07.00	927.81	철근 콘크리트	927.81	2,270.37		
	주민회관	1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64.00	1,487.60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1,487.60	1,487.60	1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64.00	1,487.60	지상 1층	1,487.60	1,487.60		
시설	공원등	㉑	전지역						1	㉑	전지역							1
	쓰레기통	㉒	전지역						1	㉒	전지역							1
	현장근로자 대기실 창고	1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1.28	391.28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91.28	468.50	1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1.28	391.28	지상 2층	391.28	468.50		
그밖의시설	소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반려견놀이터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00.00	1,300.00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00.00	1,300.00					
	소계		247,426.40								247,426.40							
녹지		전지역	246,165.19								전지역	248,107.36						증 1,942.17㎡

공 원 관 리 시 설

그 밖 의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북지 및 기타	철도시설 돌출부	1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261.21	(1,261.21)					1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261.21	(1,261.21)						
	105정거장 외부출입구1	18-1	■	(61.90)	(61.90)					18-1	■	(61.90)	(61.90)						
	105정거장 외부출입구2	18-2	■	(61.90)	(61.90)					18-2	■	(61.90)	(61.90)						
	105정거장 외부DN1	18-3	■	(28.50)	(28.50)					18-3	■	(28.50)	(28.50)						
	105정거장 외부DN2	18-4	■	(28.18)	(28.18)					18-4	■	(28.18)	(28.18)						
북지 및 기타	105정거장 환기구1	18-5	■	(8.16)	(8.16)					18-5	■	(8.16)	(8.16)						
	105정거장 환기구2	18-6	■	(16.80)	(16.80)					18-6	■	(16.80)	(16.80)						
	105정거장 환기구3	18-7	■	(13.44)	(13.44)					18-7	■	(13.44)	(13.44)						
북지 및 기타	105정거장 환기구4	18-8	■	(9.36)	(9.36)					18-8	■	(9.36)	(9.36)						
	차량기지 환기구1	18-9	■	(16.20)	(16.20)					18-9	■	(16.20)	(16.20)						
	차량기지 환기구2,3	18-1 0	■	(14.44)	(14.44)					18-1 0	■	(14.44)	(14.44)						
	차량기지 비상출입구1	18-1 1	■	(32.62)	(32.62)					18-1 1	■	(32.62)	(32.6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량기지 검수동출입구	18-1 2	"	(213.71)	(213.71)						18-1 2	"	(213.71)	(213.71)						
	18-1 3	"	(34.56)	(34.56)						18-1 3	"	(34.56)	(34.56)						
	18-1 4	"	(18.24)	(18.24)						18-1 4	"	(18.24)	(18.24)						
	18-1 5	"	(8.74)	(8.74)						18-1 5	"	(8.74)	(8.74)						
	18-1 6	"	(16.20)	(16.20)						18-1 6	"	(16.20)	(16.20)						
	18-1 7	"	(23.25)	(23.25)						18-1 7	"	(23.25)	(23.25)						
	18-1 8	"	(655.00)	(655.00)						18-1 8	"	(655.00)	(655.00)						
	19	"	(12,073)	(12,073)						19	"	(12,073)	(12,073)						
철도시설 차량기지	20	"	(8,458.0)	(8,458.0)						20	"	(8,458.0)	(8,458.0)						
	21	"	(2,256.9)	(2,256.9)						21	"	(2,256.9)	(2,256.9)						
철도시설 105정거장	22	"	(1,685.9)	(1,685.9)						22	"	(1,685.9)	(1,685.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779.10	44,651.44				
당초	중로	소 계			368	5,424				
당초		3	1	13	204	2,652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광장 나-1	
당초		3	2	13	32	416	진입로	광장 나-1	광장 나-2	
당초		2	3	17	30	510	진입로	광장 나-5	소로 3-6	
당초		1	1	23	47	1,081	진입로	광장 나-9	광장 나-6	
당초		2	4	15	14	210	진입로	바닥분수	보라매광장	
당초		2	5	15	21	315	진입로	보라매광장	소로3-24	
당초		3	3	12	20	240	진입로	소3-3	관리사무소	
당초		소 계			4,241.9	26,927				
당초	소로	2	1	8	41	328	보차도	광장 나-1	광장 나-4	
당초		3	29	6	179	1,074	보차도	부지경계	부지북측	
당초		2	3	10	444	4,440	보도	부지경계	광장 나-8	
당초		2	4	10	25	250	보도	산책로21	소로 2-3	
당초		3	1	6	56	336	보차도	전자도서관	광장 나- 4	
당초		3	2	4	11	44	보도	광장나-4	관리사무소	
당초		3	3	6	320	1,920	보도	광장 나- 2	광장 나-5	
당초		3	4	5	23	115	보차도	소로 3-5	청소년회관	
당초		3	5	7	67	469	보차도	광장 나-6	광장 나-5	
당초		3	6	8	60.5	484	보차도	중로 2-3	주차장-2	
당초		3	7	7	47	329	보도	구민회관	소로 3-2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8	4	66	264	산책로	구민회관	소로 3-29	
당초		3	9	5	125.4	627	보도	광장 나- 3	바닥분수	
당초		3	10	5	342	1,710	보도	바닥분수	소로 2-3	
당초		3	11	8	171	1,368	산책로	광장 나-6	소로 2-3	
당초		3	12	6	90	540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	13	6	467	2,802	보도	공원 동남측경계	장미원	
당초		3	14	6	21	126	보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3	
당초		3	15	5	117	585	보차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6	
당초		3	16	5	156	780	보차도	장미원	광장 나-7	
당초		3	17	6	250	1,500	보도	광장 나-7	장미원	
당초		3	18	8	23.5	188	보차도	소로3-31	소로 3-22	
당초		3	19	6	16	96	보도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	20	8	132	1,056	보차도	소로 3-13	광장 나-8	
당초		3	22	8	152	1,216	보도	광장 나-8	광장 나-3	
당초		1	1	11.5	36	414	시설간 연결로	광장 나-2	광장 나-3	
당초		3	24	5	503	2,515	보차도	광장 나-8	소로 3-11	
당초		3	25	4	25	100	보도	산39	중3-3	
당초		3	26	5	83	415	보도	소로 3-3	소로 3-27	
당초		3	27	5	36	180	보도	에어파크	바닥분수	
당초		3	28	5	30	150	보도	바닥분수	청소년회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0	4	10	40	보도	소3-3	중3-3	
당초		3	31	4	116.5	466	보차도	산책로35	소로3-18	
변경	산책로	소 계			6,169.20	12,300.44				
당초			1	2.4	38	91.2	산책로	소로 3-3	에어파크	
당초			2	4.4	13	57.2	산책로	산책로 109		
당초			3	2.5	27	67.5	산책로	테니스장 바 ^a	소로 2-1	
당초			4	3	8	24	산책로	소로 1-1	강당	
당초			5	5	19	95	산책로	광장 나-3	강당	
당초			6	1.5	22	33	산책로	소로 3-9	강당	
당초			7	2	55.5	111	산책로	소로 2-3	녹지	
당초			8	2	70.5	141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당초			9	1.8	27	48.6	산책로	광장 나-11	광장 나-11	
당초			10	1.5	423	634.5	산책로	전자도서관 7		
당초			11	1.5	272.5	408.75	산책로	산책로 108	산책로 108	
당초			12	1.5	168	252	산책로	광장 나-3	중로 2-5	
당초			13	1.5	163	244.5	산책로	중로 2-5	소로 3-11	
당초			14	1.5	22	33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15	2.5	22	5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2	
당초			16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7	
당초			17	4	129	516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23	
당초			18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109	구민회관 14	
당초			19	1.5	10.5	15.75	산책로	산책로 108	목교 다 ^a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0	1.5	360	540	산책로	목교다"	주차장 나-4	
당초			21	4	120	480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6	
당초			22	1	12.5	12.5	산책로	휴게소카-7	녹지	
당초			23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21	
당초			24	1	8.5	8.5	산책로	화장실9-4	산책로 3	
당초			29	2	54	108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0	3	183	549	산책로	소로 3-20	산책로 29	
당초			31	3	61	183	산책로	소로 3-13	산책로 30	
당초			32	3	9	27	산책로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3	2	12	24	산책로	소로 3-20	소로 3-17	
당초			34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17	산책로 54	
당초			35	2.5	20	50	산책로	소로 3-18	신대방 460-29	
당초			36	2	29	58	산책로	산책로 35	소로 3-17	
당초			39	1.5	57	85.5	산책로	무궁화원	소로3-25	
당초			40	1.5	46	69	산책로	소로3-25	관리사무소	
당초			41	2.5	39	97.5	산책로	강당	바닥분수	
당초			42	1.5	17	25.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43	1.5	23	34.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3	
당초			44	2	188	376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45	2	9	18	산책로	공원동쪽 경계	산책로 44	
당초			46	2	31	62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1	
당초			47	2	30	60	산책로	연못	소로 3-11	
당초			48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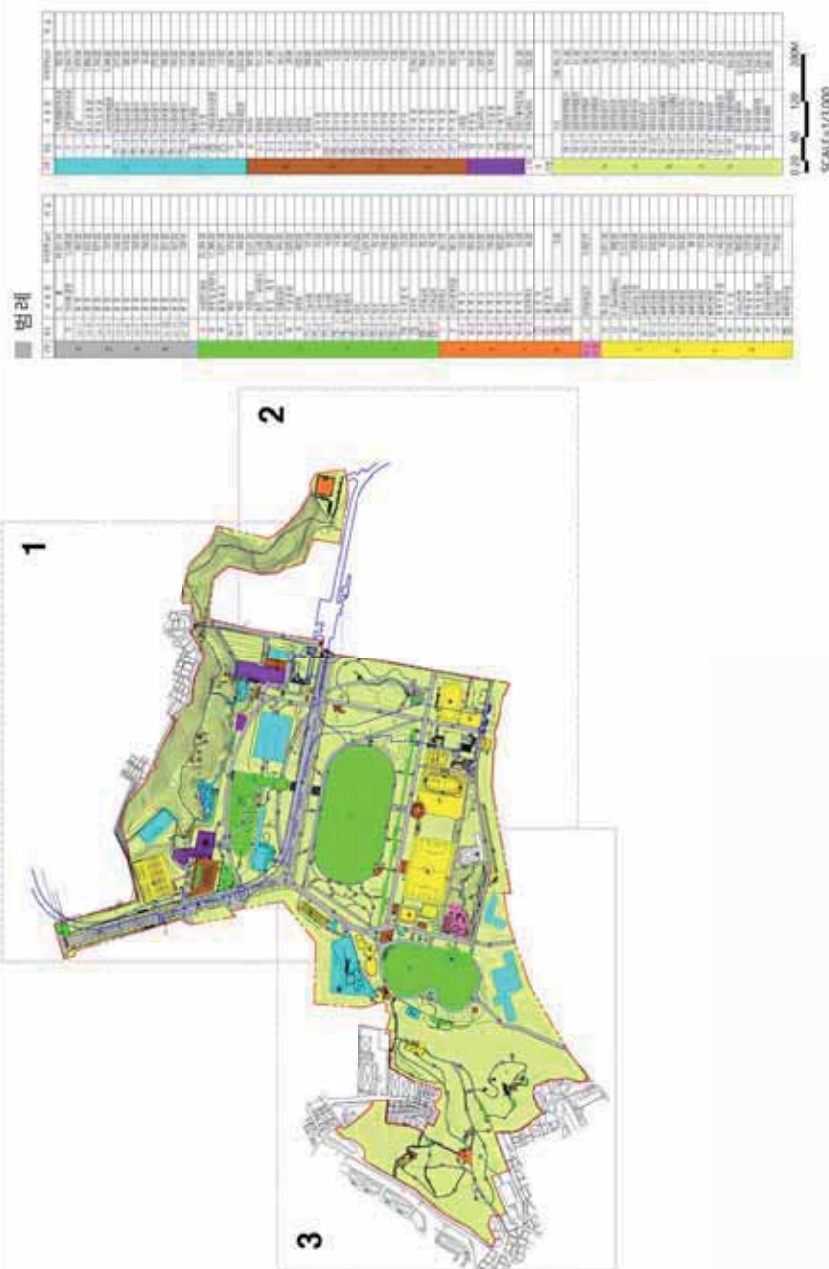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9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0	1.5	7	10.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1	
당초			51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3	
당초			52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3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4	1.5	25	37.5	산책로	산책로 34	산책로 55	
당초			55	5	2.5	12.5	산책로	산책로 54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6	1.5	24.5	36.75	산책로	산책로 55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7	1.5	62.2	93.3	산책로	산책로 54	산책로 61	
당초			58	1.5	195.6	293.4	산책로	산책로 57	휴게공간5	
당초			59	1.5	92	138	산책로	산책로 58	산책로 58	
당초			60	1.5	60.6	90.9	산책로	산책로 58	체력단련장4	
당초			61	2.5	114.24	285.6	산책로	산책로 57	데크 4	
당초			62	3	164.6	493.8	산책로	산책로 61	휴게공간 5	
당초			63	2	15	30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1	
당초			64	2	65	130	산책로	휴게공간 5	산책로 76	
당초			65	2	87	174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8	
당초			66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3	
당초			67	2	8	16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66	
당초			68	1.5	101.7	152.55	산책로	산책로 65	신동아 아파트	
당초			69	3	22.6	67.8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0	
당초			70	2	50	100	산책로	산책로 66	약수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71	2	46	92	산책로	산책로 70	우성1차 아파트	
당초			72	1	66	66	산책로	체력단련장 4	산책로 74	
당초			73	1.5	47.8	71.7	산책로	산책로 66	산책로 74	
당초			74	1	87	87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72	
당초			75	1.5	71.3	106.95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64	
당초			76	3	110	330	산책로	휴게공간 5	부진입로	
당초			77	1.5	58	87	산책로	휴게공간 5	대천교회	
당초			78	1.5	57.2	85.8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76	
당초			79	1.5	46.8	70.2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6	
당초			80	1.5	36	54	산책로	데크 3	산책로 86	
당초			81	1	357	357	산책로	산책로 61	데크 3	
당초			82	1	34	34	산책로	산책로 81	산책로 81	
당초			83	1	10	10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4	1	7.8	7.8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5	1	3.1	3.1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6	1	4.4	4.4	산책로	산책로 62	체력단련장3	
당초			89	2	28	56	산책로	공원휴게소	축구장	
당초			90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4	
당초			91	1.5	120	180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16	
당초			92	1.5	13	19.5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3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4	1.5	8	12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95	1.5	4	6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6	1.5	34	51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97	
당초			97	3	13	39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8	
당초			98	1.5	27	40.5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99	
당초			99	1.5	24	36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16	
당초			100	1.5	15	22.5	산책로	산책로 97	데크 2	
당초			101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16	
당초			102	1.5	45.26	67.89	산책로	산책로 31	유아 놀이공간	
당초			103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02	소로 3-13	
당초			104	1.5	53	79.5	산책로	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105	3	31	93	산책로	소로3-3	관리사무소	
당초			106	2	11	22	산책로	산책로 102	소로3-13	
당초			107	2.5	22	55	산책로	산책로 102	소로3-13	
당초			108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109	4	32	128	산책로	소로3-3	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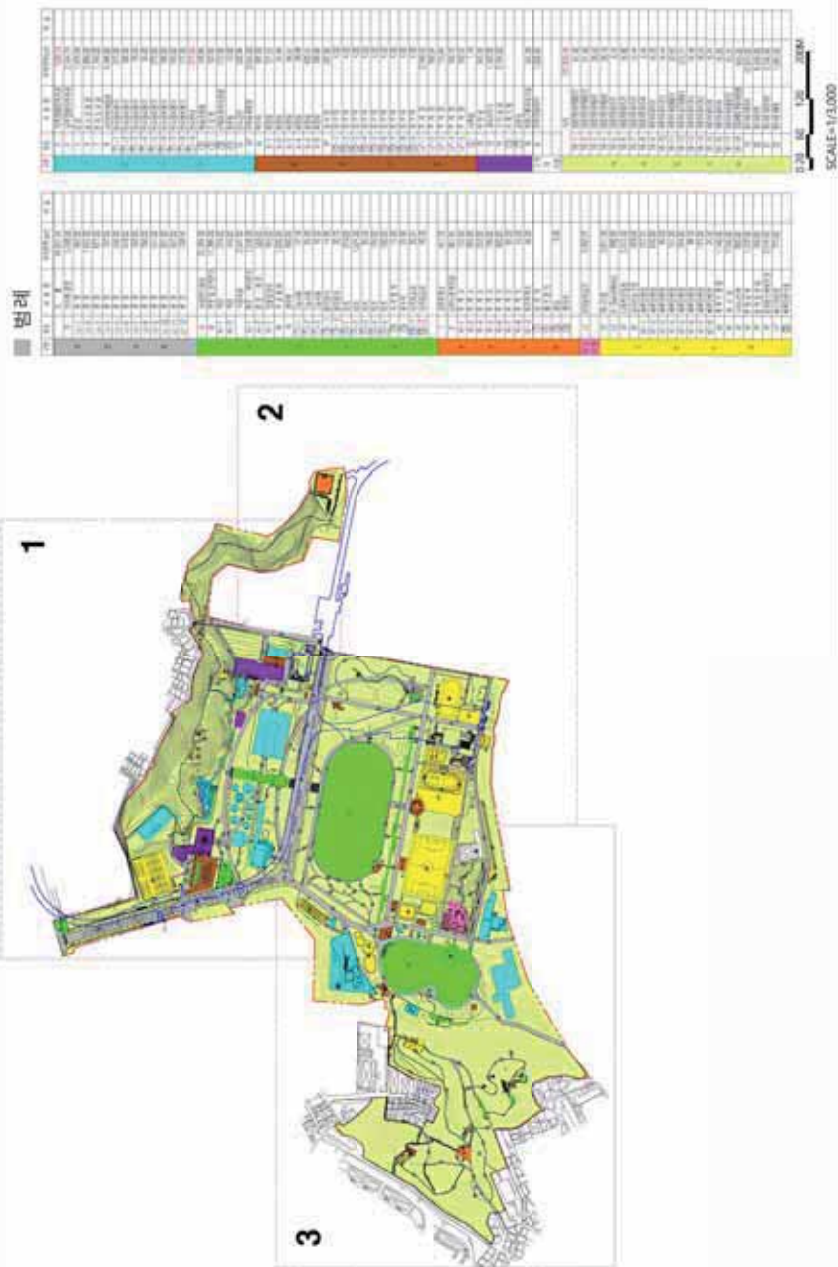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부분계획도1(변경전)

보라매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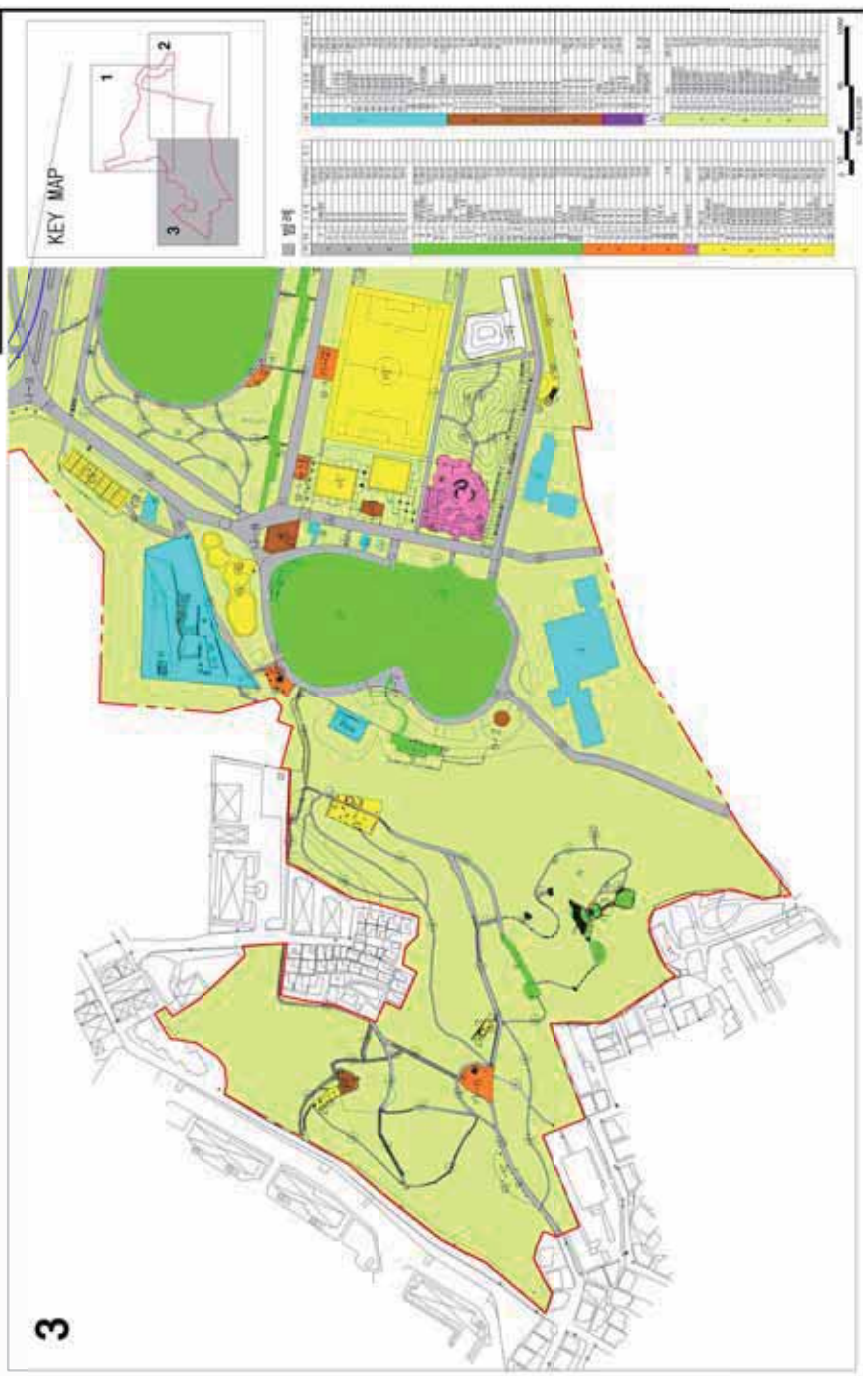
부분계획도1(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부분계획도3(변경전)

보라매근린공원



부분계획도3(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2021 - 203

() 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1-1101호(2021.08.12.)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의견청취 공고한 【성북동 113-111번지 한양도성 문화공원(3차)】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2241-26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시행 면적	사업 내용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사업	한양도성 문화공원(3차) 조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111	1㎡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다.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문화체육과(☎2241-2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72

()

1. 은평구고시 제2008-100호(2009.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은평구 고시 제2021-151호(2021. 8. 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불광중학교~폭포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 위치 : 은평구 불광동 180-12 ~ 진관동 산109-46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불광중학교~폭포동 도로개설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B=12m, L=412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조서 등 : 별첨

- 변경내용 : 편입토지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물건조서 내용 변경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본관 5층)(☎35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불광중학교 ~ 폭포동 도로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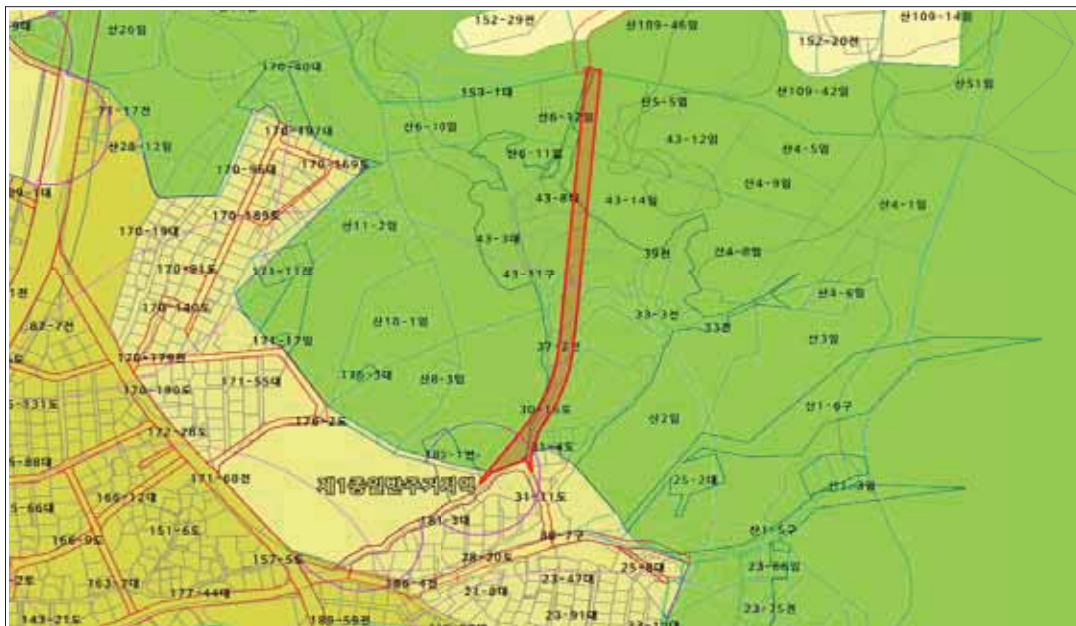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불광동	40-4	전	257	257	심○○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000-0(불광동)	1				
2	불광동	41-2	답	250	250	심○○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000-0(불광동)	1				
3	불광동	42-3	전	194	194	최○○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000	277/5 95				
						최○○	서울 은평구 연서로40길 0-0(불광동)	148/5 95				
						최○○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0-0(불광동)	85/ 595				
						최○○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000-000호(원동, 주공아파트)	85/ 595				
4	불광동	43-17	전	101	101	최○○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000	277/5 95				
						최○○	서울 은평구 연서로40길 0-0(불광동)	148/5 95				
						최○○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0-0(불광동)	85/ 595				
						최○○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000-000호(원동, 주공아파트)	85/ 595				
5	불광동	43-19	임야	629	629	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00(불광동)	1/4				
						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교재길 00	1/4				
						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0000동 000호(판교동,판교원마을)	1/4				
						오○○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000동 000호(정왕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1/4				
6	불광동	43-1	전	94	1	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00(불광동)	1/4				
						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교재길 00	1/4				
						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0000동 000호(판교동,판교원마을)	1/4				
						오○○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000동 000호(정왕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1/4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7	불광동	43-16	임야	3,369	1,000	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불광동)	1/4				
						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	1/4				
						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동 ○○○호(판교동, 판교원마을)	1/4				
						오○○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동 ○○○호(정왕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1/4				
8	불광동	30-2	구거	3,422	314	은평구						
9	불광동	30-3	도로	172	10	은평구						
10	불광동	30-5	도로	168	3	은평구						
11	불광동	30-15	도로	202	202	은평구						
12	불광동	32-2	답	194	194	은평구						
13	불광동	35-1	답	13	13	은평구						
14	불광동	35-2	답	222	222	은평구						
15	불광동	36-1	답	9	9	은평구						
16	불광동	36-2	답	217	217	은평구						
17	불광동	37-1	전	175	175	은평구						
18	불광동	40-1	전	581	581	은평구						
19	불광동	175-6	도로	958	6	서울시						
20	불광동	180-14	도로	105	24	서울시						
21	불광동	산6-1	임야	790	31	서울시						
22	불광동	산6-9	도로	373	105	국토교통 부						
23	불광동	산7-4	임야	527	527	국토교통 부						

○ 사업명 : 불광중학교 ~ 폭포동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불광동 40-4	수목 영농손실보 상		6 1	주 식	심OO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000-0(불광동)	1				
2	불광동 41-2	영농손실보 상		1	식	심OO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000-0(불광동)	1				
3	불광동 42-3	영농손실보 상		1	식	최OO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000	277/59 5				
						최OO	서울 은평구 연서로40길 0-0(불광동)	148/59 5				
						최OO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0-0(불광동)	85/ 595				
						최OO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000-000호(원동, 주공아파트)	85/ 595				
4	불광동 43-17	수목 영농손실보 상		4 1	주 식	최OO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000	277/59 5				
						최OO	서울 은평구 연서로40길 0-0(불광동)	148/59 5				
						최OO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0-0(불광동)	85/ 595				
						최OO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000-000호(원동, 주공아파트)	85/ 595				
5	불광동 43-19	수목 펜스	메쉬펜스 (H1.5m)	9 20	주 m	오OO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00(불광동)	1/4				
						오OO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고재길 00	1/4				
						오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0000동 000호(판교동, 판교원마을)	1/4				
						오OO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7-16, 000동 000호(경왕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1/4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2021 - 160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대현동 110-4 외 3필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2021년 제3차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수용” 으로 의결되었기에 보차혼용통로 변경(폐지)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변경취지

- 서대문구 대현동 110-4번지 외 3필지의 자율적 공동개발로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차혼용통로 변경(폐지)]을 결정(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변경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변경)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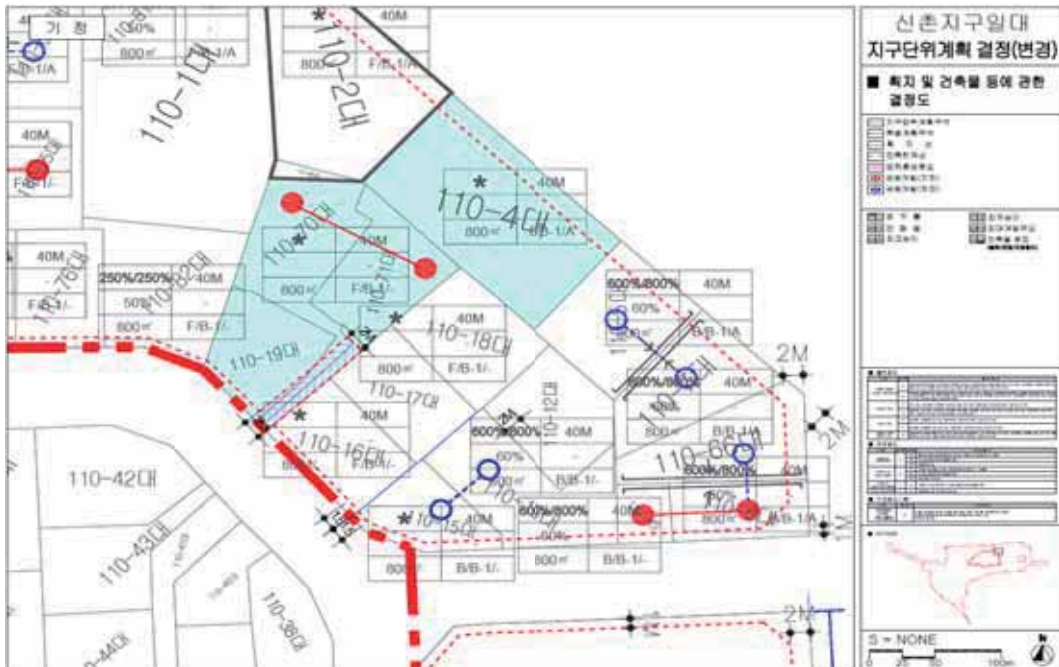
가구번호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대현동 110-4, -19, -70, -71	보차혼용통로 폐지	대현동 110-4번지 외 3필지의 자율적 공동개발로 명지가 해소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대지 내 보차혼용통로 변경(폐지)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330-138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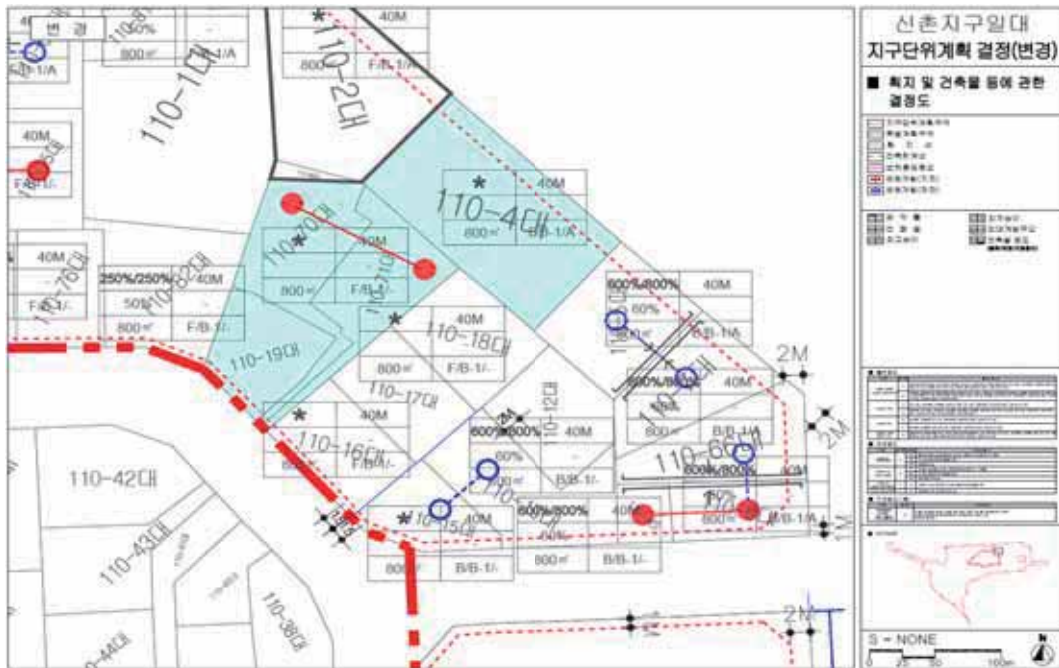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고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기정



■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 - 221

()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03.24.) 및 동작구고시 제2021-207호(2021.9.9.)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남성역 1, 2번 출입구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시철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철도	남성정거장 (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5,276	증)143	5,41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 (1993.03.24.)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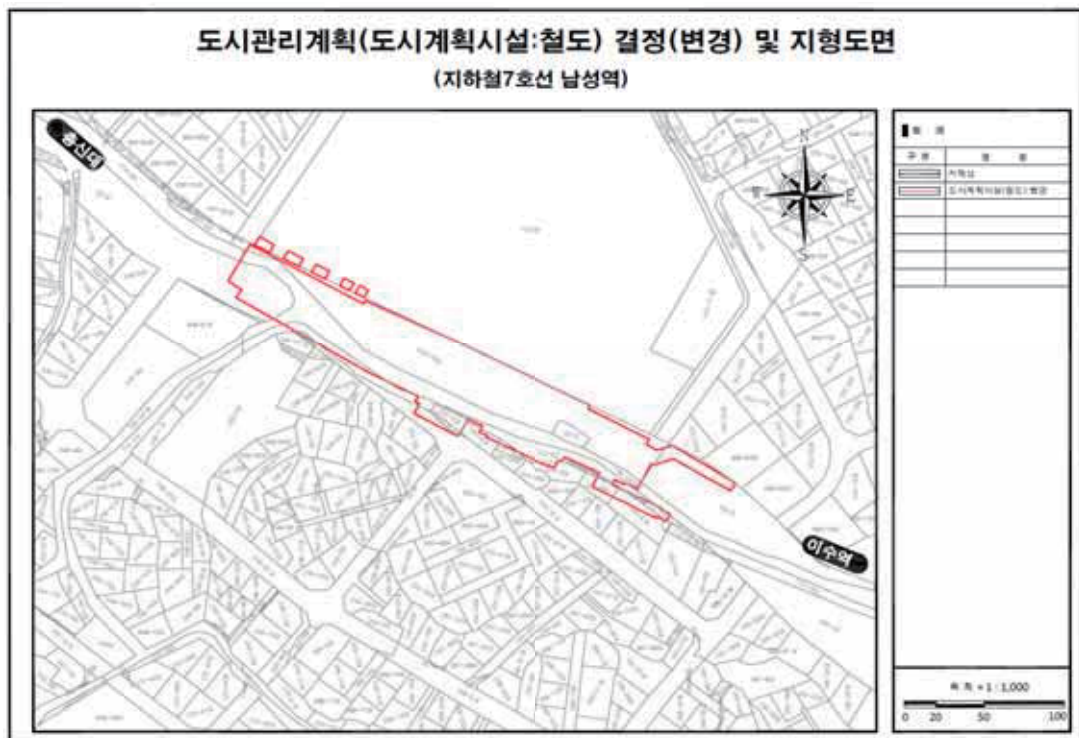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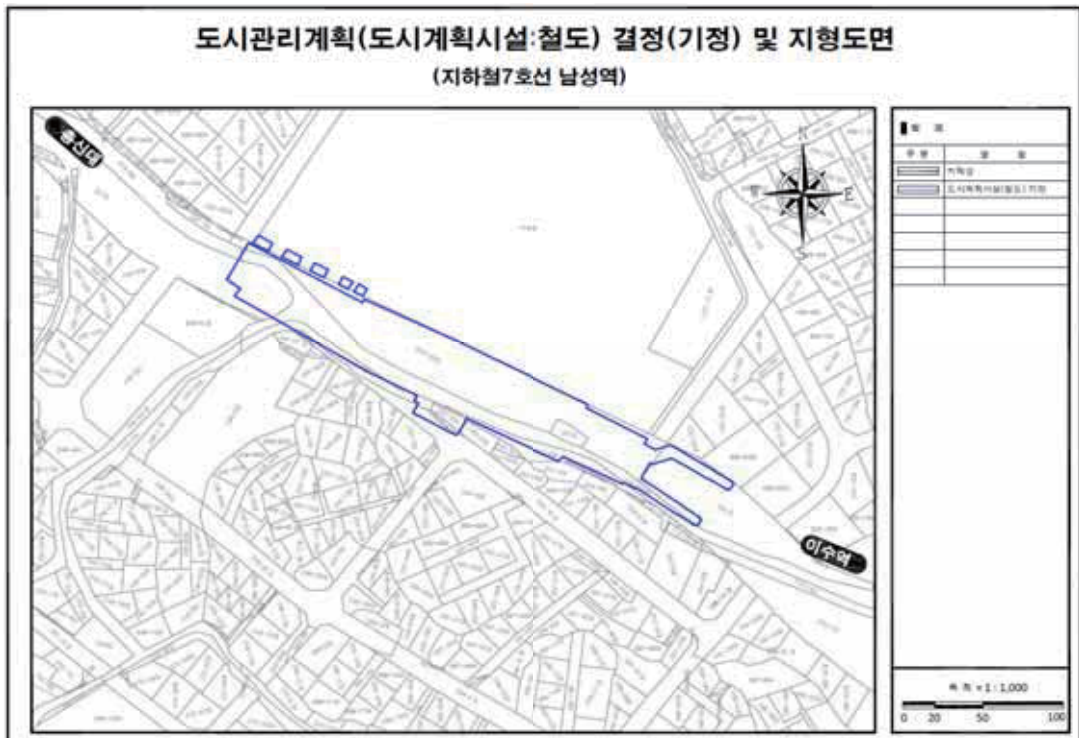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성정거장 (7호선)	○ 면적변경 : 5,276㎡ → 5,419㎡ - 증) 143㎡	■ 남성역 1, 2번 출입구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면적(143㎡) 증가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로관리과(☎820-1405), 도시계획과(☎820-9559)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2021 - 222

()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1-435호(1991.0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7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1-1476호(2021.08.26.)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신대방2동 344-28-344-23	30	5	158	신대방2동 344-28	신대방2동 344-23
변경	신대방2동 344-18-344-21	33	4	132.3	신대방2동 705-9	신대방2동 705-7

※ 변경사유 :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토지이동에 따른 기종점 변경,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면적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신대방동	344-22	대	71	71	김*호	서울 관악구					
							김*태	서울 관악구					
							김*겸	서울 관악구					
							최*상	서울 관악구					
	변경	동작구 신대방동	344-22	대	65	65	김*호	서울 동작구				토지분할	
							김*태	서울 동작구					
							김*겸	서울 동작구					
							최*상	서울 동작구					
							김*호	서울 동작구					
							김*태	서울 동작구					
							김*겸	서울 동작구					
							최*상	서울 동작구					
		동작구 신대방동	344-301	대	6	0	김*호	서울 동작구				토지분할	
							김*태	서울 동작구					
							김*겸	서울 동작구					
							최*상	서울 동작구					

2021 - 223

()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10호(2021.06.03.),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5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1-1475호(2021.08.26.)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산35 ~ 220-102	400	6	2,95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변경	사당3동 산35 ~ 220-102	400	6	2,642.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 변경사유 : 착오기재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 측량성과(현황, 분할)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20-161	도로	72	69	송*선	서울 강남구				
	변경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20-161	도로	72	72	박*빈	서울 성동구				
2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20-165	도로	23	22	정*애	서울 관악구				
	변경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20-165	도로	19	19	정*애	서울 관악구				토지분할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20-207	도로	4	0	상동	서울 관악구				토지분할
3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신25-18	임야	188	122	이*영	서울 성북구				
							홍*이	서울 중구				
							이*호	서울 중구				
							이*영	서울 강북구				
	변경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신25-18	임야	188	188	홍*이	서울 중구				
						이*호	서울 중구					

2021 - 163

() ()

강남구 세곡동 495번지 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하천)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하천	하천	지방 하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강 합류점	2,084,976	감) 1,416	2,083,560	서울특별시고시 제656호(1983.12.8.)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하천	- 도시계획시설(하천) 면적 변경 - 2,084,976㎡ → 2,083,560㎡ (감 1,416㎡) - 세곡동 495번지 외 3필지	대상지는 1983년 하천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 본계획의 하천구역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하천구역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하천	하천	강남구 세곡동 495	350	감) 350	-	
			강남구 세곡동 502	235	감) 235	-	
			강남구 세곡동 503	710	감) 710	-	
			강남구 세곡동 504	121	감) 1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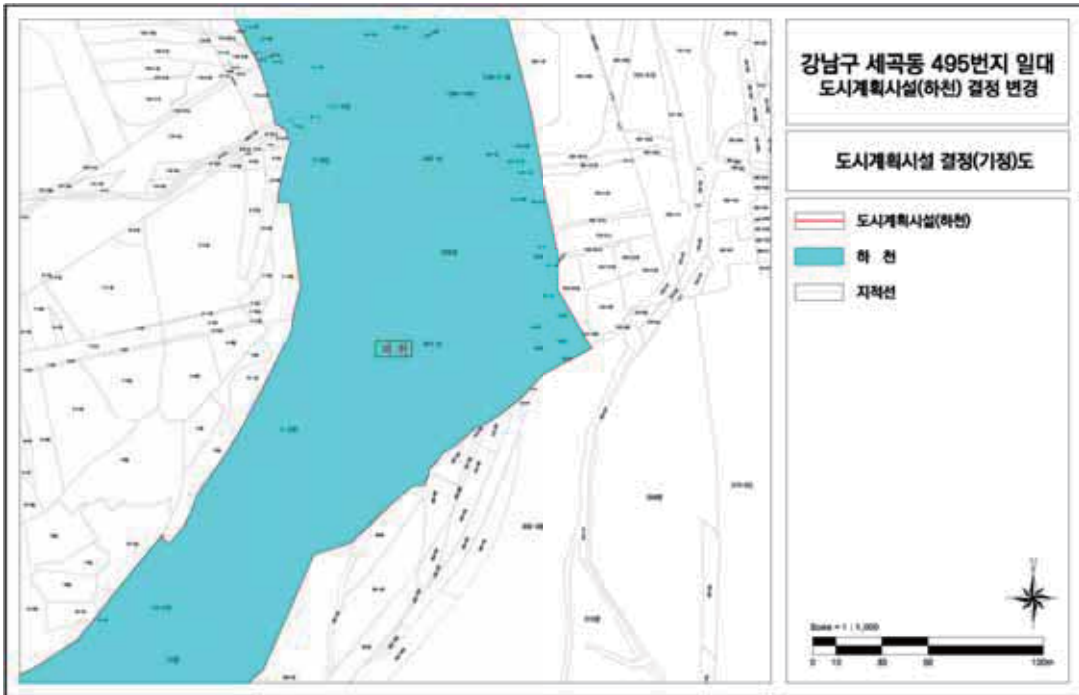
2. 관계도면: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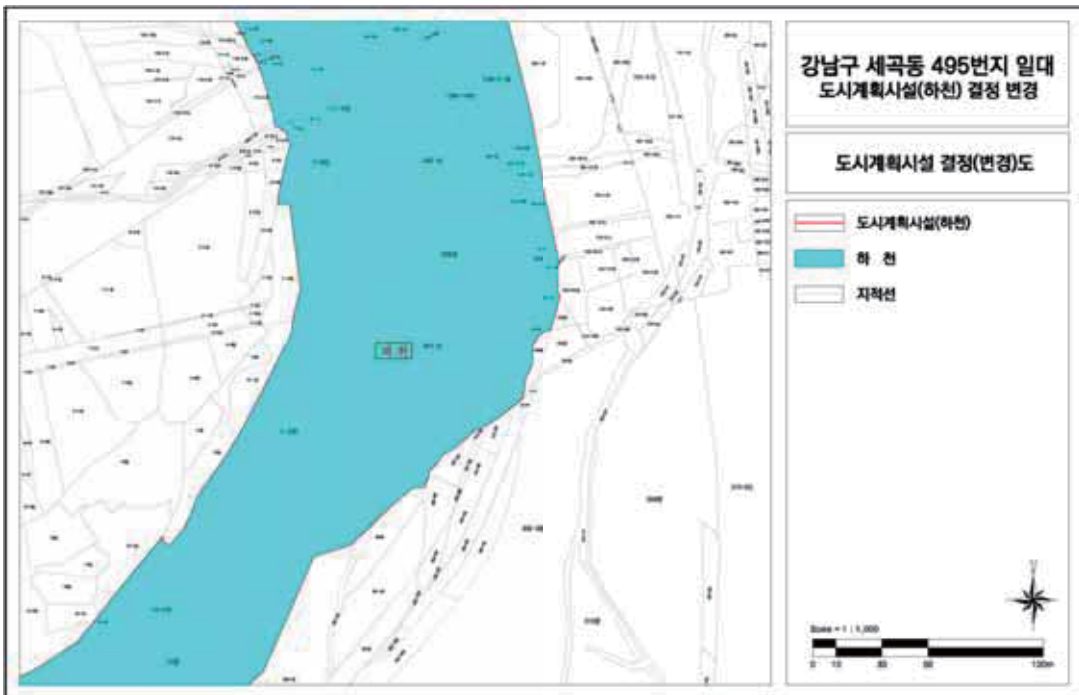
3. 열람장소: 강남구 도시계획과(☎ 02- 3423-610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계획열람-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가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2021 - 1305

()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1-378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응봉근린공원에 대하여,
2. 숲속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등
2. 공원면적: 695,168㎡
3.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계		695,168.00	695,168.00	
기 반 시 설	도로, 광장	69,413.00	69,329.84	감)72.05㎡
조 경 시 설	화계, 화단 등	15,893.00	15,893.00	
휴 양 시 설	휴게소, 경로당 등	9,536.00	9,584.00	증)48.00㎡
유 희 시 설	놀이터	11,003.00	11,003.00	
교 양 시 설	어린이집, 북카페 등	2,926.00	3,262.67	증)336.67㎡
편 익 시 설	주차장, 화장실 등	2,454.00	2,571.24	증)117.24㎡
운 동 시 설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24,186.00	24,186.00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실	1,657.00	1,657.00	
녹지기타		558,100.00	557,681.25	감)418.75㎡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광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6.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02-2286-5654)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산8-1 일대)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기	단	695,168	135,708	27	4,209.94	7,138.14	537	695,168	136,126.75	30	4,546.61	7,474.81	541	695,168	136,126.75	30	4,546.61	시설면적 증 418.75㎡
	소	69,413	68,053	-	-	-	16	69,329.84	67,969.84	-	-	-	16	69,329.84	67,969.84	-	-	
	도	57,748	56,388 (1,360)	-	-	-	-	57,664.84	56,304.84 (1,360)	-	-	-	-	57,664.84	56,304.84 (1,360)	-	-	증 68.03㎡ 감 140.08㎡ 총 감소 72.05㎡
	광	11,665	11,665	-	-	-	16	11,665	11,665	-	-	-	16	11,665	11,665	-	-	
조경 시설		15,893	15,893	-	-	-	69	15,893	15,893	-	-	-	69	15,893	15,893	-	-	
휴양 시설		9,536	9,536	6	670.84	1,080.84	216	9,584	9,584	6	670.84	1,080.84	220	9,584	9,584	6	670.84	증 48.0㎡
유흥 시설		11,003	11,003	-	-	-	44	11,003	11,003	-	-	-	44	11,003	11,003	-	-	
운동 시설		24,186	24,186	1	832.5	1,061.1	186	24,186	24,186	1	832.5	1,061.1	186	24,186	24,186	1	832.5	
교양 시설		2,926	2,926	5	1,172.27	2,844.61	-	3,262.67	3,262.67	8	1,508.94	3,181.28	-	3,262.67	3,262.67	8	1,508.94	증 336.67㎡
편익 시설		2,454	2,454	7	424.0	424.0	4	2,571.24	2,571.24	7	424.0	424.0	4	2,571.24	2,571.24	7	424.0	증 117.24㎡
관리 시설		1,657	1,657	8	1,110.33	1,727.59	2	1,657	1,657	8	1,110.33	1,727.59	2	1,657	1,657	8	1,110.33	
복지 및 기타		558,100	-	-	-	-	-	557,681.25	-	-	-	-	-	557,681.25	-	-	-	증 1418.75㎡
시설을 (법정 40%)		(135,708 / 695,168) x 100 =19.52%				(136,126.75 / 695,168) x 100 =19.58%												특정시설을 19.44%
건폐율 (법정 10%)		(4,209.94 / 695,168.0) x 100 =0.61%				(4,546.61 / 695,168.0) x 100 =0.65%												

2. 시설조서(총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소계			695,168	135,708		27	4,209.94	7,138.14	537			695,168	136,126.75		30	4,546.61	7,474.81	537	시설면적 증) 418.75㎡	
	도로		전지역	57,748	56,388 (1,360)						전지역	57,684.84	56,304.84 (1,360)							감) 140.08㎡ 증) 66.03㎡	
		가	32개소	11,665	11,665		-	-	-	16	가	32개소	11,665	11,665		-	-	-	16		
기반 시설		가-1	성동구 금호2가 산9-1	120	120					1	가-1	성동구 금호2가 산9-1	120	120					1		
		가-2	성동구 응봉동 269-4	1,086	1,086						가-2	성동구 응봉동 269-4	1,086	1,086							
		가-5	중구 신당동 843-2	118	118						가-5	중구 신당동 843-2	118	118							
		가-6	중구 신당동 843-2	200	200						가-6	중구 신당동 843-2	200	200							
		가-7	중구 신당동 843-2	160	160						가-7	중구 신당동 843-2	160	160							
		가-8	용산구 한남동 726-250	56	56						가-8	용산구 한남동 726-250	56	56							
		가-9	용산구 한남동 726-250	48	48						가-9	용산구 한남동 726-250	48	48							
		가-10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588	1,588						가-10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588	1,588							
		가-11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26	126						가-11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26	126							
		가-12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92	92						가-12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92	92							
		가-13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72	453	453						가-13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72	453	453							
		가-14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72	1,620	1,620						가-14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72	1,620	1,620							

구분	시별명	경				전				면				경				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물 (기)	부지면적 (㎡)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물 (기)			
기본 시설	광장	가-15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651	651					가-15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651	651							
		가-16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967	967					가-16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967	967							
		가-17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107	107					가-17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107	107							
		가-18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107	107					가-18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107	107							
		가-19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1,060	1,060				2	가-19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1,060	1,060					2		
		가-20	성동구 금호2가 산9-1	510	510					가-20	성동구 금호2가 산9-1	510	510							
		가-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40	40					가-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40	40							
		가-22	성동구 금호3가 산2-1	280	280					가-22	성동구 금호3가 산2-1	280	280							
		가-23	성동구 옥수동 478-6	102	102					가-23	성동구 옥수동 478-6	102	102							
		가-24	용산구 한남동 726-181	355	355					가-24	용산구 한남동 726-181	355	355							
		가-25	성동구 금호동2가 1-2	99	99					가-25	성동구 금호동2가 1-2	99	99							
		가-26	성동구 옥수동 528-6	257	257				2	가-26	성동구 옥수동 528-6	257	257					2		
		가-29	성동구 옥수동 528-7	307	307				5	가-29	성동구 옥수동 528-7	307	307					5		
		가-30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40	40				1	가-30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40	40					1		
		가-31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25	25				1	가-31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25	25					1		
		가-35	용산구 한남동 726-180	875	875				1	가-35	용산구 한남동 726-180	875	875					1		
		가-36	성동구 옥수동 528-7	38	38				2	가-36	성동구 옥수동 528-7	38	38					2		
		가-37	성동구 옥수동 528-7	43	43				1	가-37	성동구 옥수동 528-7	43	43					1		
		가-38	용산구 한남동 726-181	96	96					가-38	용산구 한남동 726-181	96	96							
		가-39	용산구 한남동 726-181	39	39					가-39	용산구 한남동 726-181	39	3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 시설	소계			15,893	15,893	-	-	-	69			15,893	15,893	-	-	-	69	
		나	12개소	2,763	2,763	-	-	-	32	나		2,763	2,763	-	-	-	32	
	나-1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1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2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115	115					나-2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115	115						
	나-3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113	113					나-3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113	113						
	나-4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67	67					나-4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67	67						
	나-5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760	760					나-5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760	760						
	나-6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83	83					나-6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83	83						
	나-7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521	521					나-7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521	521						
	나-8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622	622					나-8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622	622						
	나-9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9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10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10	성동구 금호4가동 1540	30	30						
	나-12	성동구 응봉동 266	196	196					나-12	성동구 응봉동 266	196	196						
	나-13	성동구 응봉동 266	196	196					나-13	성동구 응봉동 266	196	196						
화훼단지	다	성동구 금호1가 신37-1	800	800					다	성동구 금호1가 신37-1	800	800						
주재원	라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영6동 36	635	635					라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영6동 36	635	635						
문수																		
화계	버	성동구 금호2가 1-3	428	428					버	성동구 금호2가 1-3	428	428						
화단	어	성동구 행당동 신30-46	100	100					어	성동구 행당동 신30-46	100	100						

구분	시설명	경				전				변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률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률 (%)	
진디광장	터	터-1	성동구 행당동 436-1	715	715						715	715						
	터	터-2	성동구 옥수동 436-1	8,730	8,730						8,730	8,730						
	터	터-3	성동구 옥수동 436-1	1,805	1,805						1,805	1,805						
	터	터-4	성동구 금호2가 125-1	2,300	2,300						2,300	2,300						
생태문화로	터	터-5	성동구 행당동 125-1	2,900	2,900						2,900	2,900						
	터	터-6	성동구 금호3가 1625	289	289						289	289						
	터	터-7	성동구 금호1가 1436	1,436	1,436						1,436	1,436						
	터	터-8	성동구 금호2가 125-1	1,000	1,000						1,000	1,000					2	
자연학습장	터	터-9	성동구 행당동 125-1	500	500						500	500						
	터	터-10	성동구 금호3가 1625	30	30						30	30					30	
	터	터-11	성동구 금호1가 1436	5	5						5	5					5	
	터	터-12	성동구 금호2가 125-1	1	1						1	1					1	
화목원	터	터-13	성동구 금호3가 1625	1	1						1	1					1	
	터	터-14	성동구 금호1가 1436	1	1						1	1					1	
	터	터-15	성동구 금호2가 125-1	1	1						1	1					1	
	터	터-16	성동구 금호3가 1625	1	1						1	1					1	
파괴라	터	터-17	성동구 금호1가 1436	1	1						1	1					1	
	터	터-18	성동구 금호2가 125-1	1	1						1	1					1	
	터	터-19	성동구 금호3가 1625	1	1						1	1					1	
	터	터-20	성동구 금호1가 1436	1	1						1	1					1	
계류	터	터-21	성동구 금호2가 125-1	47	47						47	47						
	터	터-22	성동구 금호3가 1625	173	173						173	173						
	터	터-23	성동구 금호1가 1436	2	2						2	2						
	터	터-24	성동구 금호2가 125-1															
생태연못	터	터-25	성동구 금호3가 1625															
	터	터-26	성동구 금호1가 1436															
	터	터-27	성동구 금호2가 125-1															
	터	터-28	성동구 금호3가 1625															
완형물관리	터	터-29	성동구 금호1가 1436															
	터	터-30	성동구 금호2가 125-1															
	터	터-31	성동구 금호3가 1625															
	터	터-32	성동구 금호1가 1436															

구분	시설명	변경						경우						비고					
		변경			경우			변경			경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 시설	원형물레더	저-3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2	2					저-3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2	2						
		점만테크																	
휴양 시설	휴게소	소계			9,536	9,536	6	670.84	1,080.84	216			9,584	9,584		6	670.84	1,080.84	220
		바		24개소	4,998	4,998				6	바	24개소	300	300					6
		바-1	성동구 금호4가 1540	300	300						바-1	성동구 금호4가 1540	300	300					
		바-2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170	170					1	바-2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170	170					1
		바-4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600	600						바-4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600	600					
		바-5	성동구 금호2가 산9-1	50	50						바-5	성동구 금호2가 산9-1	50	50					
		바-6	성동구 금호동2가 501-104	210	210						바-6	성동구 금호동2가 501-104	210	210					
		바-7	성동구 금호2가 산9-1	140	140						바-7	성동구 금호2가 산9-1	140	140					
		바-8	성동구 금호3가 산2-1	200	200					1	바-8	성동구 금호3가 산2-1	200	200					1
		바-9	성동구 옥수동 산5-164	70	70					1	바-9	성동구 옥수동 산5-164	70	70					1
		바-10	성동구 금호동2가 1-2	78	78						바-10	성동구 금호동2가 1-2	78	78					
		바-11	성동구 응봉동 269-4	180	180						바-11	성동구 응봉동 269-4	180	180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바-17	성동구 금호3가 신2-1	140	140						바-17	성동구 금호3가 신2-1	140	140					
		바-18	성동구 금호동2가 501-104	360	360						바-18	성동구 금호동2가 501-104	360	360					
		바-19	용산구 한남동 신2-1	41	41						바-19	용산구 한남동 신2-1	41	41					
		바-20	용산구 한남동 726-181	45	45						바-20	용산구 한남동 726-181	45	45					
		바-21	용산구 한남동 신2-1	65	65						바-21	용산구 한남동 신2-1	65	65					
		바-22	용산구 한남동 신8-1	53	53						바-22	용산구 한남동 신8-1	53	53					
		바-23	성동구 옥수동 528-7	86	86					3	바-23	성동구 옥수동 528-7	86	86					3
		바-24	성동구 응봉동 269	43	43						바-24	성동구 응봉동 269	43	43					
		바-25	중구 신당동 844-10	344	344						바-25	중구 신당동 844-10	344	344					
		바-26	중구 신당동 844-10	107	107						바-26	중구 신당동 844-10	107	107					
		바-27	중구 신당동 844-10	692	692						바-27	중구 신당동 844-10	692	692					
		바-28	중구 신당동 373-149	669	669						바-28	중구 신당동 373-149	669	669					
									바-29	성동구 금호동1가 신37-7	48	48					4		
	고	12개소	3,046	3,046					18	고	12개소	3,046	3,046					18	
	고-1	성동구 금호동2가 산 9-1	225	225						고-1	성동구 금호동2가 산 9-1	225	225						
	고-2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400	400					1	고-2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400	400					1	
	고-3	성동구 금호3가 신37-1	690	690					1	고-3	성동구 금호3가 신37-1	690	690					1	
	고-4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450	450						고-4	성동구 행당동 산 30-40	450	450						
	고-5	용산구 한남동 신8-1	144	144					1	고-5	용산구 한남동 신8-1	144	144					1	
	고-6	용산구 한남동 신8-1	193	193					4	고-6	용산구 한남동 신8-1	193	193					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후				비고			
		번		경		전		변		경		전		번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 시설	숲속쉼터	고-7	용산구 한남동 산8-1	132	132					고-7	용산구 한남동 산8-1	132	132									고-7	용산구 한남동 산8-1	132	132				
		고-8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4	고-8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고-8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4
		고-9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4	고-9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고-9	성동구 옥수동 528-6공	17	17				4
		고-10	용산구 한남동 726-180	466	466				3	고-10	용산구 한남동 726-180	466	466									고-10	용산구 한남동 726-180	466	466				3
		고-11	성동구 금호기가 산37-1	105	105					고-11	성동구 금호기가 산37-1	105	105									고-11	성동구 금호기가 산37-1	105	105				
		고-12	용산구 한남동 726-180	207	207	목조	1	65.0	90.0	고-12	용산구 한남동 726-180	207	207	목조	1	65.0	90.0					고-12	용산구 한남동 726-180	207	207	목조	1	65.0	90.0
	숲속유아쉼 터	1	5개소	1,145	1,145		5	605.84	990.84	-	1	5개소	1,145	1,145		5	605.84	990.84	-										
		1-1	성동구 금호4가 1540	150	150	연외조	1	70.0	140.0		1-1	성동구 금호4가 1540	150	150	연외조	1	70.0	140.0											
		1-2	성동구 금호1가 산37-1	200	200	연외조	1	70.0	140.0		1-2	성동구 금호1가 산37-1	200	200	연외조	1	70.0	140.0											
		1-4	성동구 금호동3가 산2-1	175	175	연외조	1	70.0	140.0		1-4	성동구 금호동3가 산2-1	175	175	연외조	1	70.0	140.0											
		1-6	용산구 한남동 726-250	220	220	조적조 아스팔트 트램	1	175.0	350.0		1-6	용산구 한남동 726-250	220	220	조적조 아스팔트 트램	1	175.0	350.0											
	1-7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400	400	조적조 아스팔트 트램	1	220.84	220.84		1-7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400	400	조적조 아스팔트 트램	1	220.84	220.8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유양 시설	샘지마당	사	성동구 금호2가 신9-1	144	144								
	휴게정자								9				9
	간이정자								18				18
	휴게의자								19				19
	의자								141				141
	평상								3				3
	아외탁자								2				2
유회 시설	스텐드	마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203	203								
	소계			11,003	11,003				44				44
	아		16개소	9,412	9,412				36				36
	아-1	성동구 금호4가 1540	600	600				1	아-1	성동구 금호4가 1540	600	600	1
	아-3	성동구 옥수동 556-2	220	220				1	아-3	성동구 옥수동 556-2	220	220	1
	아-5	성동구 금호1가 165-41	2,970	2,970				5	아-5	성동구 금호1가 165-41	2,970	2,970	5
	아-7	성동구 금호2가 신9-1	1,000	1,000				3	아-7	성동구 금호2가 신9-1	1,000	1,000	3
	아-8	성동구 금호2가 신2-1	600	600				21	아-8	성동구 금호2가 신2-1	600	600	21
	아-9	성동구 옥수동 561-1	35	35				4	아-9	성동구 옥수동 561-1	35	35	4
	아-10	성동구 양봉동 269-4	288	288				1	아-10	성동구 양봉동 269-4	288	288	1
	아-11	중구 신당동 309-61	64	64					아-11	중구 신당동 309-61	64	64	

구분	시설명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해시설	놀이터	아-12	용산구 한남동 726-250	1,201	1,201						아-12	용산구 한남동 726-250	1,201	1,201				
		아-13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415	415						아-13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415	415				
		아-14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280	280						아-14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280	280				
		아-15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660	660						아-15	성동구 금호1가 산 37-1	660	660				
		아-16	성동구 응봉동 266	40	40						아-16	성동구 응봉동 266	40	40				
		아-17	성동구 응봉동 269	850	850						아-17	성동구 응봉동 269	850	850				
		아-18	성동구 금호1가 산37-1	44	44						아-18	성동구 금호1가 산37-1	44	44				
		아-19	용산구 한남동 726-181	145	145						아-19	용산구 한남동 726-181	145	145				
		도	2개소	905	905					2	도	2개소	905	905				2
	모험놀이장	도-1	용산구 한남동 산8-1	437	437						도-1	용산구 한남동 산8-1	437	437				
생활체육시설	도-2	용산구 한남동 산8-1	468	468						2	용산구 한남동 산8-1	468	468				2	
	로	1개소	70	70						3	로	1개소	70	70				3
	로-3	성동구 응봉동 269-4	70	70							로-3	성동구 응봉동 269-4	70	70				
	거	2개소	616	616						3	거	2개소	616	616				3
야외등반시설	거-1	성동구 응봉동 269-4	160	160							거-1	성동구 응봉동 269-4	160	160				
	거-2	성동구 응봉동 269-4	456	456						3	거-2	성동구 응봉동 269-4	456	456				3
소계			24,186	24,186		1		832.5	1,061.1	186		24,186	24,186		1	832.5	1,061.1	186
	카	2개소	10,334	10,334						8	카	2개소	10,334	10,334				8
운동시설	테니스장	카-2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207	1,207						카-2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207	1,207				

구분	시설명	경				전				변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률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연면적	공적률 (%)	
독립 단위 시설	테니스장	카-3	용산구 한남동 726-180일원	9,127	9,127					8	9,127	9,127					8	
		타	2개소	1,458	1,458						1,458	1,458						
		타-2	대현신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1,098	1,098						1,098	1,098						
	게이트볼장	타-3	성동구 평당동 산 30-40	360	360						360	360						
		파	31개소	3,785	3,785					142	3,785	3,785					142	
		파-4	중구 신당동 309-61공	28	28						28	28						
		파-5	중구 신당동 309-61공	28	28						28	28						
		파-6	중구 신당동 309-61공	28	28						28	28						
		파-7	성동구 금호동3가 신2-1	190	190					5	190	190					5	
		파-8	중구 신당동 309-61공	28	28						28	28						
		파-9	중구 신당동 309-61공	28	28						28	28						
	체력단련장	파-10	중구 신당동 843-2공	100	100						100	100						
		파-11	중구 신당동 843-2공	40	40						40	40						
		파-12	용산구 한남동 신8-1입	64	64						64	64						
		파-13	대현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72	253	253						253	253						
		파-14	성동구 금호동2가 신9-1	100	100					8	100	100					8	
		파-15	용산구 한남동 신8-1입	233	233					7	233	233					7	
		파-16	성동구 옥수동 신5-141	300	300					20	300	300					2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파-17	중구 신당동 신37-255	617	617				11	파-17	중구 신당동 신37-255	617	617					11	
		파-18	용산구 한남동 811	170	170				9	파-18	용산구 한남동 811	170	170					9	
		파-19	용산구 한남동 811	100	100				5	파-19	용산구 한남동 811	100	100					5	
		파-20	용산구 한남동 811	290	290				10	파-20	용산구 한남동 811	290	290					10	
		파-22	용산구 한남동 726-181	145	145				9	파-22	용산구 한남동 726-181	145	145					9	
		파-23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132	132				4	파-23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132	132					4	
		파-24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34	34				2	파-24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34	34					2	
		파-25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72	72				6	파-25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72	72					6	
		파-26	용산구 한남동 신2-1	161	161				12	파-26	용산구 한남동 신2-1	161	161					12	
		파-27	용산구 한남동 신2-1	40	40				5	파-27	용산구 한남동 신2-1	40	40					5	
		파-28	성동구 옥수동 436-1	80	80				5	파-28	성동구 옥수동 436-1	80	80					5	
		파-30	성동구 옥수동 528-7	103	103				5	파-30	성동구 옥수동 528-7	103	103					5	
		파-32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85	85				4	파-32	용산구 한남동 신8-1임	85	85					4	
		파-33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32	32				3	파-33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32	32					3	
		파-34	성동구 옥수동 528-6공	22	22				4	파-34	성동구 옥수동 528-6공	22	22					4	
		파-35	성동구 금호동1가 신37-7	42	42				3	파-35	성동구 금호동1가 신37-7	42	42					3	
		파-36	성동구 금호동1가 신37-7	68	68				5	파-36	성동구 금호동1가 신37-7	68	68					5	
파-37	대원신 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72	172					파-37	대원신 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172	17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	하	15개소	6,124	6,124	-	-	-	35	하	15개소	6,124	6,124	-	-	-	35	
		하-1	성동구 금호4가 1540	680	680				1	하-1	성동구 금호4가 1540	680	680				1	
		하-7	성동구 금호2가 신9-1	200	200				9	하-7	성동구 금호2가 신9-1	200	200				9	
		하-8	성동구 금호2가 신9-1	400	400				1	하-8	성동구 금호2가 신9-1	400	400				1	
		하-9	성동구 금호2가 신9-1	360	360				1	하-9	성동구 금호2가 신9-1	360	360				1	
		하-10	성동구 금호2가 신9-1	230	230				1	하-10	성동구 금호2가 신9-1	230	230				1	
		하-11	성동구 금호3가 신2-1	315	315				1	하-11	성동구 금호3가 신2-1	315	315				1	
		하-13	중구 신당동 372-2852	200	200				2	하-13	중구 신당동 372-2852	200	200				2	
		하-14	중구 신당동 산 51	800	800				14	하-14	중구 신당동 산 51	800	800				14	
		하-15	성동구 옥수동 산5-164	500	500				1	하-15	성동구 옥수동 산5-164	500	500				1	
		하-16	용산구 한남2동 산8-1	550	550				2	하-16	용산구 한남2동 산8-1	550	550				2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 장	하-18	중구 신당동 309-61	225	225				1	하-18	중구 신당동 309-61	225	225				1	
		하-19	중구 신당동 843-2	120	120					하-19	중구 신당동 843-2	120	120					
		하-21	대원신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454	454					하-21	대원신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454	454					
		하-22	성동구 금호4가 1540	600	600				1	하-22	성동구 금호4가 1540	600	600				1	
다목적 공간	다목적경기 장	하-20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490	490					하-20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490	490					
		너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993	993					너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993	993					
		더	4개소	439	439	-	-	-	-	더	4개소	439	439	-	-	-	-	-
		더-1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87	87					더-1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 1가 101	87	8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운동 시설	건강재활보도	더-2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 6동 36	82	82					더-2	대현산배수지 중구 신당 6동 36	82	82								
		더-3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90	190					더-3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90	190								
		더-4	용산구 한남동 811	80	80					더-4	용산구 한남동 811	80	80								
		리	1개소	220	220		-	-	1	리	1개소	220	220		-	-	1				
공공 시설	농구장	라-2	성동구 금호3가 산2-1	220	220				1	라-2	성동구 금호3가 산2-1	220	220					1			
		11	성동구 행당동 산30-40	833	833	철근콘크리트 구조	1	832.5 1,061.1		11	성동구 행당동 산30-40	833	833	철근콘크리트 구조	1	832.5 1,061.1					
		소계			2,926	2,926		6 1,242.27 2,984.61	-			3,262.67	3,262.67		8 1,508.94 3,181.28	-	증 336.67㎡				
		독서실	2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110	1,110	연외조	1	90.0 180.0		2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110	1,110	연외조	1	90.0 180.0				
교양 시설	문화회관	3	중구 신당동 산37-15	500	500	철근콘크리트 구조	1	200.0 659.0		3	중구 신당동 산37-15	500	500	철근콘크리트 구조	1	200.0 659.0					
		머	2개소	65	65		-	-	-	머	2개소	65	65		-	-	-				
	아와무대 (아외음악당)	머-1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33	33					머-1	대현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33	33								
		머-3	성동구 금호2가 산9-1	32	32					머-3	성동구 금호2가 산9-1	32	32								
	작은도서관		성동구 금호3가 산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생태학습공방		성동구 금호3가 산2-1								성동구 금호3가 산2-1										
			어린이농원이 점용시설																		
	아름다운 마을	어린이집	8	3개소	830	830		2	582.0 1,637.18		8	3개소	830	830		2	582.0 1,637.18				
8-1			용산구 한남동 726-181	300	300		1	299.59 775.0		8-1	용산구 한남동 726-181	300	300		1	299.59 775.0					
8-2			성동구 옥수동 545	530	530	철근콘크리트 구조	1	282.41 862.18		8-2	성동구 옥수동 545	530	530	철근콘크리트 구조	1	282.41 862.18					
9			성동구 옥수동 528-6	421	421	철근콘크리트 구조, 복구조	1	300.27 368.43		9	성동구 옥수동 528-6	421	421	철근콘크리트 구조, 복구조	1	300.27 368.43					
도서관									10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336.67	336.67		1	336.67	336.67		신설			

구분	시설명	본 경				전 경				본 경				후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용량(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용량(기)	
소계	전망대	4	5개소	2,454	2,454		7	424.0	4			2,571.24	2,571.24		7	424.0	4	중) 117.24㎡
		4-1	성동구 금호4가 1540	420	420	한식 목구조	1	80.0		4-1	성동구 금호4가 1540	420	420	한식 목구조	1	80.0		
		4-2	성동구 옥수동 산5-164	400	400	한식 목구조	1	80.0		4-2	성동구 옥수동 산5-164	400	400	한식 목구조	1	80.0		
		4-3	중구 신당동 309-61	106	106		1	45.0		4-3	중구 신당동 309-61	106	106		1	45.0		
		4-4	용산구 한남동 산8-1	57	57					4-4	용산구 한남동 산8-1	57	57					
주저장	화장실	4-5	용산구 한남동 산8-1	33	33					4-5	용산구 한남동 산8-1	33	33					
		자	5개소	776	776					자	5개소	893.24	893.24					
		자-1	성동구 응봉동 209-4	125	125					자-1	성동구 응봉동 209-4	125	125					
		자-3	용산구 한남동 726-181	288	288					자-3	용산구 한남동 726-181	288	288					
		자-4	용산구 한남동 726-250	245	245					자-4	용산구 한남동 726-250	245	245					
화장실	화장실	자-5	용산구 한남동 726-542	62	62					자-5	용산구 한남동 726-542	62	62					
		자-6	성동구 옥수동 528-6공	56	56					자-6	성동구 옥수동 528-6공	56	56					
										자-7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117.24	117.24					신설 중) 117.24㎡
		5	5개소	462	462		4	219.0	-	5	5개소	462	462		4	219.0	-	
		5-4	중구 신당동 333-771	100	100	철근 콘크리트	1	78		5-4	중구 신당동 333-771	100	100	철근 콘크리트	1	78		
화장실	화장실	5-5	성동구 옥수동 산5-99	100	100	연외조	1	50		5-5	성동구 옥수동 산5-99	100	100	연외조	1	50		
		5-7	중구 신당동 351-104	150	150	조적조	1	33		5-7	중구 신당동 351-104	150	150	조적조	1	33		
		5-8	대원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80	80	조적조 아스팔트 평	1	58		5-8	대원산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80	80	조적조 아스팔트 평	1	58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32	32					
		5-11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32	32					5-11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7	32	32					

판인
서울

구분	시설명	본 경				전 경				본 경				후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의 시설	음수대	차	3개소	69	69		-	-	3	차	3개소	69	69		-	-	3			
		차-1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28	28				1	차-1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동1가 101	28	28				1			
		차-2	대원신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34	34				1	차-2	대원신배수지 중구 신당동 36	34	34				1			
		차-3	중구 신당동 산 51	7	7				1	차-3	중구 신당동 산 51	7	7				1			
		모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131	131					모	성동구 금호동3가 1625	131	131							
		⑨	용산구 한남동 726-181						1	⑨	용산구 한남동 726-181							1		
		소계			1,657	1,657		8	1,110.33	1,727.59	2		1,657	1,657		8	1,110.33	1,727.59	2	
		6	8개소	1,657	1,657		8	1,110.33	1,727.59	-	6	8개소	1,657	1,657		8	1,110.33	1,727.59	-	
관리 시설	관리사무실	6-1	성동구 금호2가 신9-1	150	150	연외조	1	95	95		6-1	성동구 금호2가 신9-1	150	150	연외조	1	95	95		
		6-2	성동구 양봉동 289-4	94	94	철근콘크리트 (2층)	1	93.15	163.84		6-2	성동구 양봉동 289-4	94	94	철근콘크리트 (2층)	1	93.15	163.84		
		6-3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386	386	조적도 아스팔트성글	1	145	145		6-3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386	386	조적도 아스팔트성글	1	145	145		
		6-4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220	220	조적조 (3층)	1	220	509		6-4	대원신배수지 성동구 금호1가 1-72	220	220	조적조 (3층)	1	220	509		
		6-5	성동구 금호1가 신37-1공	338	338	조적도 (1층)	1	134	134		6-5	성동구 금호1가 신37-1공	338	338	조적도 (1층)	1	134	134		
		6-6	중구 신당동 351-104	39	39	샌드위치패널 벽체(1층)	1	24	24		6-6	중구 신당동 351-104	39	39	샌드위치패널 벽체(1층)	1	24	24		
		6-7	용산구 한남동 726-180	158	158	샌드위치패널 (1층)	1	158	158		6-7	용산구 한남동 726-180	158	158	샌드위치패널 (1층)	1	158	158		
		6-8	용산구 한남동 726-180	272	272	철근콘크리트 (2층)	1	241.18	498.75		6-8	용산구 한남동 726-180	272	272	철근콘크리트 (2층)	1	241.18	498.75		
태양광발전시설	용산구 한남동 726-181							2		용산구 한남동 726-181							2			
	공원전체	558,100								공원전체	557,681.2 5							2		
특기 및 기타																		합 418.75㎡		

3. 도로조서 - 총괄

-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73	1,360				
기정	소로	1	1	19	73	1,360	진입로	놀이터6남측	금호여중좌단	금호산지역

- 공원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소계			5,482	28,207				
기정		3	1	3~12	146	724	진입로	응봉동 272	전망대 4-1	응봉산지역
기정		3	2	6~14	315	1,781	진입로	독서실 2	놀이터 아-15	대현산지역
기정		3	3	2~3	247	624	진입로	소로 3-2 분기점	소로 3-4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3	4	1~7	164	801	진입로	응봉동 275	응봉동 265-318	대현산지역
기정		3	5	2~6	97	298	산책로	응봉동 265-318	소로 3-2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3	6	1.5~10	355	2,360	진입로	소로 3-44 종점	광장 가-20	금호산지역
기정		3	7	9~14	174	1,504	연결로	광장 가-20	산책로 9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폐지
기정		3	9	3~8	55	296	산책로	어린이집 8-2	광장 가-21	금호산지역
기정		3	10	2~5	200	563	산책로	소로 3-11 분기점	전망대 4-2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기정		3	11	1~16	581	3,299	산책로	신당동 844	신당동 844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기정		3	12	3~11	285	1,631	산책로	놀이터 아-9	광장 가-23	매봉산지역
기정		3	13	2.5~4	22	63	산책로	옥수동 544-1	소로3-9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3	14	2.5~5	27	39	진입로	소로 3-6 분기점	신당동 333-771	금호산지역
기정		3	15	4~5	72	296	진입로	산책로 46 기점	신당동 309-281	금호산지역
기정		3	16	4	9	37	진입로	신당동 309-99	소로3-15분기점	금호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7	4	50	206	연결로	광장 가-5	광장 가-6	금호산지역
기정		3	18	3	14	42	진입로	데크로드 차-2	소로3-4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19	3	34	102	연결로	소로3-40 분기점	광장 가-10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0	5	274	1,373	산책로	소로3-25 분기점	신당동 36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1	7	22	153	진입로	소로3-40 분기점	광장 가-10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2	5	15	75	연결로	광장 가-10	산책로71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3	4	52	210	연결로	광장 가-13	소로3-4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4	4	37	148	연결로	소로3-40 분기점	광장 가-13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5	6	84	504	진입로	신당동 36	광장 가-14	대현산배수지
기정		3	26	2.5	57	120	연결로	금호동2가 1	소로3-27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3	27	4~12	184	1,016	연결로	소로 3-6 분기점	산책로21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3	28	4~8	35	177	진입로	금호동2가 1	금호동2가 1-6	금호산지역
기정		3	30	7	115	857	진입로	소로3-20 분기점	소로3-4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31	3	78	233	연결로	광장 가-15	광장 가-15	대현산배수지
기정										폐지
기정		3	33	6	79	475	진입로	신당동 36	소로3-31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34	3	16	49	진입로	금호동1가 1-72	소로3-4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35	3	13	38	진입로	금호동1가 1-72	소로3-4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36	4~6	36	139	연결로	소로3-44 분기점	금호2가 산9-1	금호산지역
기정		3	37	2~3	10	27	연결로	휴게소 바-5	화계 버	금호산지역
기정		3	38	4~10	128	851	연결로	광장 가-24	광장 가-35	매봉산지역
기정		3	39	5	48	238	산책로	신당동 36	신당동 36	대현산배수지
기정		3	40	5	621	3,108	산책로	신당동 36	소로3-25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41	6	7	42	연결로	소로3-20 분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42	6	7	42	연결로	소로3-40 분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43	3	59	176	진입로	호동1가 1-72	소로3-20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3	44	3~10	79	430	진입로	금호동2가 1-4	금호동2가 1	금호산지역
기정		3	45	2~10	528	2,709	산책로	소로 3-7 분기점	금호동3가 산2-1	금호산지역
기정		3	46	7	13	91	연결로	신당동 844	신당동 844	매봉산지역
기정		3	47	2	7	13	연결로	신당동 844	신당동 844	매봉산지역
기정		3	48	5~15	17	162	연결로	소로3-38 분기점	배드민턴장 카-3	매봉산지역
기정		3	49	4	3	16	진입로	옥수동526	광장 가-26	매봉산지역
기정		3	50	6	11	69	진입로	옥수동526	산책로 28	매봉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계			13,009	28,181				
변경					12,964	28,071.73				
기정			1	3~4	90	278	산책로	응봉동 193-235	놀이터 아-17	응봉산지역
기정			2	1~2	135	241	산책로	휴게소 바1	배드민턴장 하1	응봉산지역
기정			3	2~3	226	627	산책로	조각전시장 나-7	전망대 4-1	응봉산지역
기정			4	2	18	36	산책로	경로당 1-1	조각전시장 나-1	응봉산지역
기정			5	1~6	63	342	진입로	휴게소 바-4	화훼단지 다	대현산지역
기정			6	3.5	59	212	산책로	소로3-3 분기점	소로3-4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7	2~6	165	502	산책로	행당동 산30-67	금호동1가 산37-1	대현산지역
기정			8	2~20	136	823	산책로	산책로7 시점	산책로1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9	2~5	38	142	산책로	소로3-2 분기점	산책로11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0	3~4	34	118	산책로	소로3-2 분기점	산책로11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1	2~4	323	847	산책로	산책로13 분기점	산책로1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2	3~6	21	83	산책로	산책로11 분기점	숲속쉼터 고-3	대현산지역
기정			13	1~9	385	1,060	산책로	소로3-5 분기점	산책로 18 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4	1.5	58	87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96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15	1.5	100	149	산책로	산책로18 분기점	산책로1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6	1.5	110	166	산책로	산책로18 분기점	산책로1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7	1.5~2	114	214	산책로	산책로13 분기점	산책로18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18	1.5~2	90	144	산책로	산책로13 종점	산책로1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9	1.5	34	51	산책로	휴게소 바-16	소로3-26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20	2.0	20	39	산책로	소로3-6 분기점	소로3-27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21	3	38	92	산책로	소로3-6 분기점	소로3-27 종점	금호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 책 로		22	1~5	46	123	산책로	소로3-45 분기점	금호2가 421-22	금호산지역
기정			23	1~2	84	123	산책로	배드민턴장 하-11	산책로25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24	1~4	33	112	산책로	숲속쉼터 고-1	광장 가-1	금호산지역
기정			25	2.5	154	405	산책로	광장 가-22	산책로 23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26	3.5~4.5	20	85	산책로	금호동3가 산 2-1	광장 가-22	금호산지역
기정			27	3.5~4.5	33	136	산책로	금호동3가 1351-51	산책로18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28	2	34	125	산책로	산책로 100 분기점	광장 가-26	매봉산지역
기정			29	1.5~2.5	114	199	산책로	산책로100 기점	전망대 4-2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기정			30	1	133	143	산책로	산책로29 분기점	산책로3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31	1.5~3	91	165	산책로	산책로167 종점	산책로30 종점	매봉산지역
기정			32	1~2	94	77	산책로	산책로 31 종점	전망대 4-2	매봉산지역
기정			33	1~2	38	49	산책로	산책로135 분기점	산책로136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34	1~2	365	502	산책로	산책로139 분기점	산책로148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35	1.5~6	44	131	산책로	금호동3가 1351-51	산책로18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36	3	18	49	산책로	금호동2가 1	소로 3-6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37	1.5	16	24	진입로	신당동 346-565	산책로38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38	1~6	190	421	산책로	산책로25 분기점	소로 3-7 시점	금호산지역
기정			39	1.5~4.5	208	47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2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40	2~3	47	101	연결로	배드민턴장 하-18	산책로47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41	2~4.5	36	90	연결로	신당동 309-61	산책로 44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42	2	11	22	연결로	산책로39 분기점	놀이터 아-11	금호산지역
기정			43	1	6	6	연결로	산책로42 분기점	놀이터 아-11	금호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책로		44	2	10	20	연결로	산책로39 분기점	산책로41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45	1.5	50	82	산책로	신당동 309-211	휴게소 바-35	금호산지역
기정			46	1.5	24	37	연결로	소로3-15 시점	산책로4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47	3	20	60	산책로	산책로39 분기점	산책로41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48	1.5	2	3	진입로	신당동 843	광장 가-7	금호산지역
기정			49	1.2	16	19	산책로	신당동 843-2	광장 가-7	금호산지역
기정			50	1~ 1.5	72	88	연결로	광장 가-7	광장 가-6	금호산지역
기정			51	1.5~2	6	10	산책로	소로3-17 분기점	산책로50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52	1~ 1.5	7	10	산책로	소로3-17 분기점	산책로50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53	1~ 1.5	8	10	산책로	소로3-17 분기점	산책로50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54	1.5	11	17	산책로	소로3-17 분기점	산책로55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55	1.5	32	47	산책로	광장 가-5	휴게소 바-37	금호산지역
기정			56	2	14	28	산책로	소로3-17 분기점	휴게소 바-37	금호산지역
기정			57	2.5	26	65	연결로	광장 가-6	휴게소 바-38	금호산지역
기정			58	1.5	15	22	산책로	신당동 843	신당동 843	금호산지역
기정			59	3	8	24	산책로	신당동 843-2	광장 가-6	금호산지역
기정			60	1.5~3	276	541	산책로	산책로144 분기점	산책로155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61	1.0	190	192	산책로	산책로 109종점	한남동 산 8-1	매봉산지역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산 책 로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기정			70	1.4	159	223	산책로	주차장 자-4	산책로34 분기점	대명산지역
기정			71	2	109	217	산책로	소로3-22 종점	소로 3-22 종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72	2	100	200	산책로	광장 가-10	소로3-2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73	5	285	1,432	산책로	광장 가-18	광장 가-18	대현산배수지
기정			74	1.5	12	18	연결로	산책로72 분기점	산책로71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75	1.5	31	47	연결로	산책로71 분기점	광장 가-13	대현산배수지
기정			76	1.5	5	8	연결로	음수대 차-1	광장 가 -13	대현산배수지
기정			77	2.5	60	150	산책로	산책로73 분기점	산책로78 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78	2.5	60	150	산책로	산책로77 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79	3	18	53	산책로	산책로78 기점	산책로7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0	2.5	30	75	산책로	소로2-31 분기점	산책로81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1	3	51	154	산책로	신당동 36	소로3-3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2	2.5	33	84	연결로	산책로81 분기점	소로3-39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3	3	47	141	산책로	소로3-33 분기점	산책로82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4	2	18	37	연결로	산책로83 분기점	산책로81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5	2	22	44	연결로	산책로83 분기점	산책로81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6	2	16	33	연결로	산책로83 분기점	소로3-33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87	1.5	16	28	연결로	게이트볼장 타-2	음수장 차-2	대현산배수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산책로									폐지
기정			89	2~7	175	499	산책로	나-1 조각전시장	나-7 조각전시장	응봉산지역
기정			90	2	18	39	연결로	산책로2 분기점	배드민턴장 하-22	응봉산지역
기정			91	3	40	142	연결로	배드민턴장 하-1	소로3-1 분기점	응봉산지역
기정			92	1	16	16	연결로	소로 3-1 분기점	배드민턴장 하-1	응봉산지역
기정			93	1~3	23	51	연결로	산책로1 종점	응봉동 272	응봉산지역
기정			94	2~3	22	43	연결로	응봉동 264-5	소로3-4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95	1.5	125	187	산책로	소로3-45 분기점	산책로24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96	1.5	98	147	산책로	산책로24 분기점	산책로23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97	1.5	25	46	산책로	산책로25 분기점	산책로38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98	1.5	121	181	산책로	광장 가 -23	산책로167 분기점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기정			99	2	13	38	산책로	옥수동 526	광장 가-26	매봉산지역
기정			100	3	19	98	진입로	옥수동 526	옥수동 526	매봉산 지역
기정			101	1~2	83	91	산책로	산책로32 분기점	배드민턴장 하- 14	매봉산지역
기정			102	1.5	14	21	산책로	전망대 4-2	배드민턴장 하-14	매봉산지역
폐지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기정			104	1~2	250	258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산책로3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05	2	172	345	산책로	한남동 726-261	산책로109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06	1.5~3.5	60	90	산책로	한남동 726-261	산책로105	매봉산지역
기정			107	1	16	16	산책로	놀이터 아-19	어린이집 8-1	매봉산지역
기정			108	1.5	92	141	산책로	산책로109 분기점	산책로105 분기점	매봉산지역
당초			109	1.5	30.0	45.0	산책로	한남2동 726-314	산책로61 시점부	매봉산지역
기정			109	1.5	30	45	산책로	광장 가-38	산책로6 1시점	매봉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 책 로		110	1.5	6	10	산책로	산책로106	테니스장 카-3	매봉산지역
기정			111	1.5	3	5	산책로	산책로105 분기점	산책로 113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12	1.5~2	22	40	산책로	한남동 726-267	산책로 105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13	1.5	8	12	산책로	테니스장 카-3	테니스장 카-3	매봉산지역
기정			114	1.5 ~2.5	643	1,435	산책로	한남동 822	옥수동 436-10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폐지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기정			116	2.3	66	150	산책로	한남동 723-48	산책로 11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17	3	16	50	산책로	한남동 810	산책로 11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18	1.5~3	28	56	산책로	한남동 810	산책로 11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19	1.5	280	420	산책로	광장 가-19	산책로8 종점	대현산지역
기정			120	1.5	48	74	산책로	산책로 8 분기점	실내체육관 퍼	대현산지역
기정			121	1.5	4	7	산책로	산책로120 분기점	실내체육관 퍼	대현산지역
기정			122	2	22	44	산책로	산책로120 분기점	게이트볼장 타-3	대현산지역
기정			123	2	157	314	산책로	옥수동 528-1	광장 가-37	매봉산지역
기정			124	1.5	76	115	산책로	광장 가-29	광장 가-36	매봉산지역
기정			129	2	38	76	산책로	금호동3가 1625	생태탐방로 터-5	금호산지역
기정			130	2	31	62	산책로	산책로188 종점	산책로187 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131	2	26	52	산책로	광장 가-31	산책로130 종점	금호산지역
기정			135	1~6	159	283	산책로	소로3-38 분기점	산책로6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36	1~3	90	129	산책로	산책로33 분기점	산책로140 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37	1~ 1.2	64	71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산책로135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38	1~2	108	129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산책로10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39	1~2	63	90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배드민턴장 하-16	매봉산지역
기정			140	2~3	38	86	산책로	산책로 136 종점	휴게소 바-42	매봉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 책 로		141	1~1.5	11	14	연결로	휴게소 바-42	배드민턴장 하-16	매봉산지역
기정			142	1.2	69	83	산책로	산책로 144 분기점	전망대 4-4	매봉산지역
기정			143	1~2	33	48	산책로	산책로 139 분기점	휴게소 바-42	매봉산지역
기정			144	1~3	132	203	산책로	휴게소 바-42	한남동 산 8-1	매봉산지역
기정			145	1.5~3	53	116	산책로	전망대 4-4	산책로 155 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46	1	9	9	산책로	전망대 4-4	산책로 14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47	1.5	9	14	산책로	산책로 145 분기점	산책로 14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48	1~ 1.5	77	100	산책로	휴게소 바-22	한남동 산 8-1	매봉산지역
기정			149	1~2.5	101	162	산책로	산책로 155 분기점	휴게소 바-22	매봉산지역
기정			150	1.5	114	171	산책로	산책로34 분기점	휴게소 바-22	매봉산지역
기정			151	1	24	24	산책로	산책로34 분기점	산책로148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52	1	26	26	산책로	산책로 153 분기점	산책로 156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53	1	41	41	산책로	산책로 156	휴게소 바-52	매봉산지역
기정			154	1	14	14	산책로	휴게소 바-52	산책로 156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55	2~3.5	150	262	산책로	휴게소 바-50	휴게소 바-43	매봉산지역
기정			156	1~2	149	261	산책로	한남동 산 2-1	산책로 3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57	1~1.5	69	103	산책로	산책로 156 분기점	산책로 3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58	1.5~3	222	485	산책로	산책로159 기점	휴게소 바-42	매봉산지역
기정			159	2.5~4	52	173	산책로	산책로158 기점	산책로 135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60	2	148	274	산책로	산책로109 분기점	놀이터 아-12	매봉산지역
기정			161	1.5	141	213	산책로	놀이터 아-12	산책로 10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62	1.5~4	74	152	산책로	응봉동 274	응봉동 274	응봉산지역
기정			163	1.4	22	30	산책로	광장 가-38	광장 가-39	매봉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 책 로		164	1.5	97	148	산책로	한남동 산 9-23	소로3-38 분기점	매봉산지역
폐지										폐지
기정			166	1~1.5	25	30	산책로	테니스장 카-3	소로 3-48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67	1.5	146	223	산책로	옥수동 436	산책로31 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68	1.5~2	256	445	산책로	산책로 167 시점	산책로 114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69	1.5~2	29	49	진입로	옥수동 450-11	산책로168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70	3	43	130	연결로	소로 3-11 분기점	배드민턴장 하-25	매봉산지역
기정			171	1.5	167	253	산책로	휴게소 바-28	배드민턴장 하-25	매봉산지역
기정			172	1.5	17	26	연결로	휴게소 바-27	산책로 17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73	1.5	13	20	연결로	산책로170 분기점	산책로171 분기점	매봉산지역
기정			174	1.5	8	12	진입로	신당동 844	배드민턴장 하-25	매봉산지역
기정			175	2	13	27	연결로	금호동1가 633	소로3-3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76	1.5	12	18	연결로	응봉동 산 8-13	산책로1 분기점	응봉산지역
기정			177	1~20	35	454	연결로	조각전시장 나-5	산책로89 분기점	응봉산지역
기정			178	1.5	6	94	연결로	산책로7 분기점	산책로17 분기점	대현산지역
기정			179	2	47	93	연결로	소로3-35 분기점	소로3-34 분기점	대현산배수지
기정			180	1.5	4	6	연결로	신당동 843-6	금호동2가 산 9-1	금호산지역
기정			181	1.5	35	54	산책로	신당동 843	신당동 843	금호산지역
기정			182	1.5~2.5	10	23	연결로	휴게소 바-10	소로3-26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183	3	8	26	연결로	소로3-26 분기점	소로3-27 분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184	3~6	42	170	연결로	소로3-27 분기점	광장 가-25	금호산지역
기정			185	2.5 ~8	126	460	산책로	광장 가-21	산책로 39 분기점	금호산지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 책 로		186	2	18	36	연결로	생태탐방로 터-5	전망데크 모	금호산지역
기정			187	2	19	38	연결로	산책로 130 종점	생태탐방로 터-5	금호산지역
기정			188	2	25	50	연결로	광장 가-30	산책로130 기점	금호산지역
기정			189	6	3	18	연결로	도자구역	화장실 5--5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부분편입)
기정			190							매봉산지역 (도자구역)
기정			191	2	93	172	산책로	전망대 4-1	응봉동 271공	응봉산지역
기정			192	2	104	284	산책로	조각전시장 나-6	금호동4가 1540	응봉산지역
기정			193	2	129	256	산책로	소로 3-40	금호동1가 127-2수	대현산배수지
당초			194	3	400	1,200	산책로	금호동1가 산37-7	금호동1가 산37-7	대현산지역
변경			194	3	355	1,050	산책로	금호동1가 산37-7	금호동1가 산37-7	대현산지역
신설			195	2	15	41	산책로	금호동1가 산37-7	금호동1가 산37-7	대현산지역
신설			196	1.5	17	28	산책로	금호동1가 산37-7	금호동1가 산37-7	대현산지역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미산입시킴으로 시설율에 미포함.

2021 - 1232

() ()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시고시 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91호(2021.09.02)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수락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76,842㎡)
2. 조성계획 변경(안)
 - 시설면적 : 12,353.01㎡ → 13,383.61㎡ (증 1,030.60㎡)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156.39㎡), 잔디광장(555㎡) 등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1. 9. 23. ~ 10. 7. (14일간)
5.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 02)2116-3966]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 (당고개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2021. 09

요구부서 : 노원구청

가. 수락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기정(수락산 근린공원)						구분	변경(수락산 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원 시설 구역	계	76,842.00	12,353.01	3	1,339.00	1,627.00	183	계	76,842.00	13,383.61	3	1,434.62	1,722.62	168	중 1,030.60㎡
	소계	76,842.00	12,353.01	3	1,339.00	1,627.00	183	76,842.00	13,383.61	3	1,434.62	1,722.62	168	중 1,030.60㎡	
		1지구	28,183.40	1,712.05	1	28.00	28.00	45	28,183.40	1,712.05	1	28.00	28.00	45	
	2지구	45,714.60	10,640.96	2	1,311.00	1,599.00	138	45,714.60	11,671.56	2	1,406.62	1,694.62	123	중 1,030.60㎡	
	3지구	1,480.00	-	-	-	-	-	1,480.00	-	-	-	-	-	-	
	4지구	1,464.00	-	-	-	-	-	1,464.00	-	-	-	-	-	-	
시설지구외		-	-	-	-	-	-	-	-	-	-	-	-	-	
시설율 (법정40%)		12,353.01 / 76,842.00 x 100 = 16.08%						13,383.61 / 76,842.00 x 100 = 17.42%							
건폐율 (법정15%)		1,339.00 / 76,842.00 x 100 = 1.74%						1,434.62 / 76,842.00 x 100 = 1.87%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 분		기 정(수락산 근린공원)					변 경(수락산 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본	계	12,353.01	3	1,344.30	1,632.30	183	13,383.61	3	1,439.92	1,727.92	168	증 1,030.60㎡	
	기 간 사 설	소계	6,808.35	-	-	-	5,823.62	-	-	-	6	감 984.73㎡	
		도로	2,941.28	-	-	-	-	3,054.62	-	-	-	-	증 113.34㎡
		광장	3,867.07	-	-	-	-	2,769.00	-	-	-	6	감 1,098.07㎡
조경시설		550.90	-	-	-	6	1,432.00	-	-	-	-	증 881.10㎡	
휴양시설		70.90	-	-	-	78	1,740.90	-	-	-	77	증 1,670.00㎡	
유희시설		838.00	-	-	-	6	780.00	-	-	-	7	감 58.00㎡	
운동시설		3,649.06	1	1,262.00	1,550.00	6	2,650.00	1	1,262.00	1,550.00	3	감 999.06㎡	
교양시설		346.00	-	-	-	-	346.00	-	-	-	-		
편익시설		-	-	-	-	-	408.00	-	-	-	1	증 408.00㎡	
관리시설		160.70	2	77.00	77.00	87	203.09	2	172.62	172.62	74	증 42.39㎡	
누지및기타		-	-	-	-	-	-	-	-	-	-		

다.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1-1.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5,714.60	10,640.96	2	1,311.00	1,599.00	138	45,714.60	11,671.56	2	1,406.62	1,694.62	123	증 1,030.60㎡	
	기 반 시 설	5,325.90	5,325.90	-	-	-	4,341.17	4,341.17	-	-	-	6	감 984.73㎡	
		도로	1,606.83	1,606.83	-	-	-	1,720.17	1,720.17	-	-	-	-	증 113.34㎡
		광장	3,719.07	3,719.07	-	-	-	2,621.00	2,621.00	-	-	-	6	감 1,098.07㎡
조경시설	480.00	480.00	-	-	-	6	1,432.00	1,432.00	-	-	-	-	증 952.00㎡	
휴양시설	-	-	-	-	-	53	1,670.00	1,670.00	-	-	-	46	증 1,670.00㎡	
유희시설	726.00	726.00	-	-	-	4	668.00	668.00	-	-	-	9	감 58.00㎡	
운동시설	3,649.06	3,649.06	1	1,262.00	1,550.00	6	2,650.00	2,650.00	1	1,262.00	1,550.00	3	감 999.06㎡	
교양시설	346.00	346.00	-	-	-	-	346.00	346.00	-	-	-	2	-	
편익시설							408.00	408.00	-	-	-	1	증 408.00㎡	
관리시설	114.00	114.00	1	49.00	49.00	69	156.39	156.39	1	144.62	144.62	56	증 42.39㎡	
복지 및 기타	34,780.92	-	-	-	-	-	34,043.04	-	-	-	-	-	감 737.88㎡	
시설율 (법정40%)	10,640.96 / 45,714.60 x 100 = 23.28%						11,671.56 / 45,714.60 x 100 = 25.53%							
건폐율 (법정15%)	1,311.00 / 45,714.60 x 100 = 2.87%						1,406.62 / 45,714.60 x 100 = 3.08%							

1-2.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2지구)							변경(2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45,714.60	10,640.96	-	2	1,311.00	1,599.00	138			45,714.60	11,671.56	-	2	1,406.62	1,694.62	123	
	소계			5,582.83	5,325.90	-	-	-	-	-			4,341.17	4,341.17	-	-	-	-	6	
	도로			1,606.83	1,606.83	-	-	-	-	-			1,720.17	1,720.17	-	-	-	-	-	
	광장	가		3,719.07	3,719.07	-	-	-	-	-	가		2,621.00	2,621.00	-	-	-	-	6	
		가-1	상계동 산151-1	(2,581.00)	(2,581.00)	-	-	-	-	-	가-1	상계동 113-2 공	(1,597.00)	(1,597.00)	-	-	-	-	-	감 984.00㎡
		가-2	상계동 산151-1	(252.00)	(252.00)	-	-	-	-	-	가-2	상계동 113-2 공	(460.00)	(460.00)	-	-	-	-	-	증 208.00㎡
		가-3	상계동 산151-1	(206.00)	(206.00)	-	-	-	-	-	가-3	상계동 113-2 공	(96.00)	(96.00)	-	-	-	-	-	감 110.00㎡
		가-4	상계동 산151-1	(26.07)	(26.07)	-	-	-	-	-										폐지
		가-5	상계동 산151-1	(14.00)	(14.00)	-	-	-	-	-	가-4	상계동 113-2 공	(25.00)	(25.00)	-	-	-	-	-	증 11.00㎡
		가-6	상계동 산151-1	(302.00)	(302.00)	-	-	-	-	-	가-5	상계동 113-2 공	(62.00)	(62.00)	-	-	-	-	-	감 240.00㎡
		가-7	상계동 산151-1	(338.00)	(338.00)	-	-	-	-	-	가-6	상계동 113-2 공	(381.00)	(381.00)	-	-	-	-	6	증 43.00㎡

구분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시 설 명	소 계		480.00	480.00	-	-	-	-	6			1,432.00	1,432.00	-	-	-	-		
	소록포	나	산151-1 공용	66.00	66.00	-	-	-	-	나	상계동 113-2 공	72.00	72.00	-	-	-	-	현황변영 (중 6.00㎡)	
	연못	다	산151-1 공용 113전	223.00	223.00	-	-	-	-									폐지	
	진디 마당									다		555.00	555.00	-	-	-	-		
										다-1	상계동 113 전	(125.00)	(125.00)	-	-	-	-	-	신설
									다-2	상계동 113-2 공	(125.00)	(125.00)	-	-	-	-	-	신설	
									다-3	상계동 113-2 공	(165.00)	(165.00)	-	-	-	-	-	신설	
화단									다-4	상계동 113-2 공	(140.00)	(140.00)	-	-	-	-	-	신설	
									카		805.00	805.00	-	-	-	-	-		
									카-1	상계동 113-2 공	(37.00)	(37.00)	-	-	-	-	-	신설	
									카-2	상계동 113-2 공	(72.00)	(72.00)	-	-	-	-	-	신설	
									카-3	상계동 113-2 공	(114.00)	(114.00)	-	-	-	-	-	신설	

조경시설

구분	시 설 명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다 단								바닥면적 (㎡)	연면적 (㎡)		카-4	상계동 113-2 공	(26.00)	(26.00)	-	-	-	-	-	신설	
											카-5	상계동 113-2 공	(54.00)	(54.00)	-	-	-	-	-	신설	
											카-6	상계동 113 전	(21.00)	(21.00)	-	-	-	-	-	신설	
											카-7	상계동 113-2 공	(56.00)	(56.00)	-	-	-	-	-	신설	
											카-8	상계동 113-2 공	(148.00)	(148.00)	-	-	-	-	-	신설	
											카-9	상계동 113-2 공	(277.00)	(277.00)	-	-	-	-	-	신설	
																					폐지
																					폐지
후양 시설	소 계									53		1,670.00	1,670.00	-	-	-	-	52			
	후계소										라		1,609.00	1,609.00	-	-	-	-	12		
											라-1	상계동 113-2 공	(36.00)	(36.00)	-	-	-	-	2	신설	

구분	시 설 명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라-2	상계동 113-2 공	(54.00)	(54.00)	-	-	-	-	3	신설
											라-3	상계동 113-2 공	(56.00)	(56.00)	-	-	-	-	3	신설
											라-4	상계동 113-2 공	(78.00)	(78.00)	-	-	-	-	-	신설
											라-5	상계동 113-2 공	(1,145.00)	(1,145.00)	-	-	-	-	4	신설
											라-6	상계동 113-2 공	(147.00)	(147.00)	-	-	-	-	-	신설
											라-7	상계동 113-2 공	(93.00)	(93.00)	-	-	-	-	-	신설
		등의자	산151-1 공용	-	-	-	-	-	-	-	30	④	전지역	-	-	-	-	-	-	24
파고라	산151-1 공용	-	-	-	-	-	-	-	1	⑤	가-6. 광장	-	-	-	-	-	-	1		
사각 의자	산151-1 공용	-	-	-	-	-	-	-	4										폐지	
양음벽	산151-1 공용	-	-	-	-	-	-	-	1	①	전지역	61.00	61.00	-	-	-	-	6	증 61.00㎡	
장의자										②	라-7. 휴게소	-	-	-	-	-	-	2	신설	

구분	시설명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다 만	정자										③	라-6. 휴게소	-	-	-	-	-	-	1	현황반영 (증 1개)
	타프										⑥	자. 아와무대	-	-	-	-	-	-	2	현황반영(1개), 신설 (1개)
	그늘막										⑩	아. 어린이 놀이터	-	-	-	-	-	-	4	현황반영 (증 4개)
	소 계			726.00	726.00	-	-	-	-	4			668.00	668.00	-	-	-	-	9	
유 회 시 설	어린이놀이 터	라		726.00	726.00	-	-	-	-	-	아	상계동 113 전	668.00	668.00	-	-	-	-	9	현황반영
		라-1	산151-1 공	(116.00)	(116.00)	-	-	-	-	-										폐지
		라-2	산151-1 공 113전	(220.00)	(220.00)	-	-	-	-	-										
		라-3	산151-1 공 113전	(390.00)	(390.00)	-	-	-	-	-										
	스페이스네 트	⑤	산151-1 공	-	-	-	-	-	-	1										폐지

구분	시설명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다 만	미끄럼틀	⑥	산151-1 공 113전	-	-	-	-	-	-	-	1									폐지
	통나무놀이 대	⑦	산151-1 공 113전	-	-	-	-	-	-	-	1									폐지
	기어 오르기	⑧	산151-1 공 113전	-	-	-	-	-	-	-	1									폐지
	물놀이시설											㉔	아. 어린이 놀이터	-	-	-	-	-	-	5 현황변영 (증 5개)
	소 계			3,649.06	3,649.06	-	1	1,262.00	1,550.00	6			2,650.00	2,650.00	-	1	1,262.00	1,550.00	3	
안민동시정	베드 민턴장	마	산151-1 공	600.00	600.00	-	-	-	-	-	-	마	상계동 113-2 공	576.00	576.00	-	-	-	-	현황변영 (감 24.00㎡) (3면)
	인공 안벽장	바	산151-1 공	925.00	925.00	-	-	-	-	-	-	바	상계동 113-2 공	357.00	357.00	-	-	-	-	감 568.00㎡
	농구장	사	산151-1 공	737.00	737.00	-	-	-	-	-	-	사		455.00	455.00	-	-	-	-	감 282.00㎡
												사-1	상계동 113-2 공	(312.00)	(312.00)	-	-	-	-	-
											사-2	상계동 113-2 공	(143.00)	(143.00)	-	-	-	-	-	-

구분	시설명	기정(2지구)								변경(2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체력 단련장		아		125.06	125.06	-	-	-	-	-											
		아-3	산151-1 공	(61.00)	(61.00)	-	-	-	-	-											폐지
		아-4	산151-1 공	(55.00)	(55.00)	-	-	-	-	-											폐지
		아-5	산151-1 공	(5.38)	(5.38)	-	-	-	-	-											폐지
		아-6	산151-1 공	(3.68)	(3.68)	-	-	-	-	-											폐지
												① 사. 농구장	-			-					
실내 배드민턴장		2	산151-1 공	1,262.00	1,262.00	철골조	지상 2층	1,262.00	1,550.00	-	2	상계동 113-2 공	1,262.00	1,262.00	철골 조	지상 2층	1,262.00	1,550.00	-		
		소계		346.00	346.00	-	-	-	-	-			346.00	346.00	-	-	-	-	2		
과양시설	아외 무대	자	산151-1 공	346.00	346.00	-	-	-	-	-	자	상계동 113-2 공	346.00	346.00	-	-	-	-	-		
		소계											408.00	408.00	-	-	-	-	1		
합계																					
폐기시																					

구분	시설명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서울	주차장											차	상계동 산 152-33 입	408.00	408.00	-	-	-	-	-	현황반영 (주차면 23대)
	주물 시계탑											㉔	다-1 전디마당	-	-	-	-	-	-	1	신설
	소 계			114.00	114.00	-	1	49.00	49.00	69			156.39	156.39	-	1	144.62	144.62	56		
	관리 사무소	1	산151-1 공공	114.00	114.00	-	1	49.00	49.00	-	1	상계동 113-2 공공	156.39	156.39	-	1	144.62	144.62	-	증 42.39㎡ (관리실:43.20㎡ 화장실:60.57㎡ 창고:40.85㎡)	
관 리 시 설	조명 열주	㉔	산151-1 공공	-	-	-	-	-	-	24			-	-	-	-	-	-	-	현황반영 (감 24개)	
	공원등	㉔	산151-1 공공	-	-	-	-	-	-	44	㉔	전지역	-	-	-	-	-	-	-	46	현황반영 (중 2개)
	종합 안내도	㉔	산151-1 공공	-	-	-	-	-	-	1	㉔	상계동 113-2 공공	-	-	-	-	-	-	-	1	
	올타리										㉔	전지역	-	-	-	-	-	-	-	3	신설
	CCTV										㉔	전지역	-	-	-	-	-	-	-	6	현황반영 (중 6개)

구분	기 정(2지구)									변 경(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다 른	소 계		34,780.92	-	-	-	-	-	-			34,043.04	-	-	-	-	-	-	
	누 지	전지역	34,780.92	-	-	-	-	-	-		전지역	34,043.04	-	-	-	-	-	-	감 737.88㎡
부 지 및 기 타																			

1-3.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단조	합계				731.19	1,606.83				
변경					768.88	1,720.17				
단조	계				56.30	(292.72)		도시계획도로		
단조	3류	3-1		5.0-6.0	56.30	(292.72)		도시계획도로		
단조	계				674.89	1,606.83				
변경					712.58	1,720.17				
단조	산책로		1	1.8	4.00	7.00	연결로	산책로 18	어린이놀이터 라-1	
변경			1	2.0	7.00	15.00	연결로	산책로 13	휴게소 라-6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평균			9	2.5	29.60	74.00	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라-5	
당초			12	2.5	99.00	236.00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6	
평균			10	2.0	191.50	422.00	산책로	산책로 8	광장 가-1	
배지			13	3.0	12.00	36.00	연결로	산책로 12	조형파고라 ②	
당초			14	3.0	6.00	18.00	연결로	산책로 18	광장 가-1	
평균			11	3.0	10.60	32.00	연결로	산책로 13	광장 가-1	
배지			15	1.3	2.00	3.00	연결로	관리사무소 1	산책로 7	
배지			16	2.5	41.00	103.00	연결로	광장 가-6	광장 가-5	
배지			17	2.5	9.00	21.00	연결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당초			18	3.2	116.00	370.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9	
평균			13	3.2	116.00	370.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4	
당초			19	1.7	79.55	135.1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8	
평균			14	1.7	94.75	185.5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신설			12	1.7	18.00	35.00	연결로	산책로 13	산책로 10	
신설			15	1.6	39.10	60.00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	산책로 1	

조성계획도(변경후)

수락산 근린공원 2지구(당고개지구)

[illegible]

구분	구분	주목	주목비율 (%)	시정비율 (%)	구분	구분비율 (%)	구분비율 (%)	구분비율 (%)	
공공 시설	문화·여가	다	1,925.00	560.00	-	주거·주거	다	1,925.00	560.00
		다-1	925.00	125.00	-		다-1	925.00	125.00
		다-2	1,25.00	125.00	-		다-2	1,25.00	125.00
		다-3	1,925.00	1,925.00	-		다-3	1,925.00	1,925.00
		다-4	1,925.00	1,925.00	-		다-4	1,925.00	1,925.00
	체육	가	800.00	800.00	-	주거·주거	가	800.00	800.00
		가-1	137.00	137.00	-		가-1	137.00	137.00
		가-2	172.00	172.00	-		가-2	172.00	172.00
		가-3	111.00	111.00	-		가-3	111.00	111.00
		가-4	180.00	180.00	-		가-4	180.00	180.00
문화·여가	가-5	164.00	164.00	-	주거·주거	가-5	164.00	164.00	
	가-6	21.00	21.00	-		가-6	21.00	21.00	
	가-7	156.00	156.00	-		가-7	156.00	156.00	
	가-8	148.00	148.00	-		가-8	148.00	148.00	
	가-9	277.00	277.00	-		가-9	277.00	277.00	
	문화·여가	가-10	1,670.00	1,670.00	-	주거·주거	가-10	1,670.00	1,670.00
		가-11	138.00	138.00	-		가-11	138.00	138.00
		가-12	154.00	154.00	-		가-12	154.00	154.00
		가-13	156.00	156.00	-		가-13	156.00	156.00
		가-14	178.00	178.00	-		가-14	178.00	178.00
문화·여가		가-15	145.00	145.00	-	주거·주거	가-15	145.00	145.00
		가-16	147.00	147.00	-		가-16	147.00	147.00
		가-17	131.00	131.00	-		가-17	131.00	131.00
		가-18	-	-	-		가-18	-	-
		가-19	81.00	81.00	-		가-19	81.00	81.00
	문화·여가	가-20	-	-	-	주거·주거	가-20	-	-
		가-21	-	-	-		가-21	-	-
		가-22	-	-	-		가-22	-	-
		가-23	-	-	-		가-23	-	-
		가-24	-	-	-		가-24	-	-
문화·여가		가-25	660.00	660.00	-	주거·주거	가-25	660.00	660.00
		가-26	660.00	660.00	-		가-26	660.00	660.00
		가-27	2,650.00	2,650.00	-		가-27	2,650.00	2,650.00
		가-28	570.00	570.00	-		가-28	570.00	570.00
		가-29	357.00	357.00	-		가-29	357.00	357.00
	문화·여가	가-30	455.00	455.00	-	주거·주거	가-30	455.00	455.00
		가-31	312.00	312.00	-		가-31	312.00	312.00
		가-32	143.00	143.00	-		가-32	143.00	143.00
		가-33	-	-	-		가-33	-	-
		가-34	1,262.00	1,262.00	-		가-34	1,262.00	1,262.00
문화·여가		가-35	340.00	340.00	-	주거·주거	가-35	340.00	340.00
		가-36	240.00	240.00	-		가-36	240.00	240.00
		가-37	240.00	240.00	-		가-37	240.00	240.00
		가-38	450.00	450.00	-		가-38	450.00	450.00
		가-39	156.30	156.30	-		가-39	156.30	156.30
	문화·여가	가-40	156.30	156.30	-	주거·주거	가-40	156.30	156.30
		가-41	144.82	144.82	-		가-41	144.82	144.82
		가-42	144.82	144.82	-		가-42	144.82	144.82
		가-43	144.82	144.82	-		가-43	144.82	144.82
		가-44	144.82	144.82	-		가-44	144.82	144.82
문화·여가		가-45	144.82	144.82	-	주거·주거	가-45	144.82	144.82
		가-46	144.82	144.82	-		가-46	144.82	144.82
		가-47	144.82	144.82	-		가-47	144.82	144.82
		가-48	144.82	144.82	-		가-48	144.82	144.82
		가-49	144.82	144.82	-		가-49	144.82	144.82



2021 - 1608

(
) () ()

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630)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2,985	-	82,985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

※ 정승배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상도동 182-13 일대는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토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구역 경계 조정 -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2,985.0	-	82,985.0	100.0	
일반주거지역	34,341.2	감) 4,139	30,202.2	3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	1.0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86.0	-	23,686.0	28.6	도로 및 광장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54.2	감) 4,139	6,515.2	7.8	
준주거지역	36,329.8	증) 4,139	40,468.8	48.8	
근린상업지역	12,314.0	-	12,314.0	14.8	

※ 기정 면적은 2021년 고시 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274.8㎡ 토지교환)에 따른 근린공원 편입은 토지교환 시 용도지역도 교환함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4,139	50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외 변경없음

1) 도로 : 금회 신설도로 외 기정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류	-	6	국지 도로	26	상도동 363 -193	상도동 363 -292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	•도로 신설 (폭 6m, 연장 26m)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잔여부지의 차량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등용로에서 잔여부 지로의 국지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계획 : 가구 a번 외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	7,984.0	●상도동 363-190	185.0	-	
			●상도동 363-116, 363-180	305.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73	240.0	-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23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	86.0	-	
			●상도동 363-143	235.0	-	
			●상도동 363-94	222.0	-	
			●상도동 363-5	387.0	-	
			●상도동 363-10	328.0	-	
			●상도동 363-268	120.0	-	상도동 363-224와 합병
			●상도동 363-135	310.0	-	상도동 363-265와 합병
			●상도동 363-117, 363-235	479.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2, 363-152, 363-231	202.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	152.0	-	
			●상도동 363-125	152.0	-	
			●상도동 364-1	299.0	-	
			●상도동 363-168, 363-169	34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43	676.0	-	
			●상도동 363-164	1,876.0	-	상도동 363-204와 합필
			●상도동 363-142, 363-205, 363-303	1,153.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a	3,447.0	●상도동 363-190	185.0	-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23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164	1,876.0	-	상도동 363-204와 합필
			●상도동 363-142, 363-205, 363-303	1,153.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2) 필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a번 가구면적 4,537㎡ 감소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신설 반영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9,132.8	-	9,132.8	
신설	②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	증) 5,245	5,245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②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5,245㎡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20.5월)

3)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 변경없음

4)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 변경없음

5)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6)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신설)

가) 구역개요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5,245	

나)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하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주1)},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등용로에서 잔여부지로의 폭 6m 연결도로 조성	
용도주2)	지정용도주3) (①)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허용용도 (나)		•제2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외의 건축물	
	불허용도 (b)	전층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1층	•제2호 공동주택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준주거지역 360% 이하	
	상한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등용로변 3m, 그 외 도로변 1~1.5m -그 외 도로변 중 상도로15길은 반대편 경계에서 10m 이격하여 확보	결정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보도와 전면공지 일체적 조정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 우선적 준용	

주1) 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하는 것으로 전제

주2)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에 해당

주3) 지정용도는 지상1층 및 지하1층 바닥면적 합계의 50% 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 및 공공기여시설 면적 제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건축물 입면	• 통일적 요소와 특징적 요소로 구분하여 디자인 - 건축물 외벽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소재 추구 -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로부터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계획 - 저층부(2층 이하), 중층부(저층부와 상층부를 제외한 구간), 상층부(최상층 2개 이내)로 분절하여 디자인 - 저층부 입면은 수직분절요소, 개방형 벽면 등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 유도	
	건축물 저층부 (2층 이하)	•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2층 이하)는 다채로운 파사드 조성을 위하여 원도우존, 차양존, 사인존으로 분할되는 수평분할요소 적용 - 원도우존 : 출입문 및 투시형 벽면(벽면적 50% 이상) 설치 - 차양존 : 어닝 등 차양시설 설치 - 사인존 : 옥외광고물 설치	
	차양막	• 설치시 저층부에 한해 설치. 동일층에서는 같은 형태 및 높이, 동일 건축물 내 같은 색채로 하고 너비는 단위 창문폭 미만으로 설치	
옥외광고물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및 소재 사용 •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폭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제한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등용로 및 상도로 15길변 일부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 참조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하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기여	비율	•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주1)}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이상, 준주거지역 10% 이상	
	시설 종류	• 공공임대주택/상가/오피스, 지역필요시설(생활서비스시설, 문화시설 등) - 공공임대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비주거 용도 비율		• 용적률 10% 이상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주2)}	•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존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 설치) - 100호 미만: 100㎡ 이상 - 100호~299호: 150㎡ 이상 - 300호~363호: 200㎡ 이상 - 364호 이상: (전체 건립 호수-299호)×2.5×1.25	

주1) 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된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

주2)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서 규정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② (노량진 근린공원)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32,001.0	-	32,001.0	서울시고시 2006-430호 (2006.12.14)	-
변경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구역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구역 경계 조정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001.0	-	32,001.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3,338.0	-	13,338.0	41.68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	3.0	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88.0	-	18,588.0	58.09	
준주거지역	72.0	-	72.0	0.22	

※ 기정 면적은 2016년 고시 면적(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52호)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274.8㎡ 토지교환)에 따른 사유지 편입은 토지교환시 용도지역도 교환함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원 외 변경없음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94-190번지 일대	413,203 (12,355.0)	-	413,203 (12,355.0)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 ()은 구역내 면적 표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량진 근린공원	•공원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공원 경계 조정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021 - 16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현충근린공원	상도동 산49-3	임야	397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1. 9. 15.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1. 9. 15. ~ 2024. 9. 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820-1164)

2021 - 1935

() 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21-96호(2021.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6-2호 등 2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6-2호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류: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 2) 명칭: 암사역사공원 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라. 시설관리청(변경없음):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바. 규 모

- 당초: 토지보상(1,322㎡), 비닐하우스 8동 1,322㎡
- 변경: 토지보상(1,322㎡), 비닐하우스 등 9동 1,677㎡

사.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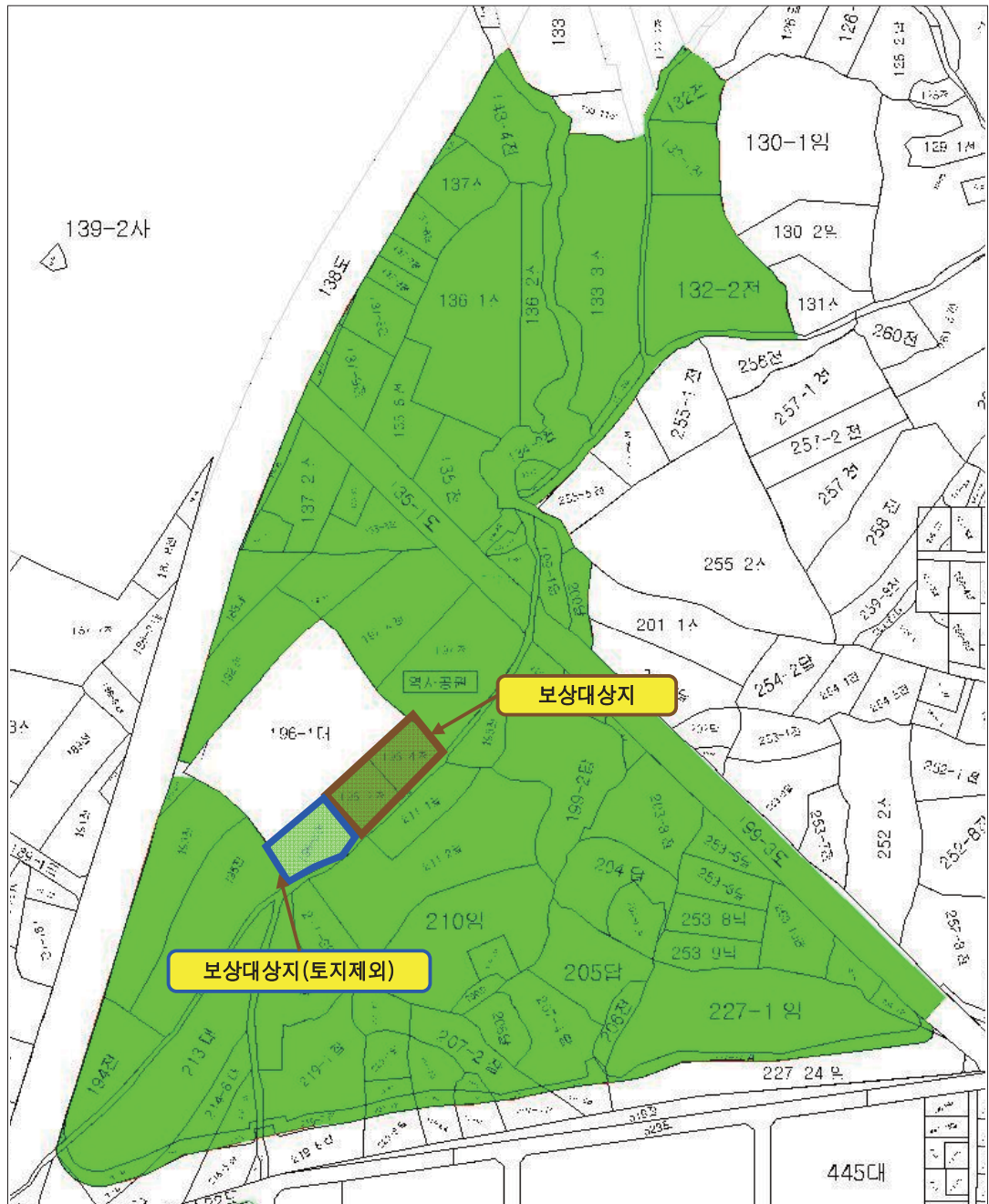
()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유관리명세	
계	2필지			1,322							
1	196-2	전	661	661	정*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동,*****아파트)					
2	196-4	전	661	661	진*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동 ***호(**동,*****아파트)		강동**합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동)	근저당권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이용현황	소유자		지분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외권리명세
계	2필지	3필지				1,322㎡	1,677㎡								
1	196-2	196-2	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661㎡, 4동	1,187㎡ 4동	농업용	조*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가길 *~*(**동)					소유 자 변경
2		196-3						농업용	조*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가길 *~*(**동)					소유 자 변경
3	196-4	196-4	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 농막	비닐, 보온덮개 비닐, 보온덮개	661㎡, 4동	443㎡ 4동 47㎡ 1동	농업용	진*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동 ***호(**동, *****)0(파트)		강동**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동)	근저당권	





2021 - 231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철교)	선박 2척	정밀안전진단	2021.09.23.~ 2021.10.29.	2021. 9.17.

2021 - 232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진단	2021.9.27.~ 2021.9.28.	2021. 9.17.

2021 - 233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성공동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 내 한강 (아차산대교 하부)	선박 2척	정밀안전진단	2021.9.27.~ 2021.10.4.	2021. 9.17.

2021 -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두절 및 해당 대상물의 경매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 사실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영등포소방서장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자 및 위반사항

상 호 (소재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및 교육 이수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예담채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41-10)	양종필 (2014.08.26.) (2018.02.20.)	소방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 업무정지 (21.09.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2. 담당자

소속	성명	번호	FAX	MAIL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정숙진	02-6981-7092	02-6981-7076	sookjin@seoul.go.kr

2. 업무정지 등의 고지

- 가.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업무정지(자격정지)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은 타 시·도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에 통보됩니다.
- 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정지된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야 하며, 업무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및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끝.

2021 - 227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9.23. ~ 2021. 10.6.(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10.7. ~ 2021. 10.20.(14일)
6. 수령방법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부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799	백*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나길 ***	(하영신리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03	NGUVEN*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진구 아차산로**길 **	B***호 (화양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05	오*우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관진구 아차산로**길 *	(지양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06	김*규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길 **	***호 (경동, 현대아파트빌라)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10	구*의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층 (장안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12	김*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재계기로 ***	()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13	이*희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김일로***	***호 ****호 (김일동, 강일스윗스타단지)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14	김*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학동*길 **	***호 (동서학동, 진흥하이츠)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22	최*자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동 ***호 (면빛동, 한신아파트)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23	김*훈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길 *	***호 (성수동가, 성수동·차우방아파트)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24	박*우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가길 *	B***호 (미이동, 동일빌라)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28	이*우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길 **	(반화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33	신*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남레노*길 **	B동***호 (성곡동, 구신해피밸리)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34	이*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	(서교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윤관위반과태료	2021-08	001839	이*구	바위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가길 ***	***호 (사당동, 운평아파트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40	윤*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길 **	***호 (양재동, 현대아파트빌라)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42	도*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	(삼선동*가)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45	변*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길 **	(효창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47	함*형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호 (구의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50	신*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길 ***-	(답십리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53	신*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정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	***동 ***호 (삼일아파트)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54	우*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문성로***번길 ***-,	***동 ***호 (인동, 다이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56	김*준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호 (사당동, 한배리조빌*차)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58	박*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모계미길**번길 ***-	***동 ***호 (목현동, 굿모닝하우스)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63	문*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연남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66	이*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회양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67	황*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능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70	박*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장곡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71	김*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길 **	B**호 (중곡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72	이*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매문구 이문로*길 *	(휘경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8	001874	이*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척안불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곡비석로**길 *	*층 (상계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부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883	이*휘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	(대방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886	김*영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길 *	*층 제*호 (일도일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887	IBNESYEEDM D*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호 (몽전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889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부로 ***	***동 ***호 (선부동, 함양아파트)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898	강*철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불명	경기도 구리시 아저울길 **	(아저울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01	유*수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내동 ***호 (수유동, 우미빌라)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03	신*수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한남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10	최*원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중길 **	***호 (연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11	김*진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호 (불광동, 두진아파트)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12	강*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번길 ***	***동 ****호 (은행동, 대우아파트)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14	박*경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망우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15	정*국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회화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25	박*수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길 ***	***호 (신정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26	여*혁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지암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29	이*석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호 (범배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유관원위반과태료	2021-08	001930	배*일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진구 지암로*길 ***	(구의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부조소	납세지상세 주소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31	나*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호 ****호 (올인동, 청계역시아파트)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32	김*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척안불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번길 ***-**	***호 (영화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33	정*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서구 탑서로*인길 **	(내당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35	이*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진구 능동로**길 **	(화인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36	김*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기정로**길 **	***호 (강인동, 경남하이빌아파트)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42	김*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길 **	B**호 (서직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45	정*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삼성대로***번길 *	(금관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47	김*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진구 용마산로**디길 **	***호 (중곡동)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48	석*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길 *-*	제기동 (강인동)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56	박*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나길 **	(노량진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61	박*웅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동로*길 **	(전동동)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62	전*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길 *	***호 (전동동, 전농포유)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63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	***호 ****호 (강위동, 레미안강웨스트하이)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64	이*틀,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화인동)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2021-08	001965	김*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번길 ***-*	***호 (송정동, 송정타운포티티)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상세 주소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9	001969	조*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	***호 (신림동, 유하우스)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9	001971	서*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층 ***호 (보관동, 중앙빌라)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9	001975	조*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나길 *	***호 (성수동*가)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9	001976	이*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북로로 **-*	(홍은동)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21-09	001978	전*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서교동)

2021 - 228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9.23. ~ 2021. 10.6.(14일)
5. 납부기간 : 2021.10.7. ~ 2021.10.20.(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연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6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훈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상전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미*(한*자)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길 **	오목교역 지하상가*층 C-**호 (목동, 대림아파트)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1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수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살당로**번길 **	*층 (서귀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훈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면목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호 (불광동, 경인애빌)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67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홍*선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로**길 **	*층 ***호 (반배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68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백*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길 **~**	(사당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호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	***동 ***호 (대현동, 럭키대원아파트)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현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	***동 ***호 (회덕동, 주원타운)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마*욱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길 ***~**	***호 (등촌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일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호 (마곡동, 우성르모아)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희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번길 **	***호 (경인동, 주안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1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임*수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기정로 *	***호 (답십리동, 창계 well estates)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TRAN*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길 ***~**	***호 (회경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3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CHEN*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길 ***~**	***호 (회기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 구분	과세 연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지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7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자, 이*나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영로*길 ***	***동 ***호 (내발산동, 미곡수명산과크단지)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4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민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동 ***호 (기양동, 대아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라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	***호 (장지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5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현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길 ***-**	***동 ***호 (구의동, 광진파크리비트)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민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길 **	***동 ***호 (병화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01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현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조로*길 **	(해당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65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혁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길 **	***동 ***호 (신내동, 우남푸르지아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0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DAVIS*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길 ***-***	*층 (이태원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05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범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동 ***호 (자곡동, 엘에이차강남아파트)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70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한국이슬 랩문센터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층 (한남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07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SADRIDDIN O*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지층 (군자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0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호	기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동 ***호 (도봉동, 래미안도봉아파트)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7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수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동 ***호 (종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3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ISMOLLOVR A*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층 (군자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원*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B**호 (대치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19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현*섭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봉은사로*길 **	***호 (삼성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연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지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0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홍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길 ***-**-**	(장위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2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A*ZIEHON G	기타	서울특별시 관진구 능동로*길 **--*	***호 (자양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83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정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성로*길 **	러동 ***호 (잠실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86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KHAKIMOV UMARKHO*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니길 **	지하*길(**호) (군자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23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화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니길 *	(중랑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0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홍*현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영신리로 ***	***동 ***호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양보라)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5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성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점로**길 **	(자양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6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함*라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화양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37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노*술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군자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7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윤*술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	(독산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7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현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서교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7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윤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척로*길 ***	(오류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3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관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호 (화양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근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번길 **--*	***호 (음봉면)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48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주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곡단로***번길 *	(다대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원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7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반*섭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	***호 (금호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연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지기본주소	납세지상세주소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8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복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양정로 **	***호 (망원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9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TURSUNOV BO*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일로**길 *--**	(군자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0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균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	(용화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1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배*진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마산로 ***	*등 ***호 (면목동, 도시개발공사면목아파트)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4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성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가길 ***--**	(묵동)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56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철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	***호 (용답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5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차*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호 (순인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묵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으로 ***--*	*등 ***호 (새운동, 대동다숲아파트)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7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고덕동)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98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손*석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B***호 (미아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606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우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덕정길 ***--**	(성수동*가)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권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580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익	기타	인천광역시 중구 참여진로***번길 ***--**	***호 (도원동, 예성빌라)

2021 - 2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9.23. ~ 2021. 10.6.(14일)
5. 납부기간 : 2021.10.7. ~ 2021.10.20.(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03	집합금지위반(3인이상)	100,000	곽*원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가길 **	***동 ***호 (등촌동 등촌*단지 주공아파트)
2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01	집합금지위반(5인이상)	100,000	김*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가길 *	***호 (사당동)
3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14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백*엽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가길 **	***호 (화곡동, 오성드림빌*차)
4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18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박*찬	기타	경기도 평택시 잠이들길 **	***동 ***호 (합정동, 참이슬아파트)
5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02	집합금지위반(5인이상)	100,000	박*준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가길 **	***호 (논현동)
6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06	미스크 미착용	50,000	양*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가길 ***	*층 (신사동)
7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11	집합금지위반(3인이상)	100,000	조*현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	***동 ***호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8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12	집합금지위반(3인이상)	100,000	김*희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양대역**가길 **	***호 (봉천동)
9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15	집합금지위반(3인이상)	100,000	모*준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호 (신월동, 대주빌라)
10	10-288166	[시일반] 감염병의예 방역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수시	2021-09	000005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김*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가길 ***	***호 (길동, 신영빌리지)



2021 - 404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장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2번지
 - 면 적: 9.8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맨홀 설치
 - 내 역: 맨홀 1개소(4.3m*2.3m)
5. 점용기간: (당초) 2011.10.28. ~ 2021.10.27.
(변경) 2021.10.28. ~ 2026.12.31.

2021 - 405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장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99번지 일원
 - 면 적: 126.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열배관 매설
 - 내 역: 이중보온관:400A*2열, 74m, 밸브맨홀:400A, 1개소,
강관케이싱:1,800A,50m
5. 점용기간: (당초) 2011.11.03. ~ 2021.11.02.
(변경) 2021.11.02. ~ 2026.12.31.

2021 - 406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9번지
 - 면 적: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인어동상 설치
 - 내 역: 인어동상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6.10.04. ~ 2021.10.03.
(변경) 2021.10.04. ~ 2026.12.31.



2021 - 2444

가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304호(2021.9.2.)로 공고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와 관련하여 위치에 대한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제 안 자 : 주식회사 서부티앤디

2. 공개내용 및 방법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 참조)
- 공개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1. 09. 23 ~ 10. 6.)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첨부된 주민의견서 양식으로 서면제출(kingkahejin@seoul.go.kr / 팩스 02-768-8943)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도 첨부

5. 주민의견 제출양식 : 별도 첨부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02-2133-4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

2021. 09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최근 물류·유통의 트렌드가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ice) 등으로 확산되면서 물류·유통 분야에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다빈도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과거의 물류단지가 1회성 대량 물류 위주의 지방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대량물류 위주인 것에 비해, ①기술의 발전, ②사회구조의 변화, ③경제구조의 변화, ④환경적·안전·보안적 이슈 증대 등 대도시권의 물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05.06)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29)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본 대상지를 20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하게 되었음(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0호, ‘16.07.14)
- 서울시 서남부권역의 경우 이미 김포터미널 물류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물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인접한 시흥산업융재유통센터는 본 대상지와 같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여건상 사업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즉, 서부터미널은 지역적인 입지여건상 서울의 물류관문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계획의 목적

- 변화하는 물류·유통 트렌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물류시설과는 차별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서남부권의 새로운 관문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류중심의 Compact City를 조성
- 또한, 물류·상류·지원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물류와 산업의 융·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물류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 및 신산업 촉진 등 서울 서남부권의 새로운 활력제공을 도모할 목적임

1.2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한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본 계획지구 면적이 116,909.1㎡(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면적 104,244.7㎡)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 고
가. 도시의 개발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일반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표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미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979. 11. 23 :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 최초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474호)
- 1992. 12. 26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2-413호)
- 2010. 05. 20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구고시 제2010-13호)
- 2015. 05. 06 : 대통령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2016. 05. 13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신청
- 2016. 07. 14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0호)
- 2021.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1. 0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주민 공고·공람(예정)
- 2021. 12. :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요청(예정)

제1장 계획의 개요

1.4 계획의 내용**가. 공간적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면적 : 116,909.1㎡(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면적 : 104,244.70㎡)

나.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연도 : 2025년

다.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라.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물류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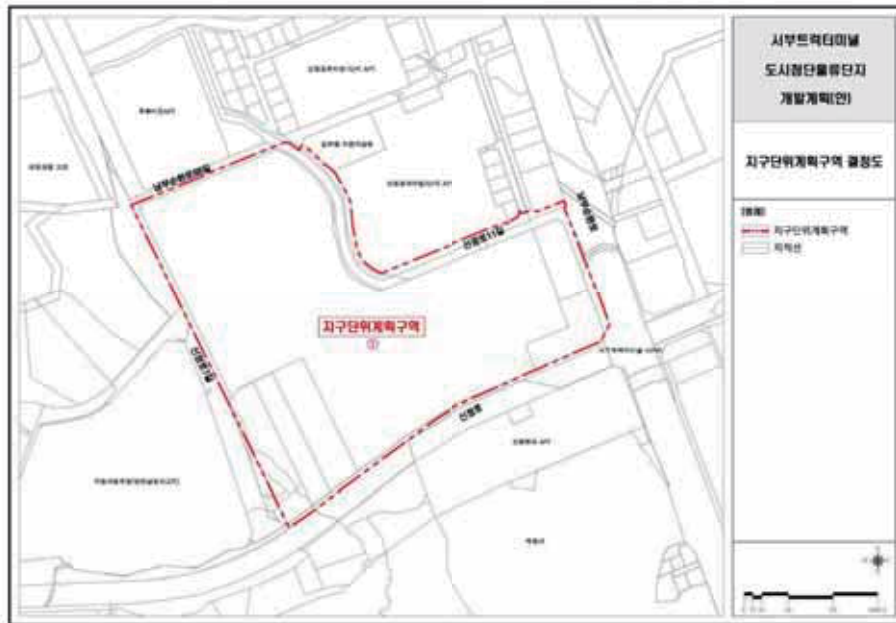
마. 계획의 내용**(1) 도시관리계획****(가) 지구단위계획**

-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서부티엔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증) 116,909.1	116,909.1	-	-

- 결정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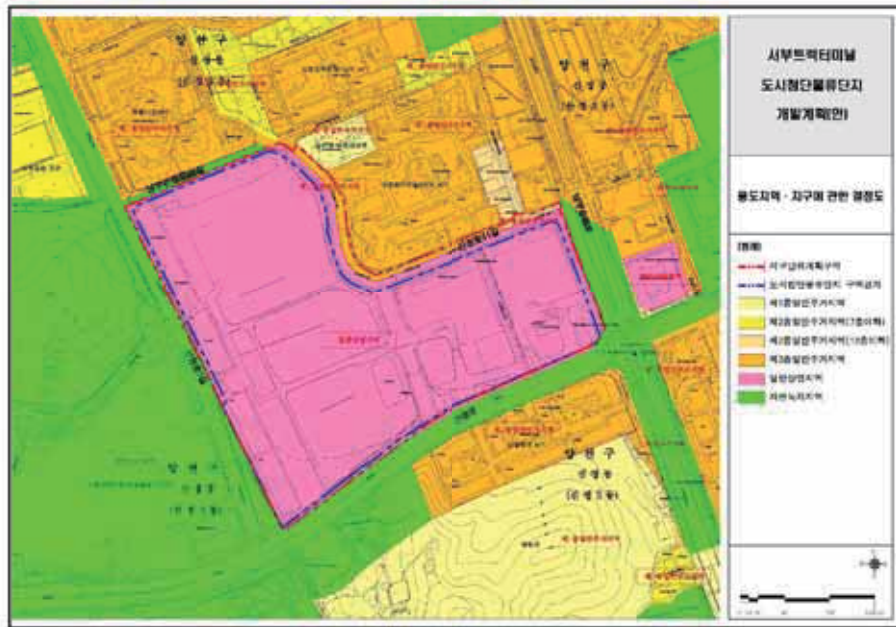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	서부티엔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116,909.1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 단지로 선정(‘16.07.14)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안)
(나) 용도지역 현황

-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은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됨

구 분		면 적(m')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4.5		494.5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2,762.0		2,762.0	2.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3,652.6	-	113,652.6	97.2	-
합 계		116,909.1	-	116,909.1	100.0	-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다) 토지이용계획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운영을 위해 1개의 복합용지와 1개의 공공시설용지로 계획 (복합용지 내 도입기능은 세분 : 물류, 상류, 지원기능)
- 물류시설로의 효율적 진출입을 위한 대상지 주변도로 확폭
- 인근지역 주민 및 물류단지 종사자의 여가휴식을 위한 광장 조성

<표 1-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복합시설용지		97,907.3	83.75	-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	1,870.0	1.60	기부채납 시설
	도로	15,568.1	13.31	
	광장	1,563.7	1.34	
	소계	19,001.8	16.25	
합계		116,909.1	100.0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1-3> 토지이용계획도

(라) 주요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

◦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5	39,181	-	-	1	350	4	38,831
광로	1	35,250	-	-	-	-	1	35,250
대로	2	3,401	-	-	-	-	2	3,401
중로	2	530	-	-	1	350	1	180

제1장 계획의 개요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9	40~50	주간선 도로	35,250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	'78.6.29	-
변경	광로	3	19	40~50	주간선 도로	35,250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88	25	주간선 도로	2,900	신정동 576-3	궁동 산1-3	일반 도로	-	'81.1.21	-
변경	대로	3	88	25~35	주간선 도로	2,900	신정동 576-3	궁동 산1-3	일반 도로	-	-	-
폐지	중로	1	405	20	국지 도로	276	신정동 산140-2	신정동 825-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0-336호 (2000.12.5)	-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225	신정동 산157-1	신정동 805-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제2003-33호 (2003.6.30)	-
변경	대로	3	A	25~40	국지 도로	501	신정동 산140-2	신정동 805-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180	신정동 857-4	신정동 805-8	일반 도로	-	'74.1.12	-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80	신정동 857-4	신정동 805-8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	8	국지 도로	161	신정동 754-8	신정동 860-1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1	20~25	국지 도로	350	신정동 754-8	신정동 857-4	일반 도로	-	-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광로 3-19호선	광로 3-19호선	· 선형 조정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선형 일부 조정
대로 3-88호선	대로 3-88호선	· 폭원 확장 - 폭원 25m → 25~35m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폭원 확장
중로 1-405호선	폐지	· 중로 1-1호선과 통합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중로 1-1호선과 통합
중로 1-1호선	대로 3-A호선	· 중로 1-405호선과 통합 · 폭원 및 연장 확장 (중로 1-1 → 대로 3-A) - 폭원 20m → 25~40m - 연장 225m → 501m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중로 1-405호선과 통합 및 연장 확장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폭원 확장
중로 3-호선	중로 3-A호선	· 도로 노선 부여 - 중로 3-A호선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노선 부여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 폭원 및 연장 확장 - 폭원 8m → 20~25m - 연장 161m → 350m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도시 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이에 따른 도로 폭원·연장 확장

◦ 자동차 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양천구 신정동	108,399.6	감) 108,399.6	-	서고 제484호 (79.11.23)	-
변경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1315번지 일대	-	증) 63,155.4	63,155.4	-	-

제1장 계획의 개요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층수 (층)	-	증) 지하7층~ 지상18층	지상7층~ 지상18층	-	-
			연면적 (m ²)	-	증) 283,281	283,281	-	대지지분 33,952m ²

-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4층~지상12층 - 연면적 : 283,281m ² - 대지지분 : 33,952m ²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물류터미널)으로 결정(입체적 결정)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 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

◦ 광장(신설)

- 광장 결정(신설) 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장	일반광장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증) 1,563.7	1,563.7	-	-

- 광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장	· 광장 신설 - 시설종류 : 일반광장 - 면적 : 1,563.7m ²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종사자·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과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부 광장(일반광장) 신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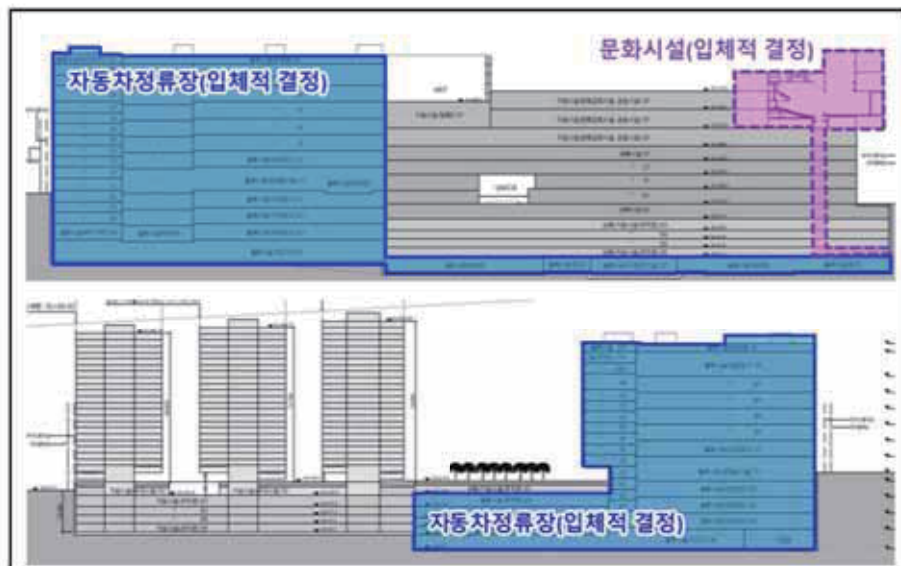
○ 문화시설(신설)

- 문화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문화 시설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층수 (층)	-	증) 지하7층, 지상5~7층	지하7층, 지상5~7층	-	-
			연면적 (㎡)	-	증) 12,000㎡	12,000㎡	-	대지지분 1,438㎡ 수평투영면적 4,9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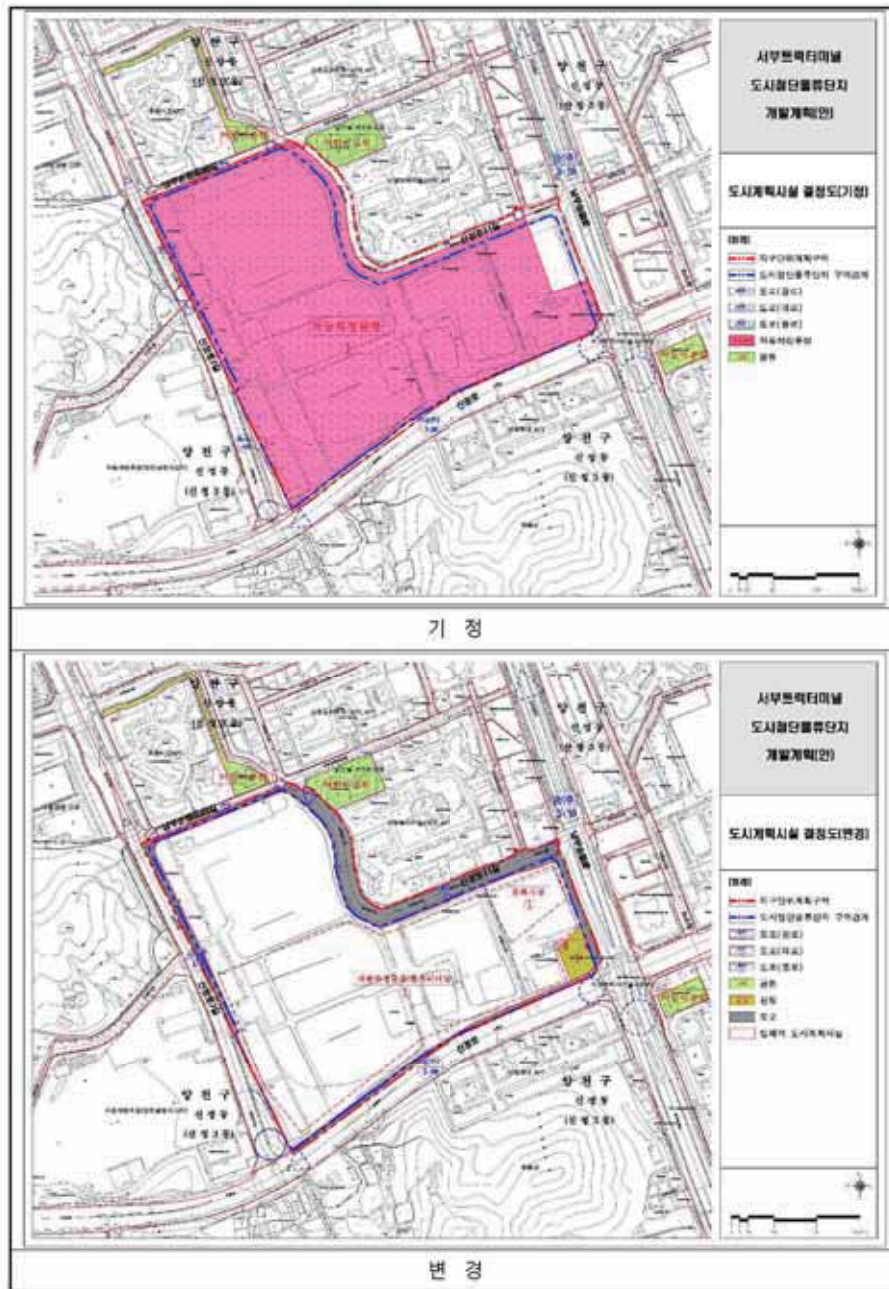
- 문화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 시설	- 문화시설 신설 - 층수 : 지하7층, 지상5~7층 - 연면적 : 12,000㎡ - 대지지분 : 1,438㎡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양천구에서 요구한 공연장 신설 - 다양한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과의 연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상류시설 상부 (남부순환로변)에 조성



<그림 1-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범위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및 변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마) 건축계획

○ 건축개요

<표 1-4> 건축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면적			116,909.1㎡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면적 104,244.7㎡)			-	
건폐율			54.68%			-	
용적률			339.15%			-	
건축면적			53,537.55㎡			-	
총 연면적			816,896.43㎡			-	
연면적	지상 연면적		389,285.37㎡			-	
	지하 연면적		427,611.06㎡			-	
높이			지하 7층, 지상 25층 (지하 39.7m, 지상 83m)			-	
구분			면적	비율(부분)	비율(전체)	-	
시설면적	물류 단지 시설	물류시설		283,280.64㎡	60.17%	34.68%	물류단지 시설 연면적의 60%이상
		상류시설		187,533.21㎡	39.83%	22.96%	-
		소계		470,813.85㎡	100.00%	57.63%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지원 시설	주거	공동주택	195,344.61㎡	58.47%	23.91%	899세대
			오피스텔	23,944.51㎡	7.17%	2.93%	200세대
			소계	219,289.12㎡	65.64%	26.84%	-
		비주거	오피스	32,072.27㎡	9.60%	3.93%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근생·수영장)	4,216.85㎡	1.26%	0.52%	
			지원(쇼핑몰)	78,504.33㎡	23.50%	9.61%	
			소계	114,793.45㎡	34.36%	14.05%	
		소계		334,082.58㎡	100.00%	40.90%	-
	공공기여시설		12,000.00㎡	100.00%	1.47%	1000석	
	합계		816.896.43㎡	100%	100%	-	
공공기여시설(공공시설) (별도획지 대지면적 1,870㎡)			15,033㎡	-	-	· 임대주택(100세대) · 창업지원센터 · 교육문화시설	

제1장 계획의 개요

◦ 도입시설별 배치계획

<표 1-5> 도입시설별 배치계획

구 분	배치계획
물류시설	· 주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격된 배치를 통해 정주환경 보호 · 공개공지 및 광장 계획을 통해 완충공간 설정 ·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대상지 서측에서의 진·출입구 계획
상류시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주거지역과의 이격을 감안하여 대상지 남측에 상류시설 배치
지원시설	· 주변 주거지역의 입지를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 대상지 전면부 및 공동주택 인근에 공공기여시설인 공공기능(공공시설, 문화 시설)을 배치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 도모

(바) 공개공지 및 조경 계획

1) 공개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대지 내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관련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였음
- 대지면적 $97,907.30\text{m}^2 \times 10\% = \text{기준 } 9,790.73\text{m}^2 < \text{계획 } 9,931.06\text{m}^2$

2) 조경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관련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였음
- 대지면적 $97,907.30\text{m}^2 \times 15\% = \text{기준 } 14,686.10\text{m}^2 < \text{계획 } 20,296.32\text{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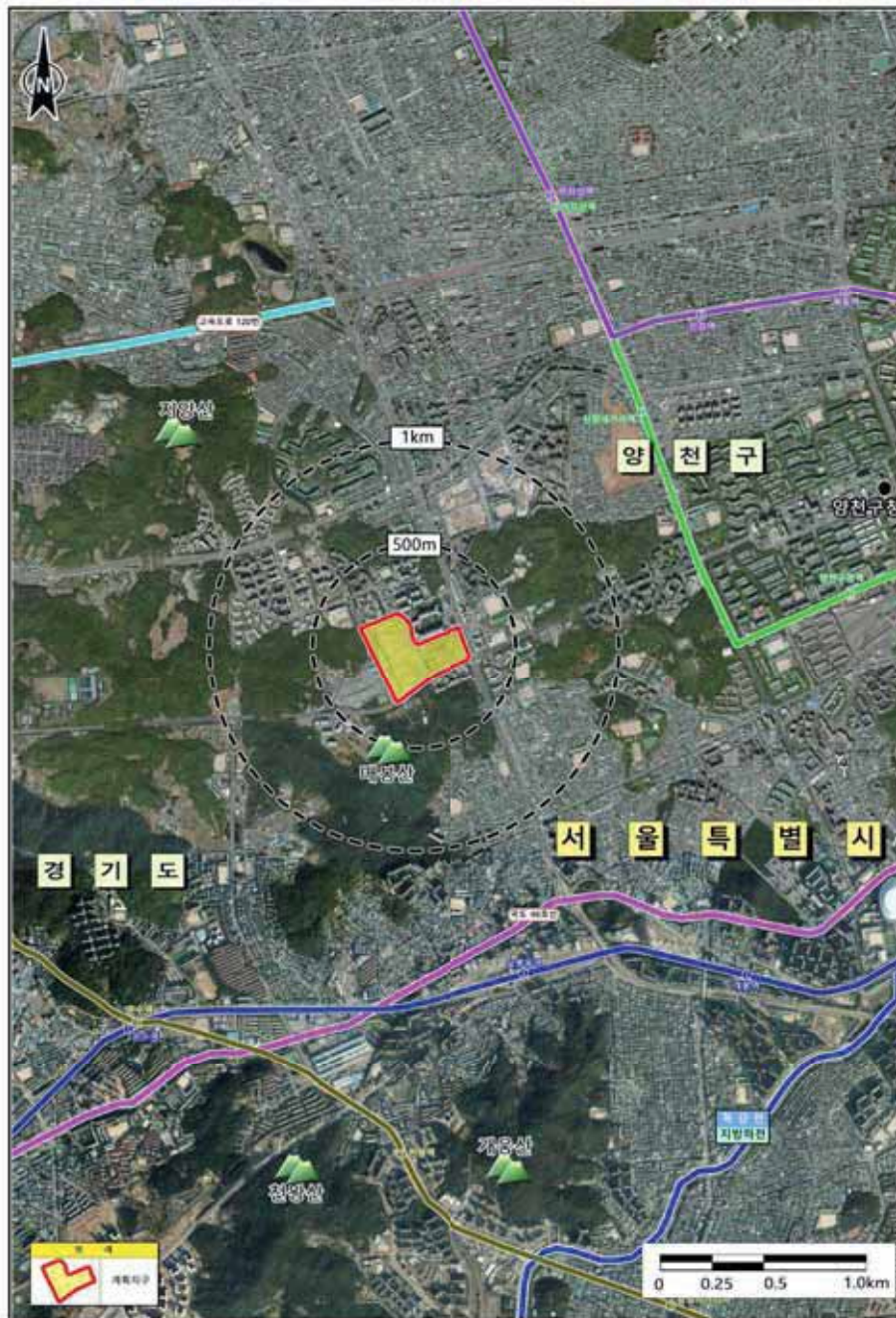


<그림 1-6> 사업지구 현황도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1-7> 중형단면도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8> 위치도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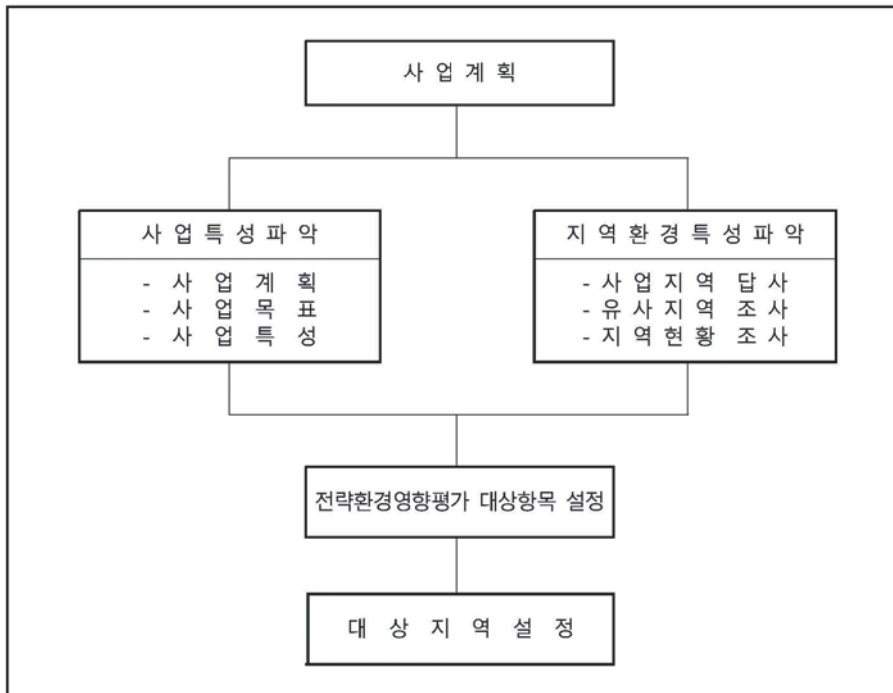
2.1.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사 업 규 모 : 116,909.1m²(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면적 : 104,244.70m²)

2.1.2 시간적 범위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5년

2.1.3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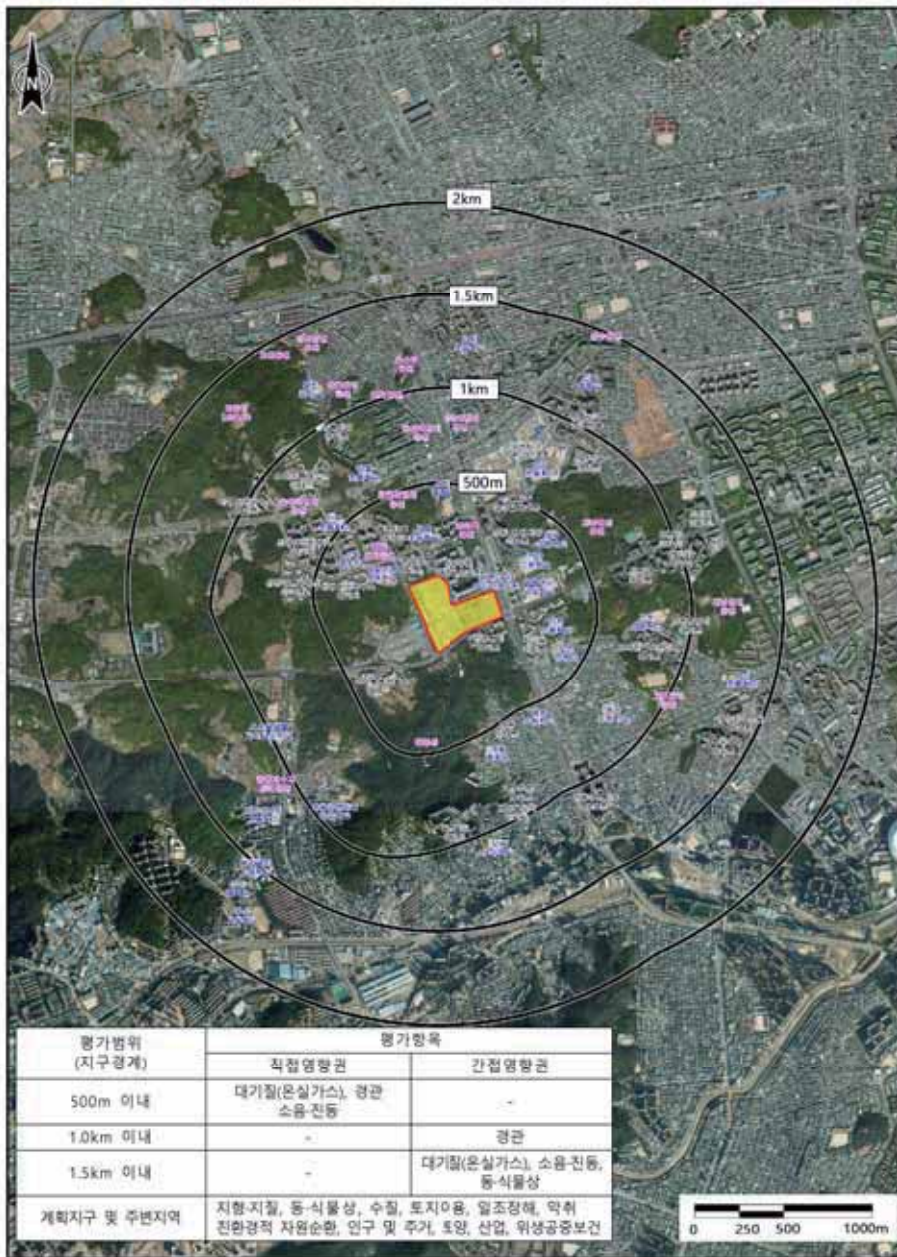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평가대상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표 2-1> 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자연 환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계획지구 주변 서남쪽 매봉산과 서쪽 신월산 방향 및 북쪽과 동쪽으로 계남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포함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 영향검토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5k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구 주변 주요 정맥 현황 검토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지역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본 사업계획에 따라 주변 경관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경계 (0.5km 이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인근수계	-	
생활 환경 의 안 정 성	환경 기준 의 부 합 성	대기질 (온실가스)	○ 계획지구 주변으로 주거시설, 학교 등이 위치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지역내 가이드라인 설정 ○ 운영시 신월IC등 물류동행량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	계획지구 경계 (0.5km 이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5km 이내)
		악취	○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 계획지구 주변으로 주거시설, 학교 등이 위치함에 따라 소음 진동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지역내 가이드라인 설정 ○ 운영시 신월IC등 물류동행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경계 (0.5km 이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5km 이내)
		토양	○ 계획지구 토양오염 파악	계획지구	-
		일조장해	○ 계획지구 내 및 주변지역 주거지에 대한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권 확보 기준 검토	일조피해 예상지역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유무 및 처리방안 기준설정	계획지구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변화예측	계획지구	-	
	인구 및 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등 사회·경제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	
	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의 영향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3.1.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년)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가) 공항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시장 자유화(Open Sky Policy) 확대
- 기존 지방공항의 경우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과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공항 및 다기능 복합도시(Air City) 개발

(나)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을 특화 육성하고, 물류기반시설 대형화 및 첨단화
-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 항만에 대한 집중투자로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물류 산업을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여 물동량 창출

(다) 포트 비즈니스 벨리(Port Biz Valley) 구축 및 물류거점 간 연계강화

- 공·항만배후단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물류클러스터 조성으로 항만산업의 확산효과를 극대화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
-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조성에 의한 물류산업의 발전과제 도출
- 주요 운송거점 및 물류시설간 연계 강화
-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간 물류공동화 추진 및 지원을 통해 물류시설의 활성화 도모
-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항만철도운송시설 등에 인접한 철도 CY(container Yard)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 확립

(라) 육상·해상·항공 국가물류 정보망 활성화 추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육·해·공 실시간 화물추적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경쟁력 제고
- 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물류 종합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항공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사의 항공화물 예약·조회, 운송장 관리 등 물류처리 기능과 함께 모든 항공물류정보를 통합제공

(마) 미래형 첨단 물류체계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GREEN Port 구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안전성 확보 및 공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체운송수단 활용 제고
- 물류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2) 수도권 발전방향
(가) 비전

-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나) 기본목표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형모델과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다) 발전방향

-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환경친화적 도시 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나.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구분	주요 내용
추진전략	·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역력 강화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가) 추진방향

- 도시권 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집단화된 도시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
- 조업주차공간, 공영차고지 등 도시권 기초물류인프라의 체계적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을 체계화 하고, 도시 내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시설확보를 지원

(나) 주요 추진과제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적기 추진 및 대상 확대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의 적기 추진 지원
 - 시범사업 대상지(6개소)의 적기 착공 지원
 - 급증하는 도시물류 수요에 맞추어 도시첨단물류단지 확충
 - 도시첨단물류단지 대상사업의 조성 범위, 지정 혜택 확대를 검토
 - 철도역,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으로 대상범위 확대
 -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 구역 완화 등 추가 혜택 검토
- 도시권 물류인프라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
 - 물류시설의 법적 개념 확대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한 도시권 물류시설 확보 기반 조성
- 도시권 기초 물류인프라 설치
 - 도시권 기초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 발굴 및 시설투자 확대
 - 도시물류 인프라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표 3-1>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역	시설명	위치	면적(m ²)	현재용도
서울	· 한국트럭터미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86,002	일반물류터미널
서울	· 서부트럭터미널	서울특별시 양천구	98,895	일반물류터미널
서울	·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156,071	유통업무설비
충북	· 청주화물터미널	충청북도 청주시	18,497	일반물류터미널
광주	· 광주화물터미널	광주광역시 북구	35,326	일반물류터미널
대구	· 대구화물터미널	대구광역시 달서구	70,022	일반물류터미널

다.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12)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 도시물류기반시설 강화 전략
 -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기반시설 확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도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등 균형 개발/연계
 - 도시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및 운영 시스템 강화
-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전략
 - 도시내 물류활동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체계를 구축
 - 물류활동의 친환경성 및 공공적 역할 제고
-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전략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분야의 지원체계 구축
 - 물류산업이 독립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및 활성화 도모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 물류시설 현황

- 서울시 소재 물류터미널(舊화물터미널)은 동부화물터미널, 한국화물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3곳
 - 기존 정기(구간) 화물운송 서비스가 택배업 등의 발달로 쇠퇴함에 따라 현재는 주로 화물 주선기능(주선업 사무공간)과 화물주선 대기를 위한 단순 차고지 기능만을 수행
 - 3개 터미널 모두 시설 노후화로 주거·상업기능 등으로 변화된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보이고 있으나 물류터미널을 향후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물류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의 재정립 필요
 - 수도권 지역 신규물류단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남권 물류단지가 조성 중

<표 3-2> 서울시 소재 물류터미널

구 분	서부트럭터미널	한국화물터미널	동부물류터미널
위 치	양천구 신정동 812	서초구 양재동 226	동대문구 장안동 284-1
면적 / 시설	112,154㎡ / 41,382㎡	96,017㎡ / 24,792㎡	20,536㎡ / 4,465㎡
운 영 개 시	1981. 7. 14.	1990. 3. 31.	1975. 8. 10.
도시계획시설 (세 부 시 설)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사 업 자	(주)서부티엔디	(주)파이시티, 파이랜드	선창산업(주), 주)신세계
입 주 업 체	359개(주선285)	재정비 추진중	현재 시설폐쇄

(4) 물류시설 문제점

- 서울시 물류시설의 부족
 - 택배, 유통 등 도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립과 동남권 물류단지 개발 이후에도 여전히 물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물류시설의 기능 상실
 - 기존의 물류시설이 도시물류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 간 물류, 생산물류 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 중심의 주차장 및 운송 주선형태의 운영구조 유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이에 비하여 물류환경은 소형, 다품종 소비재 운송을 위한 소형화물자동차 중심의 운행구조로 전환됨으로써 간선수송과 집배송 기능 상실
- 물류시설의 노후화, 수익성 악화, 물류시설 주변의 시가지화로 인해 사업자의 용도전환 및 인근 주민의 이전 요구 증대
- 물류거점시설의 연계교통체계 미비
 - 간선도로, 집분산도로 등 물류시설의 연계교통체계가 미흡하여 화물자동차의 접근성 및 물류흐름의 효율성향상에 한계
 - 수도권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개념 및 물류체계 효율화 정책 부재로 물류거점시설 마다 개별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5) 물류시설 정비방안

- 수도권 물류네트워크 합리화
 - 수도권과 연계한 광역 물류시설 네트워크 조성
 - 수도권 광역물류체계 관점에서의 물류시설 기능 제고
- 동남권 물류단지의 신속한 조성
 - 수도권 동남권 지역의 대규모 물류기능 수행
 - 친환경 물류시설 구축
 - 중소물류기업 지원
 - 동남권 물류단지와 기존 물류시설의 역할 정비

(6) 물류터미널 기능 재정비

- 물류터미널이 지역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비
 - 제1차 및 제2차 물류기본계획의 기능 재정비 방향과 일관성 유지
 -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물류시설 개발 필요
 - 물류터미널 재정비 기간중 일정부분 물류기능 유지 필요
- 서부트럭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 경인축 중심의 거점물류 기능 및 서울 서부지역 물류 기능 수행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물류시설로 조성 유도
 - 재정비시 물류여건 변화에 맞추어 간선과 집배송기능의 물류시설 개발
- 서울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택배터미널, 창고 등 소규모 단위의 물류시설을 물류터미널에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유도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7) 물류터미널 기능 재정비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12)에 따르면 본 대상지에 필요한 차고지 면적은 13,361㎡이며, 물류시설은 168,167㎡ 이상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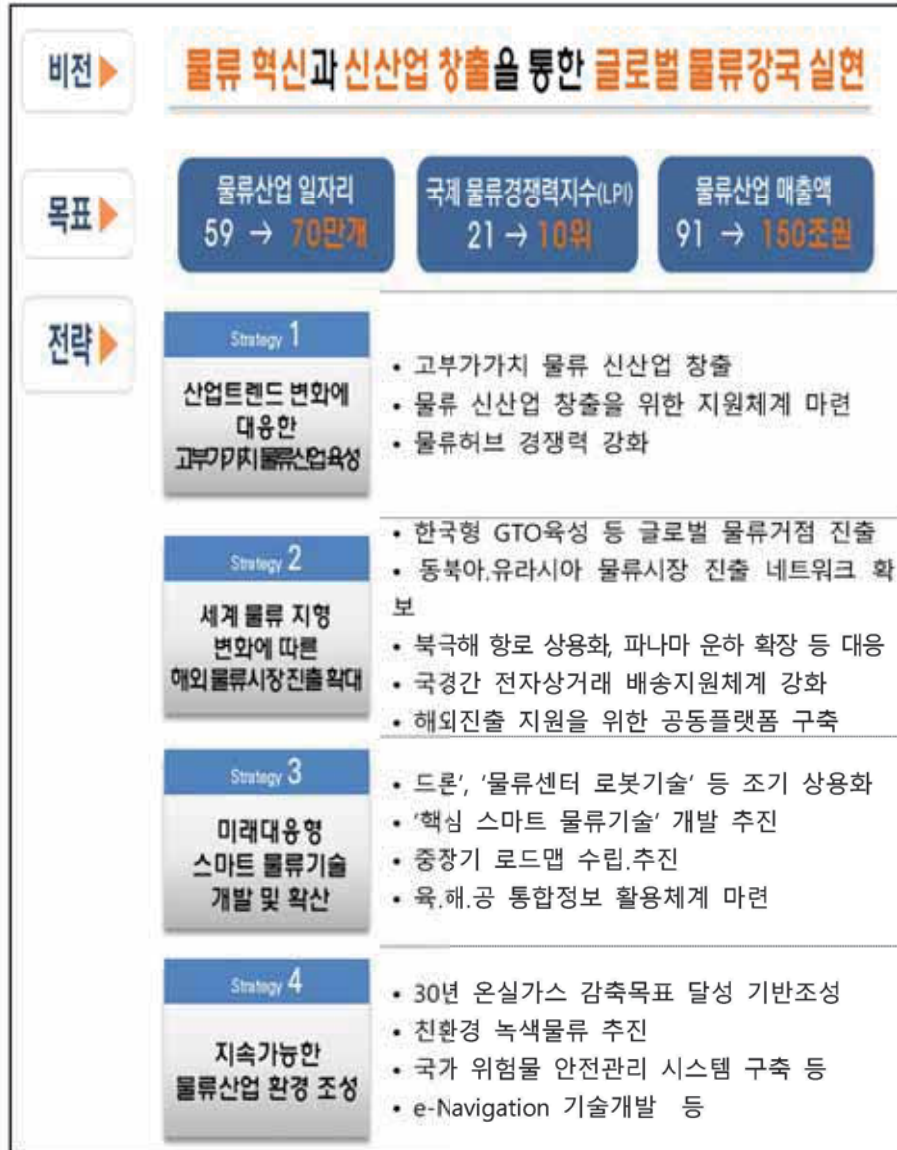
<표 3-3> 서울시 물류시설 개발규모

구 분		한국	서부	동부	시흥	동남권	합계
현 부지면적		96,017	112,111	19,463	156,071	147,112	530,774
도시개발 사업 추진	순물류(A)	79,748	93,116	16,165	129,627	223,126	541,783
	차고지	11,452	13,361	2,323	18,609	21,303	67,048
	합계	91,200	106,477	18,488	148,236	244,429	608,831
도시첨단 물류단지 추진	순물류(B)	144,026	168,167	29,195	234,107	223,126	798,621
	차고지	11,452	13,361	2,323	18,609	21,303	67,048
	합계	155,478	181,528	31,518	252,716	244,429	865,669
차이(B-A)		64,278	75,051	13,030	104,480	-	256,838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라. 국가물류기본계획(2016. 7,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및 전국/광역단위 내륙 물류거점화 추진

도시물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전국 내륙 물류시설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개발 추진

- 대도시권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물류 성장기반 확충
 -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시범단지) 추진('16~) 및 확대
 - * 물류·유통 결합형 첨단산업의 업종 결정, 개발이익 환수기준, 물류시설 공동활용 등
 - 도시권 물류시설의 위계 정비 및 공급실태조사·분석 추진
 - * 집적 및 화물조업 등 단위 물류시설의 관할범위 확대 설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공급 체계 조사·분석 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물류시설개발 추진
 - 비도시지역에 물류수요 맞춤형 중소규모 물류단지 제도 도입('16)
 - * 중소단지 규모 명확화(예 : 3만㎡이상), 개발절차 간소화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수요 검증 종합 개선방안 마련·시행('16)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2조의7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규정 마련('15)
 -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희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확충
 - * 고속도로 스마트 톨링시스템 (영상인식시스템, 하이패스 등) 구축 등을 통한 유희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추진
- 실수요 기반 및 산업간 융합형 물류인프라 개발을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17)
 - * 기존 및 노후 물류시설의 재정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포함
- 의왕 ICD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합리적 재개발
 - 수도권 물류거점 역할 변화를 고려한 의왕 ICD의 물류기능의 재정립 방안 마련
 - * 수요분석에 기초한 물류시설, 물류장비, 지원시설, 입주기업 등의 배치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현대화 및 용량증대 방안 마련
 - 기존 시설부지와 인접부지를 연계한 단계적 종합개발방안 도출
- 기 조성된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 ICD, IFT 기능조정 및 수요 활성화 등을 통한 운영을 제고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군포IFT(총1,456천㎡, '12준공), 의왕ICD(753㎡, '96준공),
 양산복합물류터미널(317천㎡, '99준공), 양산ICD(952㎡, '00준공),
 호남복합물류터미널 및 ICD(521천㎡, '14준공),
 중부복합물류터미널 및 ICD(592천㎡, '10준공),
 영남복합물류터미널 및 ICD(456천㎡, '10준공)

마.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 서울플랜)
(1)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 미래상 :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7대 계획과제
 - 인성교육 및 교육비 부담
 -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 시민과의 소통
 -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전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
 -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소단위 정비 추진

(2) 핵심이슈별 계획

핵심이슈	목 표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3.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역사 구현
	·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4.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	·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조성
	·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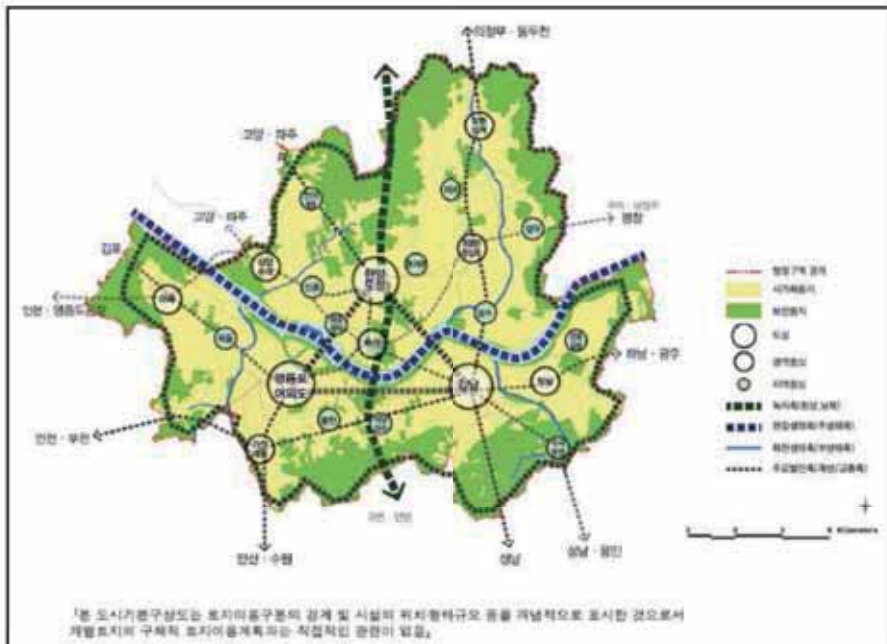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 중심지체계 및 기본구상도

○ 중심지체계

구 분	내 용	비 고
도 심	·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3
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7
지역중심	· 도심권 : 동대문 · 동북권 : 망우, 미아, 성수 · 서북권 :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불광 · 서남권 : 목동, 봉천, 사당·이수 · 동남권 : 수서·문정, 천호·길동	12
지구중심	· 기존 지구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서울시 도시기본구상도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4) 계획 목표

구 분		전 략
목 표	과 제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동북아의 전략거점으로서 서울의 위상강화	·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업무축상 주요 중심지간 연계 강화 (강남, 도심, 용산, 상암, 마곡 등 ↔ 영종도, 송도신도시, 고양) · 용산, 상암수색 등 전략적 요충지를 국제화 전략거점으로 육성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확보	· 고속전철 및 남북발전축의 결절점에 교류 및 물류단지 조성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등)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공간구조	생활권역별 중심성의 강화로 다핵공간구조 실현	· 전략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공간구조상 전략 중심지의 계획적관리·육성 (마곡, 연신내, 상계, 망우 등) · 생활권역별 중심성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축진지구의 지정 및 육성
	낙후지역 재정비 및 도심부재편	· 낙후지역의 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동북·서북생활권 및 서남생활권 등 기성시가지 위주로 뉴타운사업 추진) ·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 강화 및 재활성화 (청계천복원, 도심광장, 도심교통체계 개편, 도심부 특별관리 지구 지정 등)
환경요소를 중시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지형지세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	· 외4산, 내4산, 주요하천 복원 등을 연계한 생태·녹지 네트워크 구축 ·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수변경관축 지정
	도시개발의 계획적유도 및 관리 강화	· 신규개발 수요를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입지 유도 ·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유도
도시복합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 서울시 중심지간의 정합성 추구	· 고속전철, 광역전철 등 광역철도의 결절점의 부도심 기능 강화 · 도시철도의 역세권에 중심지를 설정하여 대중교통의 역할 강화
	서울대도시권내 도시간 기능 및 역할 분담	· 서울에 중추 업무기능, 국제기능, 지식정보 등 고차서비스업의 입지강화로 집적효과 극대화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5) 효율적인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도시 내 물류거점시설 정비
 - 과거의 지역간 화물 환적과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대기를 위한 물류시설에서 최근에는 화물의 보관 및 분류 등의 복합적인 집배송 기능을 위한 물류시설이 요구됨. 동남권 물류단지를 비롯한 서울 내 위치한 물류거점시설(한국화물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동부화물터미널)을 복합적 집배송기능을 담당하도록 재정비
 - 기존 물류시설은 장래 물류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첨단 물류시설로 정비하고,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유도, 복합적 개발을 통한 고효율 물류시설을 조성
- 단위지구 물류개선 사업 시행
 - 물류활동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은 대상지구 내 주차 및 하역공간 등의 물류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이고 인근 도로의 교통환경, 보행환경, 도시미관 등을 저해함. 이러한 단위지구에 맞춤형 물류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단위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대상지 여건에 부합한 물류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에 화물조업공간 및 하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거주밀집지역은 택배화물을 위한 집배송시설을 확보
 - 단위지구별 소형 물류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내 물류환경 개선과 주변 도로 및 보행로의 영향 감소가 기대
- 물류정보화체계 강화
 - 효율적인 물류정책을 위한 물류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관리의 발판을 마련
 - 물류정보화를 위한 통합적인 물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타물류관련 시스템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로 물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개발 유도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 도시 내 물류거점시설 입지 및 확충시 녹지 등의 확보를 최대화하고, 지역과 조화로운 외관 디자인을 적용함. 또한 표준규격의 물류시설과 소음 및 매연 배출이 적은 저공해형 물류장비 설치 등을 장려
 - 친환경 화물자동차 도입으로 대기오염 등 환경 부담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협약 등에 대비

바. 신정 지역생활권 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1) 목표 및 전략

- 신정네거리 지구중심 및 주요지역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의 상업·업무·문화간의 확대
 - 목동오거리 일대 배후주거지 지원기능 강화 및 문화·여가기능 확대
 - 서부터미널 일대 복합 물류·문화·업무·연구기능 확충
 - 신규 역세권(경전철) 조성에 대응하여 지역 활성화방안 마련 및 보행 안전성 확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 실현전략

“서부터미널 일대 복합 물류·문화·업무·연구기능 확충”

-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를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으로 육성
 -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 유도
 - 변화하는 물류환경과 지역사회의 요구 등 여건 변화에 대응
 - 터미널 기능 등 물류서비스 기능 유지를 통한 산업기능 제고
- 주변 주거지역을 서비스하는 다기능 복합시설 도입
 - 물류산업·복합상업·문화기능 중심으로 육성
 -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터미널 시설 내 건물 일부층을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



<서부트럭터미널 일대 지역발전구상>

- 물류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
 - 물류관련 일자리지원시설, 인프라 시설, R&D시설 관련 일자리 창출
- “신규 역세권(경전철) 조성에 대응하여 지역 활성화방안 마련 및 보행안전성 확보”

- 경전철 목동선 신설과 연계된 역주변 근린생활기능 도입
 - 신설역 인근 지역은 근린서비스시설 도입으로 역기능 강화
 - 주변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시설 도입 검토
- 경전철 역세권 주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활성화 유도를 통한 활력있는 거리 조성
 -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검토

(3) 보행이용 분석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생활권 전역에 소외지역 분포하여 자치구의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공급을 요함
- 공공체육시설은 소외지역 내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연계한 시설 확충 검토

<표 3-4> 보행이용 분석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그림 3-1> 신장 지역발전 구상도

사.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1) 목표

<표 3-4> 서울시 경관계획 목표

구분	주요 내용
친환경 도시	·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관 조성
역사문화도시	·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경관 조성
디자인 도시	· 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은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2) 경관적 의미 및 중요성

-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경축
 - 서울의 중심축 및 강북과 강남 두 도심의 가장자리를 형성하여 서울의 수계를 대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풍부하고 독특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
 - 주요 산 및 구릉지등 자연지형과 조화되어 높은 경관적 가치를 지니며, 사적지·명승지·정자·나루터·유적지·다리 등의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위치
- 시가지 및 자연경관 조망의 주요 조망점인 동시에 조망대상
 - 서울의 시가지 및 배후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주요 조망점인 동시에 시가지에서 한강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조망대상
-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오픈스페이스
 - 다양한 활동과 삶의 생기를 부여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공간

(3) 경관관리구역

<표 3-5> 서울시 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단위			경관기본관리구역	
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 도심	
경관축	자연 녹지축	내사산축	· 북악산~낙산축, 북악산~인왕산축, 인왕산~안산축, 남산~매봉산축	
		외사산축	· 북한산~도봉산축, 수락산~불암산축, 용마산~아차산축, 구룡산~대모산축, 관악산~삼성산~우면산축, 덕양산축	
		남북녹지축	· 북악산~종묘~세운상가~남산~현충원~관악산	
		기타녹지축	· 강북도심형, 서초구, 동작구 그린웨이 등	
	수변축	한강축	· 한강축 (한강경계 500m 내외 범위)	
		지천축	· 정계천축, 중랑천축, 탄천축, 양재천축, 불광천축, 홍제천축, 안양천축(법정하천 경계로부터 200m 범위)	
	서울성곽축		· 서울성곽	
			· 성곽건축	송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 혜화문, 광희문, 창의문, 소의문
경관거점	역사 특성거점	면적거점	· 국가지정문화재 중 고궁, 왕릉, 사묘제실, 유적터 등	
		점적거점	· 면적거점을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역사, 한국은행 등)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4) 대상지 관련사항 검토

- 서남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에도 서부터미널 일대는 주요 관리방안 내용이 없음
- 서부터미널 일대는 경관기본계획상 경관관리구역 대상이 아님
 - 경관기본관리구역 및 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상지 남측으로 기타북지축(계남근린공원, 온수공원 등) 경관기본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그림 3-2> 서남권 주요 경관관리방안 및 서울시 경관관리구역도

아. 목동경전철

(1) 개요

-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영등포구 당산역간 연장 10.87km(정거장 12개, 차량기지 1개)
 - 화곡로입구4~신월4~신월정수사업소~과학수사연구소~강월초교입구~서부화물터미널입구~신트리공원~양천구청~오목교역(5)~SBS-뿔촌중~당산(2,9) [12개역]
- 추진경위
 - 2000년 11월 : 서울특별시 교통정비중기계획에 포함
 - 2004년 6월 14일 : 양천구「경전철 민자사업」도입방안 수립
 - 2007년 5월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
 - 2008년 11월 12일 : 도시철도 기본계획(경전철 계획 포함),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2015년 3월 : '도시철도 분야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수립
 - 2018년 8월 19일 : 2022년 이내 조기 착공 발표
 - 2019년 2월 20일 : 경전철 목동선 착공 공식 발표(2021년 예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사업효과
 - 남부순환로 주변 신월·신정지역 대중교통 여건 개선
 - 상습 정체지역인 목동지역과 신월·신정 지역 동서 간의 교통난 해소
 - 양천구 동서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 대상지와 연결하여 경전철 정거장(서부터미널 입구) 계획 : 대상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그림 3-3> 목동경전철 노선도

3.2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본 계획은 변화하는 물류·유통 트렌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물류시설과는 차별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서남부권의 새로운 관문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류중심의 Compact City를 조성하고, 또한, 물류·상류·지원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물류와 산업의 융·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물류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 및 新산업 촉진 등 서울 서남부권의 새로운 활력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임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효율적인 친환경적 물류체계" 및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신정지역개발계획의 "실현 전략"에 포함된 계획으로 상위계획에 부합된 계획이라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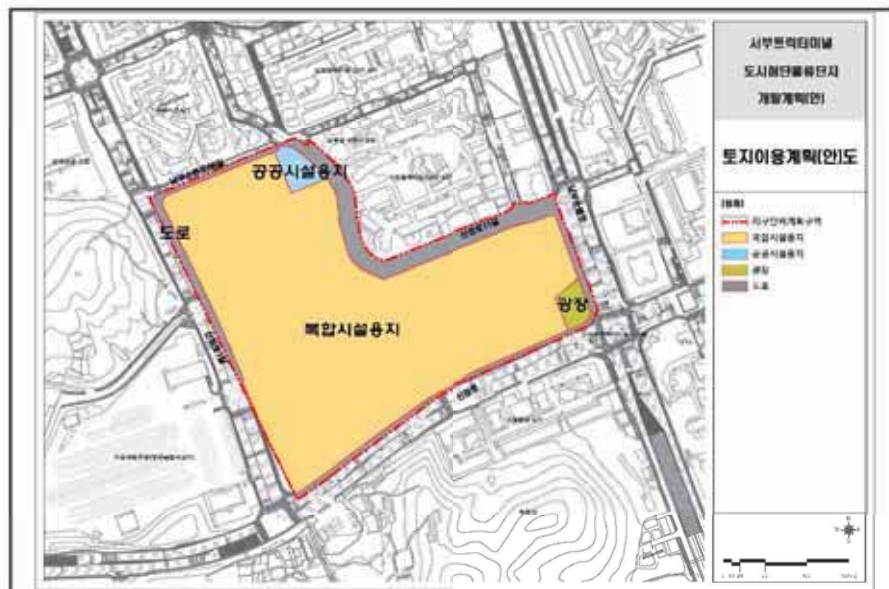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3 토지이용계획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운영을 위해 1개의 복합용지와 1개의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되, 복합용지의 도입기능은 세분(물류·상류·지원기능)
- 물류시설로의 효율적 진·출입을 위한 대상지 주변도로 확폭
- 인근지역 주민 및 물류단지 종사자의 여가·휴식을 위한 광장 조성
- 계획지구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간배치를 도모하고, 토지 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표 3-6>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복합시설용지	97,907.3	83.75	-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	1,870.0	1.60
	도로	15,568.1	13.31
	광장	1,563.7	1.34
	소계	19,001.8	16.25
합계	116,909.1	100.0	-



<그림 3-4> 토지이용계획(안)

3.4 기반시설계획

3.4.1 도로

- 도로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더불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일부도로의 폭원·선형 조정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대상지 서측(신정로 7길)도로는 공공기여로 제공하여 대상지로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도모하고, 그 외 도로는 대상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표 3-7> 기반시설(도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남부순환로	◦ 실제도로 폭원(차로수) : 45m(6차로) → 45m(8차로) ◦ 시설결정 폭원 : 40~50m	-
남부순환로88길	◦ 실제도로 폭원(차로수) : 12m(2차로) → 18m(4차로) ◦ 시설결정 폭원 : 12m	-
신정로	◦ 실제도로 폭원(차로수) : 25~35m(6차로) → 25~35m(8차로) ◦ 시설결정 폭원 : 25m → 25~35m	-
신정로7길	◦ 실제도로 폭원(차로수) : 20m(4차로) → 28~30m(6~7차로) ◦ 시설결정 폭원 : 20m → 25~40m	-
신정로11길	◦ 실제도로 폭원(차로수) : 18~22m(3~4차로) → 18~22m(4~5차로) ◦ 시설결정 폭원 : 8m → 20~25m	-


3.4.2 광장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종사자·인근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과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부 광장(일반광장, 면적 2,606.2㎡) 신설

3.4.3 문화시설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양천구에서 요구한 공연장 신설
- 다양한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과의 연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상류시설 상부(남부순환로변)에 조성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4.4 자동차 정류장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으로 결정(입체적 결정)

3.4 건축계획

- 건축개요

사 업 명	서부티엔디 도시첨단물류단지		비 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
면적	116,909.1㎡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면적 104,244.7㎡)		-
건축면적	53,537.55㎡		-
연 면 적	지 상	389,285.37㎡	-
	지 하	427,611.06㎡	-
	합 계	816,896.43㎡	-
건 폐 율	54.68%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60%
용 적 율	339.15%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350%
건축규모	지하 7층, 지상 25층		지하 39.7m, 지상 83m

- 건축물 세부개요

구 분			연면적(m²)	비율(%)	비 고	
시설면적	물류 단지 시설	물류시설	283,280.64	34.68	물류단지 시설 연면적의 60% 이상	
		상류시설	187,533.21	22.96	-	
		소 계	470,813.85	57.63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지원 시설	주거	공동주택	195,344.61	23.91	899세대
			오피스텔	23,944.51	2.93	-
		비 주 거	오피스	32,072.27	3.93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근생·수영장)	4,216.85	0.52	
			지원(쇼핑몰)	78,504.33	9.61	
		소 계	334,082.58	40.90	-	
	공공기여시설		12,000.00	1.47	1,000석	
	합 계		816,896.43	100.0	-	
공공기여시설(공공시설)			13,792.90	-	· 임대주택(100세대) · 창업지원센터 · 교육문화시설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3.5 주요 도입시설 계획

○ 도입시설별 배치계획

구 분	배치계획
물류시설	· 주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격된 배치를 통해 주변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보호 · 공개공지 및 공원 계획을 통해 완충공간 설정 ·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주거시설이 아닌 대상지 서측에서의 진·출입구 계획
상류시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주거지역과의 이격을 감안하여 대상지 남측에 상류시설 배치
지원시설	· 주변 주거지역의 입지를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 대상지 중앙부에 공공기여시설인 공공기능 배치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성 도모



<그림 3-4> 도입시설별 배치계획

3.6 공원·녹지 계획

- 대상지 내 공개공지 조성 및 남부순환로변 광장 조성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공공성 있는 쾌적한 계획 수립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전면공지는 차도 또는 보도 부속형으로 조성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대지 내 조경 등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단절된 녹지축 연결 및 보행동선 확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7 공개공지 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대지 내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관련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였음
- 대지면적 $97,907.30\text{m}^2 \times 10\% = \text{기준 } 9,790.73\text{m}^2 < \text{계획 } 9,931.06\text{m}^2$

3.8 조경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관련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였음
- 대지면적 $97,907.30\text{m}^2 \times 15\% = \text{기준 } 14,686.10\text{m}^2 < \text{계획 } 20,296.32\text{m}^2$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본 계획지구의 사업시행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계획비교를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였음

<표 4-1> 대안의 개요

구 분	대안내용	비 고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선정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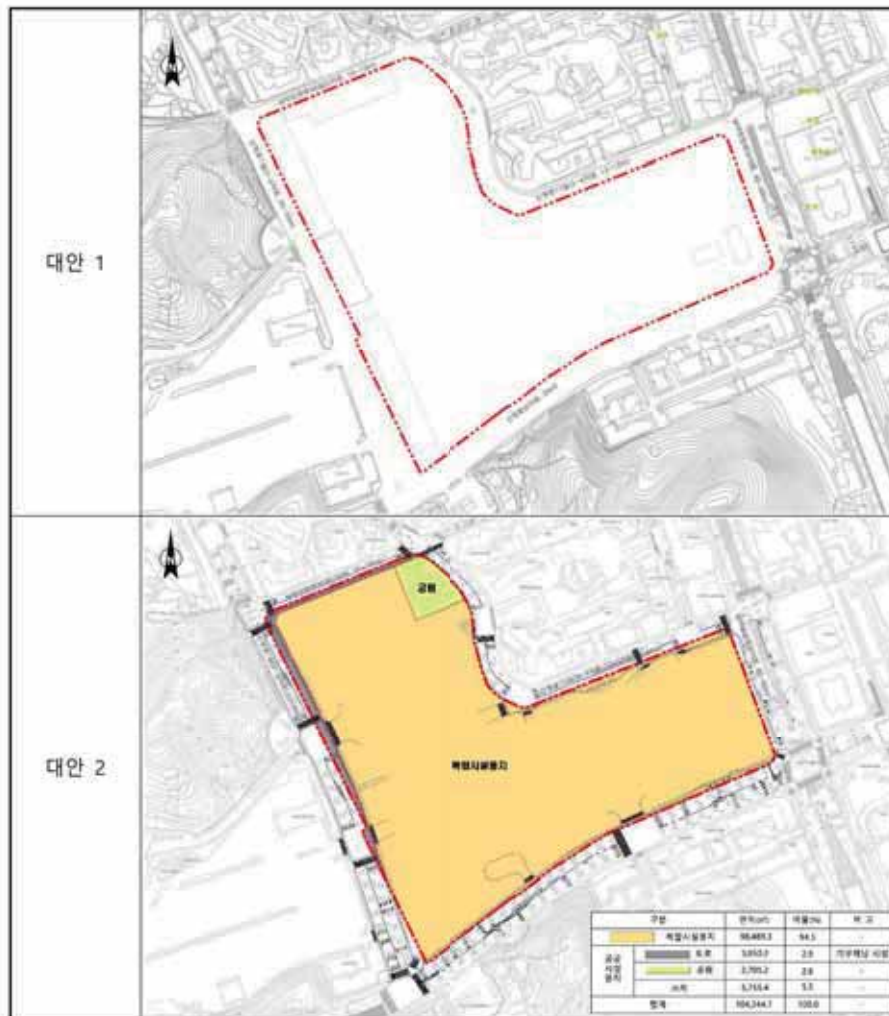
<표 4-2> 계획 비교 대안 검토 및 선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계 획 비 교	장 점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지역적인 입지 여건상 서울의 물류관문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남부권의 새로운 활력 도모 ·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지역적인 입지여건상 서울의 물류관문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남부권의 새로운 활력 도모 ·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 별도의 공공시설용지 및 광장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 ·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도시첨단물류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폭원·연장 확장
	단 점	·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없음 · 도시공간의 노후화 및 지역 부가 가치 창출 저해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환경질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 환경여건 변화 발생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환경질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 환경여건 변화 발생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표 계속>

구 분 선 정	대안 1	대안 2	대안 2 ○
선정사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종사자 및 입주민을 위한 공공녹지를 전면부에 배치하고, 공공기능을 갖춘 공공시설용지를 주변 주거단지 주변으로 배치함으로써 대안 1, 2에 비해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능



<그림 4-1> 계획 비교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그림 계속> 계획 비교 대안의 설정

<표 4-3> 수요·공급 검토 및 선정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수요 공급	· 일부 자원시설 세대의 조항권 확보 · 계획지구 외부 공항소음 대책 지역(제3종구역 다 지구)에서 주거시설을 최대한 이격배치	· 공개공지 및 증원 계획을 통해 완충공간 설정 및 기존 공원과 연계하여 공원계획 수립 · 차량 및 보행동선과 주거지역과의 이격을 감안하여 대상지 남측에 상류시설 배치 · 대상지 중앙부에 공공기여 시설인 공공기능 배치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성 도모 ·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이 주거 시설과 이격배치하여 쾌적성 극대화 · 계획지구 외부 공항소음 대책 지역(제3종구역 다 지구)에서 주거시설을 최대한 이격배치	· 단지 중앙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단지 내 주거시설과 물류/상류 시설과의 완충공간 마련 · 남부순환로변 광장을 통해 다수의 집객공간 조성 가능 · 차량 및 보행동선과 주거지역과의 이격을 감안하여 대상지 남측부에 상류시설 배치 · 대상지 북측에 공공기여시설인 공공기능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 ·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이 주거 시설과 이격배치하여 쾌적성 극대화 · 진출입구 5개소 설치로 인한 도입시설별 교통특성 및 교통 영향 최소화 · 물류시설의 경우 신정로 및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교통영향 최소화 · 계획지구 외부 공항소음 대책 지역(제3종구역 다 지구)에서 주거시설을 최대한 이격배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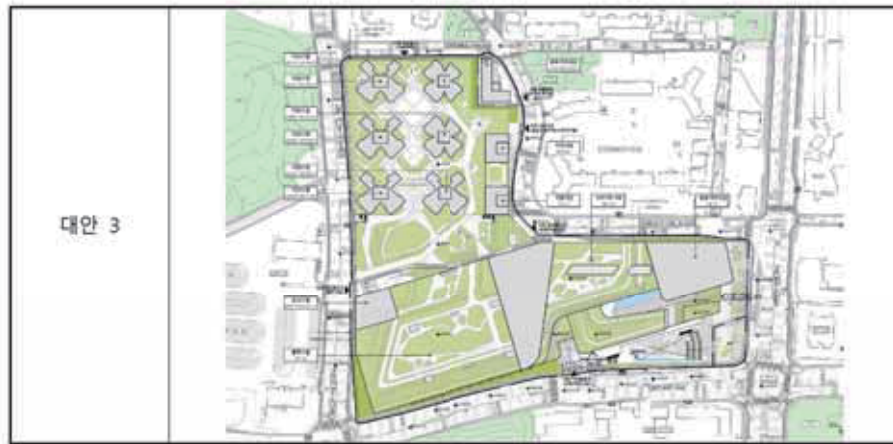
<표 계속> 수요·공급 검토 및 선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수 요 공 급	-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거 시설 등에 일조, 도로교통소음 등 환경변화 발생 -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 등으로 인하여 계획지구 내 주거시설 일조피해 발생 -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이 주거 시설과 분리되지 않아 쾌적성이 떨어짐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거 시설 등에 일조, 도로교통소음 등 환경변화 발생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거 시설 등에 일조, 도로교통소음 등 환경변화 발생
선 정			○
선정사유			물류시설 및 상류시설이 주거 시설과 이격배치하여 쾌적성 극대화 및 교통영향 최소화 등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도로 교통소음 영향 최소화



<그림 4-2> 수요·공급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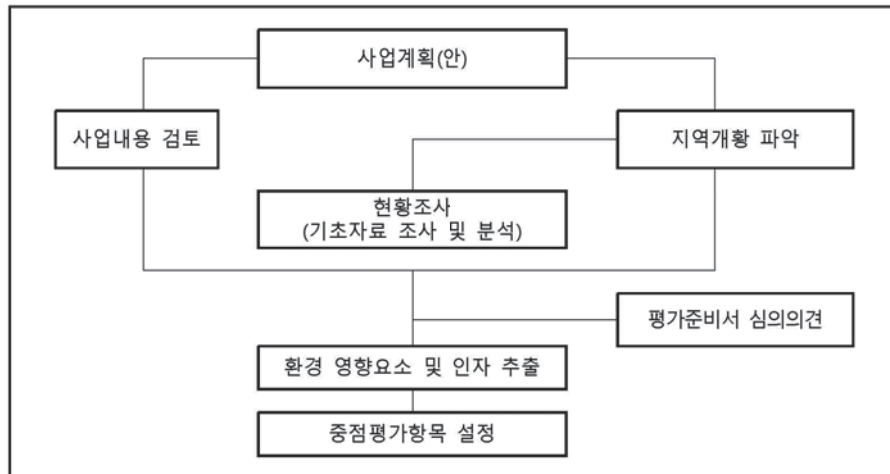
<그림 계속> 수오공급 대안의 설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함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임



<그림 6-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5-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Matrix

구 분	환경영향요소	세 부 내 용	
공 사 시	부지조성	◦ 수목벌채 ◦ 공사배수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 토량운반
	시설공사	◦ 기초공사 ◦ 자재운반 ◦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 건축물, 부대시설 및 포장공사 ◦ 조경식재
운 영 시	입주민 및 이용인구	◦ 용수 및 오수 ◦ 폐기물 배출	◦ 도로이용 ◦ 각종 시설의 운영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2 평가항목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은 사업의 유형별, 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주는 인자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2>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항 목	세부평가항목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의 적정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수환경의 보전	수질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온실가스), 소음·진동 토양 일조장해 악취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위생공중보건

가. 중점·일반평가항목 설정

- 중점평가 항목은 상기에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항목과 주변 현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주는 환경영향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표 5-3> 중점평가 항목 설정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비 고
중점 평가 항목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 계획지구 주변 서남쪽 매봉산과 서쪽 신월산 방향, 그리고 북쪽과 동쪽으로 계남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포함한 동·식물 서식지 변화여부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의 변화 여부 검토	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의 지형·지질 특성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검토	지형·지질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및 대책 검토	경관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 발생 대책 검토 - 운영시 구역내 활동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 검토	수질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공사시 장비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검토 -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	대기질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검토 -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영향 발생 검토	소음·진동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검토	토양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권확보기준 검토	일조장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검토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표 5-4> 일반평가 항목 설정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비 고
일반 평가 항목	생활환경 의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본 사업으로 인한 악취영향 검토	악취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물류단지 운영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 영향 발생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이용변화와 인구 주거 및 산업 변화 검토	토지이용 인구·주거 산업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표 5-5>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방법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5km 이내)	◦ 현지조사 실시 및 문헌조사 실시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대한식물도감 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표고 경사 분석현황조사 ◦ 지질조사 결과 분석 ◦ 사업계획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지구 (0.5km 이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 계획지구 주변 현황 분석 ◦ 사업계획에 따른 경관 변화 분석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계획지구 및 인근수계	-	◦ 수질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량 산정 ◦ 운영시 비점오염원 및 용수공급계획, 우·오수처리계획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지구 경계 (0.5km이내)	계획지구 경계 (1.5km이내)	◦ 대기질 현황 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영향 예측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
		악취	계획지구	계획지구 주변지역	◦ 악취유발시설 현황조사 ◦ 운영시 악취유발시설 등 검토
		소음 진동	계획지구 경계 (0.5km이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5km 이내)	◦ 주변 정온시설 파악 및 소음 현황 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영향 예측
		토양	계획지구	-	◦ 토양오염 현황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영향 예측
		일조 장애	일조피해 예상지역	-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권확보기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지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검토 ◦ 폐기물 발생유무 및 처리방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 이용	계획지구	-	◦ 지목별 및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제시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검토	
	인구 및 주거	계획지구	-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검토	
	산업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변화 검토	
	위생공중 보건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의 영향 검토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6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6.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가. 공고

- 주관 시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간신문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계획임
- 공고내용에는 사업개요, 공람기간 및 장소,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기타 공람,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임

나.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람장소는 서울시 물류정책과를 선정하여 공람하고,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부 및 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계획임

다. 의견수렴 계획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수렴 할 계획임
- 주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한인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사항)을 실시함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심의일시 : 2021년 08월 13일 15시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9인
- 위원구성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

구분	소속	성명	분야	의견제출
위원장	서울시청 교통기획관	여OO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위원	서울시청 물류정책과	조OO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위원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윤OO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OO	협약기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서면>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이OO	협약기관	○
위원	(주)동남의화학연구원	송OO	민간전문가	○
위원	RE도시건축사사무소	추OO	민간전문가	○ <서면>
위원	녹색교통운동	김OO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서면>
위원	신정3동 주민	장OO	양천구 주민대표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 심의개요

- 일시 : '21.8.13.(금) 15:00~17:10
- 장소 :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총괄 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이OO

- 물류시설의 규모에 의한 위암경관영향, 스카이라인 훼손 영향 등이 우려되므로 건축물의 층수, 길이·높이, 통정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다수 위치하므로 대기질, 소음·진동, 일조장해, 경관 등에 대해 더 넓은 범위에서 철저 영향 및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함
- 물류시설 등에 의해 발생될 환경적 영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악취, 위생·공중보건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세종남의과학연구원 송OO

- 첨단물류시설과 문화·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시설로서 서울시(양천구)의 랜드마크시설로 판단됨
- 다만 항목별 의견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경3동 장OO

- 양천구 옥동지역에 비해 신경,신월동 지역은 다소 낙후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양천구 신경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물류센터인 만큼 교통의 원활함을 염두에 둔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차량통행의 빈번함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수 있는 방법 연구 또한 적정성 검토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OO

- 본 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경동 131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계획지구 주변 다수의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물류단지의 운영에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다른 생활환경 측면의 입지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아울러, 물류단지의 운영시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RE도시건축사사무소 추OO

- 범위를 동심원 반경이 아닌 평가범위로 실제 영향권을 중심으로 확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 구상안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공공기여시설로 분리하여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이 소설 믹스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물류시설인 만큼 교통영향, 소음, 대기오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진출입 동선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서울시와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되도록 평가항목 설정이 보완되어야 함

○ 녹색교통운동 김OO

- 해당 사업이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기는 하나 주요시설로 문화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근생, 수영장, 쇼핑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개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가 형성된 서울 지역내 주거지가 인접하는 등 환경적 영향이 타 물류단지 조성사업보다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임.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물류경제파 조OO

- 대상부지는 서울 도심내 물류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 대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서고 대상지 주변으로 다수의 APT, 학교,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인접한 주거 밀집지역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추가와 평가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조성부지와 함께 건축될 건축물(시설별·용도별)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 필요

○ 환경경제파 윤OO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 선정시 고밀화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등이 포함되도록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시 고시)」을 검토
- 해당사업의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방안 검토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한강유역환경청 이OO

-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주거지·학교 등> 분포현황, 지형, 도로 등 주변지역 고려하여 최대한 확대·설정 ⇒ 소음·진동 500m, 대기질 1km, 경관 1km 등

○ ㈜동남의화학연구원 송OO

- 구 물류단지를 활용한 첨단물류단지를 계획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신정3동 장OO

- 소음진동에 관한 직접영향권 반경을 50m까지 넓혀줄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OO

- 의견없음

○ RE도시건축사사무소 주OO

- 동식물상의 경우 단순히 계획지구의 규모에 따른 대상지역 설정(강측의 2배)보다는 실제 동식물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개발과정의 오염물질 배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남쪽 매봉산과 서쪽 신월산 방향, 그리고 북쪽과 동쪽으로 계남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간접영향권에 대한 평가 구간을 좀 더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예: 그림3-1 신정지역발전 구상도 내의 주변녹지 범위 등)
- 또 소음진동 대기질(온실가스)도 신월C동 물류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결절점을 포함하여 간접영향권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녹색교통운동 김OO

- 당해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위치하는 사도가 원칙이므로 평가대상지역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 물류정책과 조OO

- 대상지 주변에는 학교, 시립병원, APTS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대기질(온실가스) 등 평가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평가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특히 물류시설 도입에 따른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지역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지역 확대 필요
- 대기질 : 직접 0.4km, 간접 1.0km / 소음·진동 : 직접 0.5km / 경관 : 직접 0.5km, 간접 1.0km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환경정책과 윤OO

- 물류단지 부지면적(약10만㎡), 지구단위계획구역(116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평가항목별 영향권역(범위) 등 분석

2. 토지이용 구상안

○ 한강유역환경청 이OO

- 주변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 정은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차폐녹지 조성

○ ㈜동남의화학연구원 송OO

- 주변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근생시설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경3동 장OO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시 동별 구간을 좀 넓게 해서 타아파트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바랍니다.
- 또한 물류주진출입로를 만들시에 차량의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동선 배려 부탁드립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OO

-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주거시설과 물류시설 사이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 시설의 운영 및 물류차량(대형 경유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에 따른 영향(대기질, 소음 등)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지구 경계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녹의 완충녹지 조성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시설의 운영 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RE도시건축사사무소 추OO

- 경전철 목동선으로부터의 보행접근 동선을 고려한 광장의 위치는 적절해 보이며, 공영장과 상류지원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도 타당해 보임
- 물류시설과 상류지원시설을 연결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분리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공개공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상류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이 신경로를 따라 남북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듯 보여 (횡단면도 참조) 통행 축 확보나 시설 자체의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과 물류시설 사이의 일조 채광도 고려되어야 함(대부분의 공간이 현재는 영구음영이 될 수 있음)
- 물류나 상류 차량 진출입구에 대해서도 통행량 및 주변 교통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 물류시설의 진출입구와 양천공영차고지 진출입구, 상류차량 진출입구와 신경현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6차 아파트 진출입구가 마주함.) 더불어 진출입구를 분리하는 것과의 교통영향 비교 검토도 필요함

- 공공용지로 지정된 공간에 공공기여시설 중 임대주택을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도 사회 통합 및 시설 복합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기여 시설과 공동주택이 외부 공간과 복리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오피스와 오피스텔은 상류지원시설과의 연계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의 공동주택 6동과 오피스, 오피스텔, 공공기여시설의 배치도 입조 채광을 고려하여 동수를 줄이고 건물과 적정 이격거리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 녹색교통운동 검토

- 주변 공원·녹지체계, 환경·생태적 자연 자원, 완충녹지 등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이용 구상안의 연계, 조화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것

○ 물류정책과 검토

- 도입시설별 배치계획상(p.49) 공동주택과 물류·상류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바, 사업부지 내 영향평가시 해당 용도별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 필요
- 물류시설 조성에 따른 화물차 이동통행,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 조성에 따른 보행통행,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11조의2에 따른 공공녹지 설치 검토
-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영향평가 시행

○ 환경정책과 검토

- 의견없음

3. 대안
○ 한강유역환경청 이의

-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의 기능성, 주민의 편의성, 환경성을 고려한 다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여야 함
 - No action을 포함하되 서로 다른 토지이용계획으로 초래될 환경적 영향의 장·단점을 예측하여 최적안을 선정
 - 공사차량 및 물류차량의 이동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동남의화학연구원 송OO

- 물류단지 차량 진출입 출입구
 -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신설하여 물류창고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변경
- 지원단지 진출입 차량
 - 현 계획과 같이 물류단지 진출입구와 별도 신설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신정3동 장OO

- 의견없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OO

- 의견없음

○ RE도시건축사사무소 추OO

- 1 에 비해서 대안2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하나 앞 서 토지이용 구상안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함.
- 대안검토의 방향이 인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경축과 녹지축, 바람길들을 보장할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녹색교통운동 김OO

- 물류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공공기여시설 등 해당 단지내 여러 시설들이 배치되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할 것
-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주변 소음 및 배출가스 등의 대기오염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진출입구 및 배기 등에 대해 주변 주거 및 업무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물류정책과 조OO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3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에 따라 설정 가능한 대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
- 대안별 환경적 영향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환경정책과 윤OO

-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대안 검토
- 대안설정시 인근 차고지, 도로 통과와 완충공간 마련, 매봉산 등 주변 녹지와 생태네트워크 연계성 확보
- 주변 주거시설 등의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를 위해 3개이상의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검토하고, 선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유 기재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한강유역환경청 이○○

- (지형) 지하층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과 지반 안전성 등을 검토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사토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 (경관) 최대90m높이의 건축물이 입지할 계획이므로 영향 대상지역을 확대(직접:500m, 간접:1km)
- (대기질) 풍사기간이 장기간이므로 대상지역을 넓게 확대하여 검토(직접: 400m, 간접:1km)
-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 검토하고, 오염도 조사 이행하고 대책 마련
- (악취) 식재료 등의 유통을 고려하여 악취영향 예측 및 이행
- (기타) 인근의 주거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일조장애를 검토하고 대책 수립,계시
- (위생·공중보건) 공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검토

○ ㈜동남의화학연구원 송○○

- 자연환경의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직접 500m, 간접: 1km
-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온실가스) : 현행
 - 소음·진동 : 직접 500m

○ 신정3동 장○○

- 물류시설 운영시 대두되는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

- [물·식물상] 계획지구 주변으로 산림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종화동이 왕성한 시기를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서식종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함 (계절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선정)
- [대기질] 물류시설의 운영 시 연료사용계획을 명확히 수립·작성하고, 연료사용량과 유발 교통량을 함께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 [수질] 용수공급계획, 비점오염원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저감대책 등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토양] 계획지구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 시 장비가동 및 사업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경관] 계획지구 주변 주거지역, 도로 등을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형·지질] 주요 절·성토 구간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류시설 조성에 따른 과도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및 물류시설의 운영으로 증가·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음·진동] 공사 및 물류시설의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을 면밀히 예측하고 계획지구 주변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RE도시건축사무소 주OO

- 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와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상쇄,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중점평가 필요
- 소음진동 외에도 대기질, 교통정체 등에 따른 영향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프라가 조성되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

○ 녹색교통운동 집OO

- 주변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자연환경적 요소보다는 생활환경의 안정성 측면에 중점 평가항목을 보완할 것.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환경기준에 맞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 플류정책과 조OO

- 대상지와 인접하여 신원산, 배봉산 등 자연환경, 주거지 및 학교 등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추가
 - 평가범위 : ① 대기질 : 직접 0.4km, 간접 1.0km ② 소음·진동: 직접 0.5km ③ 경관 : 직접 0.5km, 간접 1.0km
 - 평가항목 : 악취, 위생·공중보건 (인근 거주 지역주민 고려)
- 도시정단물류단지 개발계획에는 편원법에 의거 총별·시설별 용도 등 구체적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바, 복합건축물 입지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보완되어야 함

○ 환경정책과 윤OO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너지사용, 온실가스 등 현황 배출량(예측), 저감대책(지열,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계획 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순
- (일조장해)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계획지구 내·외부에 미치는 일조장해 여부 파악 및 저감대책 수립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이OO

-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이해당사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산단특별법에 정한 기간보다는 평가법에 따라 주민공람 이행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동남과학연구원 송OO

-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생활 지체제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

○ 신경3동 장OO

-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들이 인접해 있으므로 그분들의 의견 필히 수렴 반영한 주민설명회 개최 바랍니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OO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조성 및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RE도시건축사무소 추OO

- 지방입간신문, 중앙입간신문 광고만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전에 인접지역 주민들이 계획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실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안내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교통운동 집OO

-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해당 주거지의 관리주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개최를 검토

○ 물류정책과 조OO

- 추후 주민의견 수렴시 평가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 적극 반영
- 특히, 구정홈페이지, APT단지내 공고, 한상회보 활용 등으로 지역주민 '알권리' 적극 제공

○ 환경정책과 윤OO

- 최대한 많은 주민이 계획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정 의견수렴 외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안 강구

6. 기 타(개회의 걱정상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한강속역환경정 미OO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문헌자료는 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있는 최근 자료 활용

○ ㈜동남의화학연구원 송OO

- 교통 최소화를 위한 동선(여유차선 등) 확보 필요
-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소음발생, 대기오염 등의 예방차원에서 '대안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출입 출입구를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지하화 필요

○ 신정3동 장OO

- 의견없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OO

- 의견없음

○ RE도시건축사사무소 추OO

- 의견없음

○ 녹색교통운동 김OO

- 물류시설 이외에 주거와 비주거 용도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주변 도로 교통 영향 최소화 필요
- 보행자 이동 동선 최적화, 특히 보행 접근 시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물류정책과 조OO

- 추후 평가서 작성시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도시생태현황도' 등 관련 도면과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대상지 및 주변현황 등이 누락되거나 착오없도록 조치
- 제시한 공간적 범위(104,244.70㎡)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116,909.1㎡)이 상이한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환경정책과 윤OO

- 의견없음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1 - 224

()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정정사유

－ 기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시·중점의 주소 및 연장 오기사항 정정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정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정정 전	기정	소로	3		6		400	사당5동 1139-1	사당5동 190-220		서울시 282 (1978.06.1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6		144	사당5동 118-1	사당5동 190-220		서울시 282 (1978.06.13)	
정정 후	기정	소로	3		6		400	사당동 188-24	사당동 190-6		서울시 282 (1978.06.13)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소로	3		6		248	사당5동 189-7	사당5동 188-1		서울시 282 (1978.06.13)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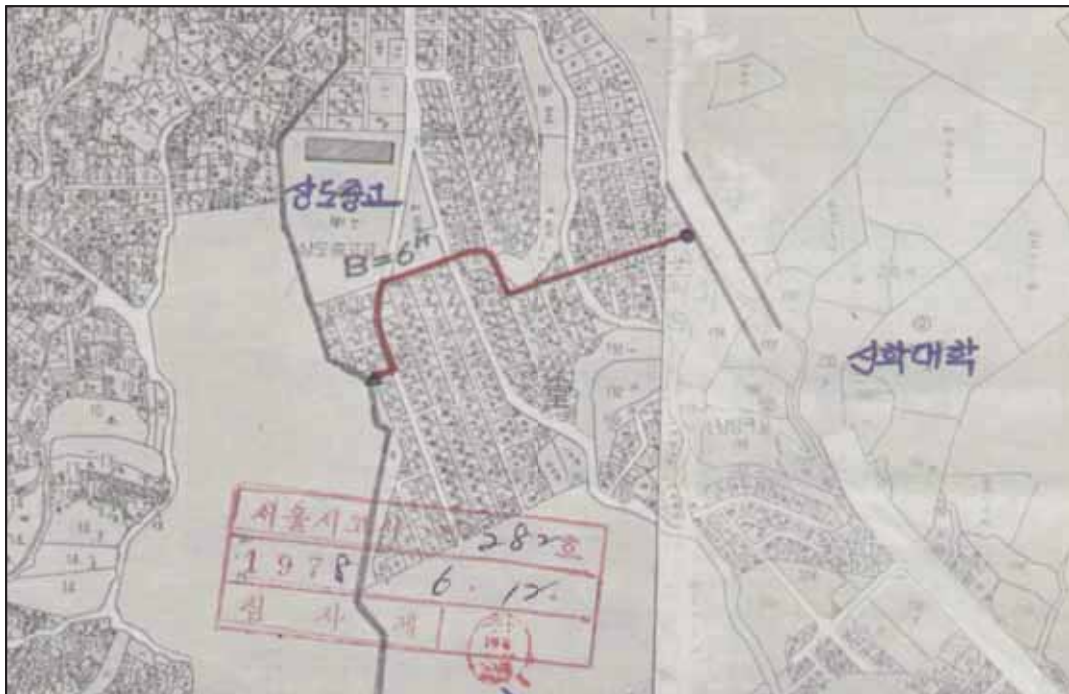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로관리과(☎820-9903), 도시계획과(☎820-95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정



○변경



2021 - 136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428호(1978. 8. 2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39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봉천동 649-191 ~ 봉천동 649-38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고시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191~649-3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649-191~649-38간 도로개설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18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사. 사업기간 : 2020. 6. 18. ~ 2022.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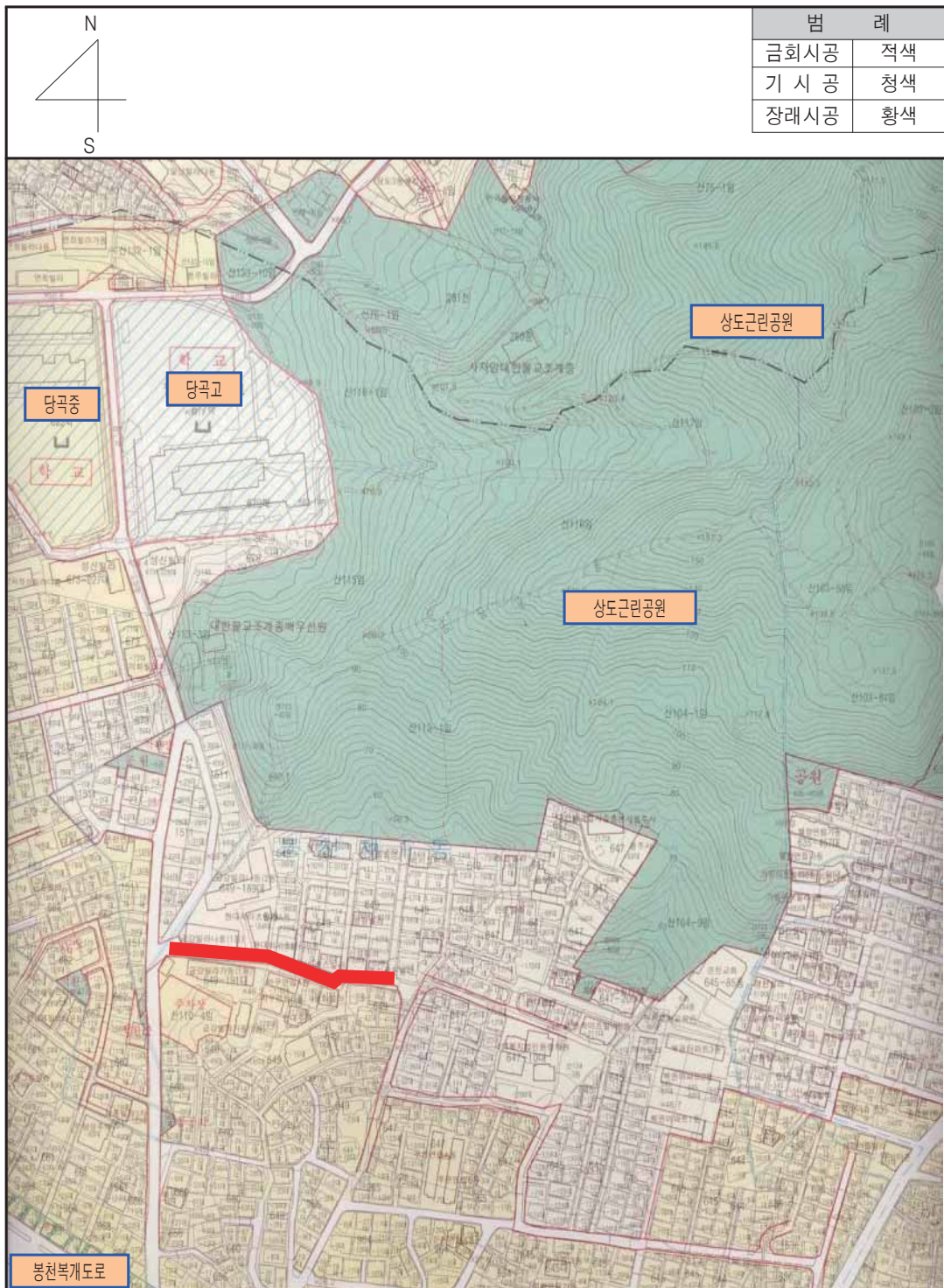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191 ~ 봉천동 649-38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0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18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관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관리		
1	봉천	649-190	도로	504	504	현행도로	관악구						
2	봉천	649-184	대	611	11	현행도로	백 * 수	관악구 남부순환로184가길16,***호(신림동)	중소기업은행(신림역지점)	-	근저당	27.1/611	채무자 백*선(관악구 남부순환로184가길 **, ***호(신림동))
							홍 * 일	관악구 신림로70길 **-(신림동)				26.3/611	
							이 * 길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34/611	
							홍 * 영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31.1/611	
							강 * 순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26/611	
							박 * 형	용산구 한남동 563-4 ***호				27.1/611	
							차 * 님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주식회사 우리은행(보라매지점)	-	근저당	26.3/611	
							박 * 규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34/611	
							이 * 순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시화스틸랜드지점)	-	근저당	31.1/611	
							이 * 자	관악구 봉천로23다길 ***-(봉천동)				26/611	
							차 * 순	관악구 대학20길 27, ***동***호(신림동,현대아파트)				20/61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관리		
							서 * 중	마포구 동교로39길 11, ***동***호(연남동,대명아파트)				20/611	
							박 * 식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한국주택은행 (노량진지점)	-	근저당	30.1/611	
							이 * 경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호(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주 식회사	-	근저당	42/611	
							변 * 구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층(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주식회사 우리은행(분 당시범단지지 점)	-	근저당	68/611	
							임 * 완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 *** (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27.1/611	
							김 * 성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 *** (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26.3/611	
							이 * 해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 *** (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주식회사한국 스탠다드차타 드제일은행	-	근저당	34/611	
							김 * 열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 *** (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31.1/611	
							이 * 순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5, 에이동 *** (봉천동,현대하이츠빌라)	주식회사 신한은행(봉 천서지점)	-	근저당	23.4/611	
3	봉천	산114-7	임야	347	143	현황 도로	김 * 수	관악구 동작동 307 반포아파트 **동 ***호					
4	봉천	649-182	도로	793	296	현황 도로	관악구						
5	봉천	649-103	도로	119	118	현황 도로	노 * 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동1***호(보정동,신촌 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2	
							노 * 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동****호(보정동,신촌 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관리		
6	봉천	649-120	도로	47	11	현황 도로	김 * 수	관악구 봉천동 ***-**					
7	봉천	649-124	도로	17	17	현황 도로	노 * 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동****호(보정동,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2	
							노 * 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동****호(보정동,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2	
8	봉천	649-125	도로	6	5	현황 도로	김 * 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					
9	봉천	649-63	대	218	21	현황 도로	김 * 기	관악구 봉천로21나길 33, ***호(봉천동,동신빌라)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24.27/218	
							이 * 희	관악구 봉천로21나길 33, ***호(봉천동,동신빌라)				24.34/218	
							김 * 섭	관악구 양녕로 117, ***동****호(봉천동,벽산블루밍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신림본동지점)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24.27/218	
							김 * 재	관악구 봉천로21나길 33, ***호(봉천동,동신빌라)				24.34/218	
							하 * 순	관악구 봉천로13길 ***-** (봉천동)				24.27/218	
							구 * 근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 ***호(상계동)				24.34/218	
							신 * 주	관악구 봉천로21나길 33, ***호(봉천동,동신빌라)				39.22/218	
							유 * 중	관악구 신림본동 ***-***				17.79/218	
							강 * 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90-1 인후품마을부영아파트 ***-****				15.16/218	
10	봉천	649-37	도로	126	113	현황 도로	이 * 기	봉천동 ***				3/12	편입 면적 오기 정정
							최 * 순	봉천동 ***				1/12	
							이 * 기	봉천동 ***				2/12	
							이 * 기	봉천동 ***				2/12	
							이 * 기	봉천동 ***				2/12	
							이 * 숙	봉천동 ***				1/12	
							이 * 숙	종로구 송인동 *-**				1/12	

□ 공사명 : 봉천동 649-191~649-38간 도로개설공사-No.40



2021 - 137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40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봉천동 647-32 ~ 봉천동 647-114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고시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7-32~647-1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647-32~647-114간 도로개설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1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사. 사업기간 : 2020. 6. 18. ~ 202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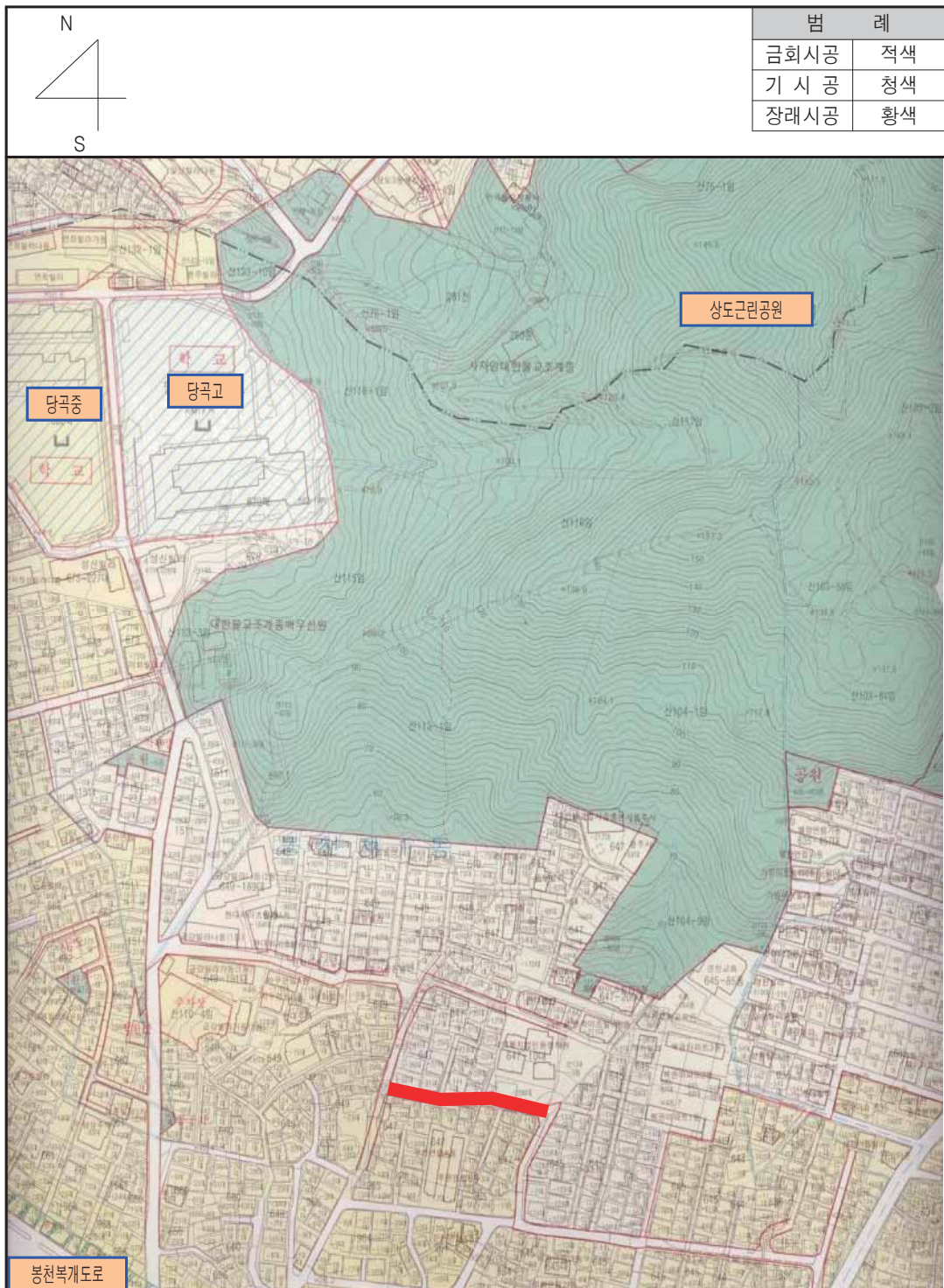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7-32 ~ 봉천동 647-11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1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11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	봉천	738-313	천	521	6	현황 도로	국유지						
2	봉천	647-195	도로	36	36	담장	신 * 철	관악구 봉천동 ***-**					
3	봉천	647-109	대	334	233	현황 도로	이 * 대	동작구 상도동 ***-**				1/4	
							오 * 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화리현리 ***				1/4	
							정 * 국	관악구 봉천동 ***-**				1/4	
							김 * 복	관악구 봉천동 ***-**				1/4	
4	봉천	647-35	도로	17	17	현황 도로	윤 * 경	용산구 용문동 ***				37/44	
							최 * 식	관악구 봉천로 23다길 13, ***호(봉천동, 그린아파트)				7/44	
5	봉천	647-196	도로	9	9	현황 도로	전 * 우	관악구 봉천동 ***-**					
6	봉천	647-36	도로	36	36	주차장	최 * 규	관악구 봉천로 23라길 *(봉천동)					
7	봉천	647-100	도로	3	3	주차장	배 * 근	관악구 봉천동 ***-**					
8	봉천	647-37	도로	17	17	주차장	배 * 근	관악구 봉천동 ***-**	화성시		압류		
9	봉천	647-38	도로	1	1	주차장	최 * 영	강서구 등촌동 715 등촌동 아이파크 ***-****					
10	봉천	647-197	도로	9	9	현황 도로	이 * 만	관악구 봉천로 23라길 **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	근저당	1/2	
							주 * 자	관악구 국회단지 10길 ** (봉천동, 2층)				1/2	

연번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1	봉천	647-198	도로	29	29	현황 도로	정 * 현	관악구 봉천로 23라길 **					편입면적 오기정정
12	봉천	647-199	도로	10	10	현황 도로	원 * 연	관악구 봉천동 ****-***					
13	봉천	647-113	도로	423	247	현황 도로	석 * 연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 아파트 ****-***					
14	봉천	647-189	도로	21	21	담장	사회복지법 인***원	관악구 봉천동 ****-***					

□ 공사명 : 봉천동 647-32~647-208간 도로개설공사-No.41



2021 - 138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41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봉천동 51-2 ~ 봉천동 56-112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고시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1-2~56-1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51-2~56-112간 도로개설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8m, 연장 17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사. 사업기간 : 2020. 6. 18. ~ 202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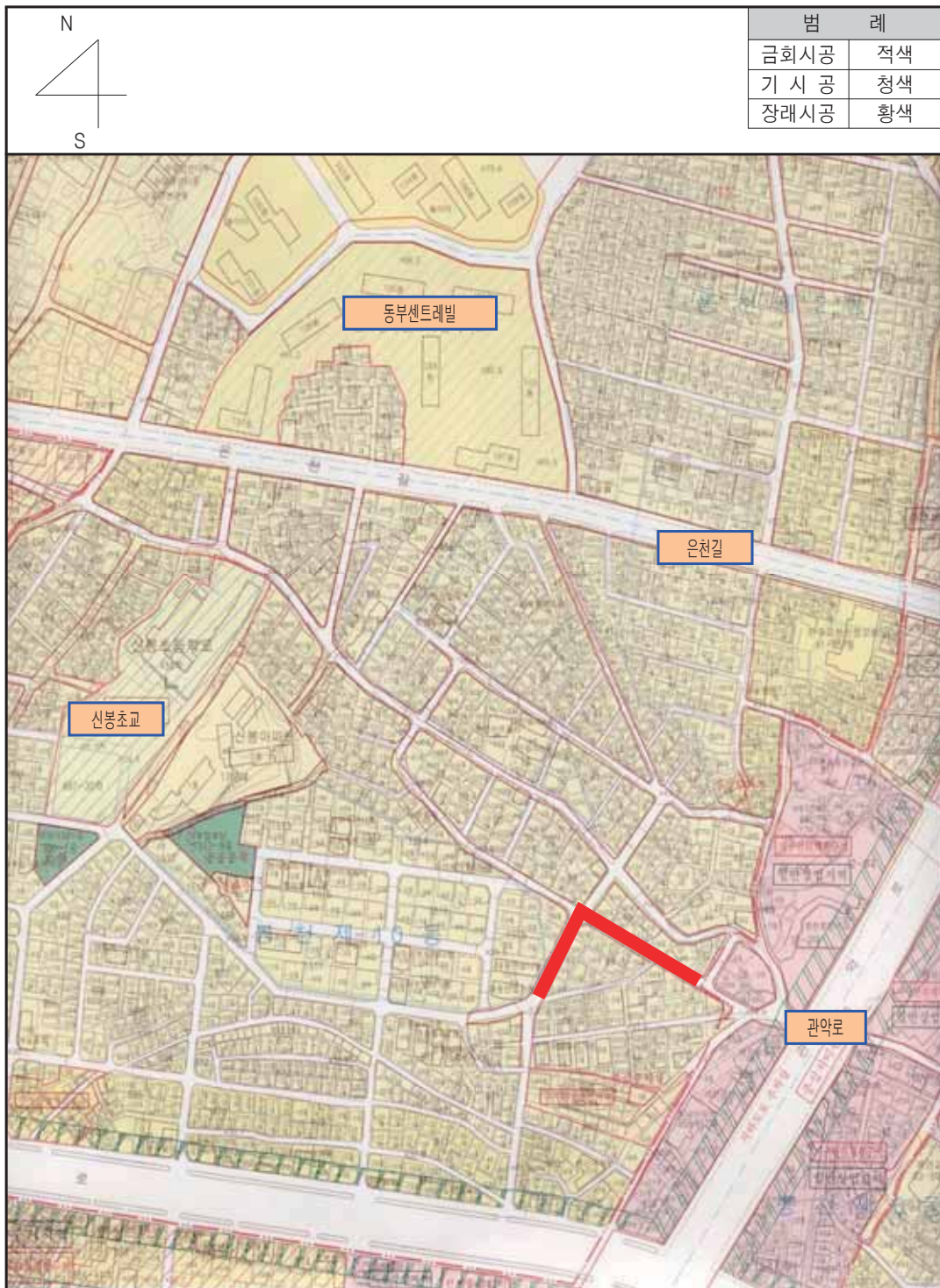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1-2 ~ 봉천동 56-11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2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8m, 연장 12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관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	봉천	51-2	도로	284	284	현황 도로	송 * 강	동작구 노량진동 ****-					
2	봉천	51-11	대	79	79	현황 도로	손 * 강	강서구 신월동 250-11 왕석아파트 가***호					
3	봉천	49-77	도로	15	15	현황 도로	관악구						
4	봉천	49-34	도로	509	114	현황 도로	관악구						
5	봉천	49-3	도로	69	69	현황 도로	관악구					22/69	
							오 * 자	관악구 봉천로 387, ***동 ****호(봉천동, 두산아파트)				141/345	
							김 * 숙	관악구 봉천로 387, ***동 ****호(봉천동, 두산아파트)				94/345	
6	봉천	49-23	도로	11	11	현황 도로	신 * 숙	송파구 잠실로 62, ***동 ****호(잠실동, 트리지움)				1/2	
							홍 * 식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50길 ***호(삼덕동 3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	근저당	1/2	
7	봉천	49-16	도로	447	267	현황 도로	관악구						
8	봉천	49-22	도로	9	9	담장	강 * 순	관악구 중앙1길**(봉천동)					
9	봉천	49-72	도로	11	11	담장	김 * 숙	관악구 중앙1길**(봉천동)					
10	봉천	49-20	도로	11	11	담장	서 * 하	관악구 중앙1길 **(봉천동)					
11	봉천	49-74	도로	20	20	담장	정 * 회	관악구 봉천동 ***-					소유자성명 오기정정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권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등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2	봉천	49-14	도로	7	7	현황 도로	관악구						
13	봉천	49-8	대	142	1	현황 도로	전 * 분	관악구 중앙길**(봉천동)	관악구		압류	8/12	
							전 * 복	관악구 봉천동 ***	관악구		압류	2/12	
							전 * 택	관악구 *****	관악구		압류	2/12	
14	봉천	50-11 4	도로	641	210	현황 도로	관악구						

□ 공사명 : 봉천동 51-2~56-125간 도로개설공사-No42



2021 - 139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45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고시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71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사. 사업기간 : 2020. 6. 18. ~ 2022.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6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	봉천	715-75	도로	66	66	현황 도로	김 * 봉	관악구 봉천동 ****-					편입면적 오기정정
2	봉천	715-189	도로	17	10	현황 도로	관악구						
3	봉천	715-194	도로	4	4	현황 도로	관악구						
4	봉천	715-66	도로	251	34	현황 도로	김 * 봉						소유자성명 오기정정
5	봉천	715-105	잡	3	3	현황 도로	홍 * 옥	관악구 봉천동 ****-					
6	봉천	715-104	잡	3	3	현황 도로	홍 * 옥	관악구 봉천동 ****-					
7	봉천	715-18	대	233	10	현황 도로	김 * 희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4, *층 ***호(신길동, 굿데이빌)	든솔신용 협동조합	-	근저당	2/4	
							이 * 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18번길 6, ***동 ****호(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	
							이 * 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15, ****동 ****호(송도동, 송도더마샵스터뷰)				1/4	
8	봉천	843	구거	225	203	현황 도로	국유지						
9	봉천	715-158	대	194	2	현황 도로	김 * 환	관악구 호암로 399, ***동 ***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노 * 철	관악구 양지길 52-1, ***동 ****호(신림동, 관악우정하이비전아파트)					
							김 * 국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동 ***호(남가좌동, 디엠씨파크뷰자이)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 권리		
10	양천	840-1	도로	2	2	현행 도로	국유지						
11	양천	841	도로	109	71	현행 도로	국유지						
12	양천	715-5 2	대	7	7	현행 도로	김 * 호	중구 신당동 ***					편입면적 오기정정
13	양천	715-2 0	대	83	61	현행 도로	시유지						

□ 공사명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No46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